

2013 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014. 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목 차 】

1. 감사의 목적	5
2. 감사기간	5
3. 감사실시 대상기관	5
4. 감사위원회의 구성	7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10
6. 일반증인 출석 현황	12
7.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9
가. 시정·처리 요구현황	19
1) 환경부 소관	19
2) 고용노동부 소관	31
3) 기상청 소관	42
나. 대상기관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45
1) 환경부 소관	45
2) 고용노동부 소관	131
3) 기상청 소관	191

1. 감사의 목적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 국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 예산안 심사 등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2. 감사기간 : 2013. 10. 14(월) ~ 11. 2(토) (20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	
<p>1. 환 경 부</p> <p>가. 본 부</p> <p>나. 소속기관</p> <p>(1)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p> <p>(2) 국립환경과학원</p> <p>(3) 국립생물자원관</p> <p>(4) 국립환경인력개발원</p> <p>(5)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p> <p>(6) 한강유역환경청</p> <p>(7) 낙동강유역환경청</p> <p>(8) 금강유역환경청</p> <p>(9) 영산강유역환경청</p> <p>(10) 수도권대기환경청</p> <p>(11) 원주지방환경청</p>	<p>3. 고용노동부</p> <p>가. 본 부</p> <p>나. 소속기관</p> <p>(1) 중앙노동위원회 (11개 지방노동위원회 포함)</p> <p>(2) 최저임금위원회</p> <p>(3)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p> <p>(4) 고용보험심사위원회</p> <p>(5) 서울지방고용노동청</p> <p>(6) 중부지방고용노동청</p> <p>(7) 부산지방고용노동청</p> <p>(8) 대구지방고용노동청</p> <p>(9) 광주지방고용노동청</p> <p>(10) 대전지방고용노동청</p>

위원회 선정 대상 기관

<p>(12) 대구지방환경청 (13) 새만금지방환경청 다. 산하 공공기관 (1) 한국환경공단 (2) 국립공원관리공단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4)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 기상청 가. 본 부 나. 소속기관 (1) 국립기상연구소 (2) 부산지방기상청 (3) 광주지방기상청 (4) 대전지방기상청 (5) 강원지방기상청 (6) 제주지방기상청 (7) 국가기상위성센터 (8) 기상레이더센터 (9) 항공기상청 나. 산하 법정기관 (1) 한국기상산업진흥원</p>	<p>다. 산하 공공기관 (1) 근로복지공단 (2) 한국산업인력공단 (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5) 한국고용정보원 (6)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7)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8) 한국기술교육대학교 (9) 노사발전재단 (10)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1) 한국잡월드 (12) 건설근로자공제회 4.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p>
---	---

4. 감사위원회의 구성

가. 감사위원(단일반)

감사위원장	신계륜 위원장	(민주당)
감사위원	김성태 위원	(새누리당)
" "	김상민 "	"
"	서용교 "	"
"	이완영 "	"
"	이종훈 "	"
"	주영순 "	"
"	최봉홍 "	"
"	홍영표 위원	(민주당)
"	김경협 "	"
"	은수미 "	"
"	장하나 "	"
"	한명숙 "	"
"	한정애 "	"
"	심상정 위원	(비교섭단체)

나. 사무보조자 : 한 공 식 (수석전문위원)
 김 양 건 (전문위원)
 김 대 안 (입법조사관)
 이 형 진 (")
 김 정 규 (")
 유 재 원 (")
 정 원 철 (")
 김 진 선 (")
 최 성 민 (")
 박 양 숙 (")
 임 성 현 (입법조사관보)
 정 선 희 (")
 안 미 옥 (실 무 관)
 홍 영 희 (")
 강 량 인 (")
 이 현 진

다. 속 기 사 : 김미라, 김진주, 박정현,
 채지희, 정 숙 속기주무관

라.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

박형민	정책연구위원(1급상당)	새누리당
조용철	정책연구위원(2급상당)	"
변제준	정책연구위원(4급상당)	"
김명진	정책연구위원(2급상당)	민주당
정길채	정책연구위원(4급상당)	"

마. 감사위원 보좌진

이 준	보좌관	(신계륜 위원장실)
이영주	비서관	(김성태 위원실)
심정우	보좌관	(김상민 위원실)
우기송	비서관	(서용교 위원실)
조안호	보좌관	(이완영 위원실)
김성현	보좌관	(이종훈 위원실)
양성준	보좌관	(주영순 위원실)
백은상	보좌관	(최봉홍 위원실)
정한모	보좌관	(홍영표 위원실)
탁양삼	보좌관	(김경협 위원실)
김철희	보좌관	(은수미 위원실)
송용한	보좌관	(장하나 위원실)
김영철	보좌관	(한명숙 위원실)
조선옥	보좌관	(한정애 위원실)
김가람	비서관	(심상정 위원실)

5. 국정감사 일정 및 감사장소

일자	시간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비 고
10월 14일 (월)	10:00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과천)	
10월 15일 (화)	10:00	환경부	환경부(세종시)	
10월 16일 (수)		자 료 정 리		
10월 17일 (목)	10:00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사발전재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건설근로자공제회	국 회	
10월 18일 (금)	10:00	기상청 국립기상연구소 부산지방기상청 광주지방기상청 대전지방기상청 강원지방기상청 제주지방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항공기상청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국 회	
		<시찰> 기상선	인 천	
10월 19일(토) ~ 10월 20일(일)		공 휴 일		
10월 21일 (월)	10:00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국 회	

일자	시간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비 고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새만금지방환경청		
10월 22일 (화)	10:00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국 회	
10월 23일 (수)		자 료 정 리		
10월 24일 (목)	10:00	<시찰> 대암산 용늪	강원도 인제군	
10월 25일 (금)	10:0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충북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영산강유역환경청	
10월 26일(토) ~ 10월 27일(일)		공 휴 일		
10월 28일 (월)	10:00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10월 29일 (화)	10:00	<시찰> 한국잡월드	성남시	

일자	시간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비 고
10월 30일 (수)		자 료 정 리		
10월 31일 (목)	10:00	고용노동부	국 회	
11월 1일 (금)	10:00	환경부	국 회	
11월 2일(토)		공 휴 일		

6. 일반증인 출석현황

【환경 분야】

(단위 : 인)

구 분	증 인	참고인	계
출 석 요 구	24	8	32
출 석	21	7	28
불 출 석	3	1	4

【고용노동 분야】

(단위 : 인)

구 분	증 인	참고인	계
출 석 요 구	23	22	45
출 석	22	20	42
불 출 석	1	2	3

환경노동위원회 2013년도 국정감사 일반 증인(47명) 및 참고인(30명) 현황

● 2013. 10. 14(월) 고용노동부

구분	성명 및 직책		신문요지	출석
증인 (13인)	구교현	알바노조 위원장	아르바이트 근로 조건 관련	○
	김규한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위원장	쌍용차 정상화 및 해고자 복직 관련	○
	김득중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장	쌍용차 정상화 및 해고자 복직 관련	○
	김병하	서울시 행정2부시장	노란집 수몰사고 및 방화대교 상관붕괴 사고 노무관리 소홀	○
	김영만	한국마사회장 직무대행	마필관리사 간접고용과 산업안전관리 미진	○
	박상범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 의혹	○
	심은석	교육부 교육정책실장	영어전문강사 문제	× (교문위 증인출석)
	윤갑한	현대차 사장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 해결 촉구	○
	이유일	쌍용자동차 사장	쌍용차 정상화 및 해고자 복직 관련	○
	이재웅	민주노총 서울본부장	서울시 부당지원 관련	○
	장정우	서울메트로 사장	서울메트로에서 행해진 낙하산인사실태, 복수노조차별건, 단체 협약불이행, 부당노동행위, 승진인사권 남용 부정비리의혹 등 기타	○
	최봉철	현대제철(주) 당진제철소 부사장	2013년 5월 현대제철 당진 공장 근로자 사망관련 안전관리관 련 해당공정 및 보호장비(안전장 치) 관련 사항	○
	김정근	코레일네트웍스 사장	갑을관계에 의한 강압적 업무지시, 다수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 (증인변경 최연혜 코레일사장→ 김정근 사장)
참고인 (12인)	김용주	(주)프로아트 전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사례	○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노조설립 취소 통보 관련	○

구분	성명 및 직책		신문요지	출석
	김중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전공노 노조설립 신고 반려	○
	김진숙	홈플러스 노조	시간제 및 장시간 근로문제	○
	딴 소문	외국인 근로자	이주노동자의 현실 증언	○
	박민숙	생식독성 피해자	전자산업생식독성문제 삼성반도체 유방암(생식독성) 피해자	○
	성희직	광산진폐권익연대 진폐상담소장	진폐환자 실태	○
	안인숙	영어전문강사	영어전문강사 문제	○
	우다야 라이	민주노총 이주노동 담당	이주노동자의 현실 증언	○
	윤창수	한국마사회 노조위원장	마필관리사 간접고용과 산업안전관리 미진	○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통상임금 관련	○ (10.15 증인)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	감정노동	○
증인 13인, 참고인 12인 중 - 참석 24인 / 불참 1인				

● 2013. 10. 15(화) 환경부

구분	성명 및 직책		신문요지	출석
증인 (15인)	전동수	삼성전자 사장	삼성전자 화학사업장 화학사고 관련	○
	강승균	서희건설 상무	동대문환경자원센터 관련, DRANCO(벨기에)공법 도입, 설계상의 문제, 관리주체 이관 에 따른 문제, 운영 및 관리상 의 문제 등 관련	○
	김동수	TSK 워터 동대문소장	동대문환경자원센터 관련, DRANCO(벨기에)공법 도입, 설계상의 문제, 관리주체 이관 에 따른 문제, 운영 및 관리상 의 문제 등 관련	○
	김상범	서울시 행정1부시장	수도권매립지 매립기한 연장 관련	○

구분	성명 및 직책		신문요지	출석
	김승희	전 식약청 평가원장	가습기 살균제 관련	○
	김철성	롯데칠성음료 영업본부장	먹는샘물 제조, 유통, 판매 등 관련	○
	도성환	홈플러스(주) CEO	가습기 피해자에 대한 사과	× (보스턴경영대학원 주최 포럼 참석)
	박희수	동대문부구청장	동대문환경자원센터 관련, DRANCO(벨기에) 공법 도입, 설계상의 문제, 관리주체 이관 에 따른 문제, 운영 및 관리상 의 문제 등 관련	○
	배정태	해태음료 대표	먹는샘물 제조, 유통, 판매 등 관련	○
	샤시 쉐커라파카	옥시레킷벤키저 대표	가습기 피해자에 대한 사과	× (관련소송 및 해외출장)
	윤희중	씨에이치음료 대표	먹는샘물 제조, 유통, 판매 등 관련	○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화평법 관련	○ (10.14 참고인)
	이만의	전 환경부장관	4대강사업 관련	○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화평법 관련	○
	장병석	TSK 워터 상무	동대문환경자원센터 관련, DRANCO(벨기에) 공법 도입, 설계상의 문제, 관리주체 이관에 따른 문제, 운영 및 관리상의 문제 등 관련	○
참고인 (2인)	박정규	KEI 박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화평법 관련	× (장거리 여행 곤란 의사소견서 첨부)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및 석면피해구제 관련	○
증인 15인, 참고인 2인 중 - 참석 14인 / 불참 3인				

● 2013. 10. 21(월) 유역(지방)환경청

구분	성명 및 직책		신문요지	출석
증인 (3인)	신대식	영산만산업 대표	포항 폐수처리장 관련	○
	황인식	영산만산업 감사	"	○

구 분	성명 및 직책		신문요지	출 석
	윤용철	포스코 엠텍 사장	옥계공장 폐놀 유출사고	○
참고인 (3인)	전기석	한국환경공단 환경에너지처장	포항 음폐수처리장 관련	○
	박명준	한국환경공단 경남권지역본부 팀장	"	○
	박창근	관동대 교수(토목공학과)	옥계공장 폐놀 유출사고	○
증인 3인, 참고인 3인 -[참석 6인]				

● 2013. 10. 25(금) 지방고용노동청

구 분	성 명	직 책	신문요지	비 고
증인 (11인)	김성훈	제주한라대학교 총장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 불법 제정, 노동조합 탄압 등	○ (증인변경 김병찬 이사장→김 성훈 총장)
	이수길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 장	미필관리사 간접고용과 산업안전관리 미진	○
	이준호	제주한라대학교 노조위 원장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 불법 제정, 노동조합 탄압 등	○
	이호인	전주대학교 총장	청소용역 관리실태	○
	전동희	하이원 엔터테인먼트 전 무이사	하이원엔터테인먼트 부당노동행위(임단협 교섭 거부 행태)	○
	정병국	3M 사장	장기 노사 분규 사업장 (부당노동행위 의혹)	○
	정연호	원자력연구원 원장	불법파견에 대한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거 부	○
	최종재	(주)온누리산업 대표	청소용역 관리실태	○
	홍순직	전주비전대 총장	청소용역 관리실태	○
	김승평	전 한국마사회 부산경남 지역 본부장	미필관리사 간접고용과 산업안전관리미진	증인철회
	도성환	홈플러스 대표이사	시간제 및 장시간 근로실태	증인철회
참고인 (5인)	박근서	3M 노조위원장	장기 노사 분규 사업장 (부당노동행위 의혹)	○
	박래형	하이원 엔터테인먼트 노 조위원장	하이원엔터테인먼트 부당노동행위(임단협 교섭 거부 행태)	○
	이덕훈	하이닉스 엔지니어링 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위험작업은 외	○

구분	성명	직책	신문요지	비고
		조위원장	주화가 금지되어있지만 실제현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남, 이러한 실태관련	
	이태식	공공운수노조전북평등지부 전주대,비전대 현장대표	전주대, 전주비전대 부당노동행위 증언	○
	한영해	대구 MBC 노조위원장	지역 MBC 임금체불 건	○
증인 11인, 참고인 5인 중 - [참석 14인/철회 2인]				

● 2013. 10. 28(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구분	성명	직책	신문요지	비고
증인 (1인)	허업	남동발전 CEO	발전사업 폭리와 환경오염피해 관련	○ (10.15→10.28 출석일 변경)
증인 1인 중 - [참석 1인]				

● 2013. 10. 31(목) 고용노동부 종합감사

구분	성명	직책	신문요지	비고
증인 (2인)	박상범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 의혹	○ (10.14 증인)
	박성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부위원장	"	○
참고인 (5인)	강규혁	전국민간서비스산업 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감정노동	○
	김현주	서울근로자건강센터 부소장	IT노동자 건강실태 증언	×
	박태언	KT스카이라이프 노조위원장	KT식 노무관리 문제점 KT스카이라이프 노사관계 악화	×
	정현철	금속노조 안산시흥 일반분회장	안산지역 불법파견 실태	○
	최병승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현대차 불법파견	○
증인 2인, 참고인 5인 중 - [참석 5인 / 불참 2인]				

● 2013. 11. 1(금) 환경부 종합감사

구분	성명 및 직책		신문요지	비고
증인 (7인)	도성환	홈플러스(주) CEO	가습기 피해자에 대한 사과	○ (15:30 산업위 증인출석 예정/ 불출석으로 인한 재출석)
	샤시 쉐커라파카	옥시레킷벤키저 대표	"	○ (불출석으로 인한 재출석)
	조석준	전 기상청장	기상장비 입찰관련	○
	김동식	케이웨더 사장	"	○
	탁승주	웨더링크 대표	"	○
	이도승	감사원 국토해양감사국장	4대강 관련	○ (법사위 기관증인/ 한노위 14-15시 참석)
	이시구	계룡건설 회장	신축아파트 발암물질 검출관련	× (증인신청한 위원의 철회의사를 존 중하여 간사간 합의하에 불참을 허락)
참고인 (3인)	조경현	영남대 생명공학부 교수	화학물질 위해성 및 관리방안, 국내 실험사례, 해외학계 동향, 화학물질 의 구성 등 관련	○
	박병옥	송전탑 피해 전 대책위원장	송전탑 환경피해 관련	○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	○
증인 7인, 참고인 3인 중 - [참석 9인 / 불참 1인]				

7.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현황

1) 환경부 소관

시 정 및 처 리 요 구 현 황
<p>▶ 환경부 본부 ◀</p> <p>【공통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1) 국고보조사업 미정산에 따른 대책 수립 필요(2) 환경부 장애인 고용률 제고 필요(3) 환경·기상 분야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인식 필요(4) 환경단체 전문성 확보 필요(5) 환경복지 정책에 대한 홍보강화 필요(6) 환경벤처 육성책 마련 필요(7) 현 정부 환경정책 공약 일관성 있게 추진 필요(8) 환경부 소관 법률 인·허가 의제처리 관련(9) 상습적 환경 분야 법령 위반 업체 등에 제재 조치 강화 필요(10) 환경부가 기상청을 자체감사기관으로 포함하는 방안 검토 <p>【상하수도 부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1) 구제역 매몰지 발굴에 따른 생물학적 안전성 강화 필요(2) 군부대 내 토양환경오염에 대한 통계 관리강화 필요(3) 강릉포스코 토양오염 원인 규명 및 향후 방지 대책(4) 먹는샘물 경도기준 완화 필요(5) 하수관거 관리대행업체 등록기준 개정 필요(6) 주방용오물분쇄기(디스포저)에 대한 대책 마련(7) 상수도 위기관리시스템 관리감독 강화 필요

시 정 및 처 리 요 구 현 황

- (8)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기준 강화
- (9) 토양오염조사 개선 방안
- (10) 노후화된 옥내급수관 및 상수도관 관리방안 마련
- (11) 하야리아 부대 주변 토양 오염 물질 기준 강화 필요
- (12)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의 소규모 공장 및 일부 대형공장 등에 대한 환경오염 대책 마련 필요
- (13) 동일 수원지 多브랜드 체제로 인한 불합리한 생수 가격 차별 개선
- (14) 폐광산 토양·지하수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 (15) 인천 부평구 부영공원 토양오염 관련

【수질 부문】

- (1) 강하구 수질 생태환경 개선방안 마련 필요
- (2) 특정 폐수배출시설의 합리적 배출기준 마련 필요
- (3) 새만금 수질개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 대책 수립 필요
- (4) 4대강 사업에 대한 대책 수립 필요
- (5) 상수원 오염물질 유입 단속강화
- (6) 수질예보제 관련 시정 필요
- (7) 상수원보호구역 협약에 의한 지정유예 방지책 마련

【폐기물 부문】

- (1) 서울, 경기도 자체 폐기물처리장 설치 필요
- (2) 폐목재 재활용정책 개선필요
- (3) 지정폐기물 등의 처리방식 변경 필요
- (4) 수도권지역의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대책마련 필요
- (5) 소각·매립부담금 도입을 위한 사전검토 필요
- (6)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대책 마련
- (7) EPR제도 재평가 필요

시 정 및 처 리 요 구 현 황

- (8) 농촌폐기물 수거체계 개선필요
- (9) 폐자동차 재활용 저해요인 개선 필요
- (10) 재제조 산업 활성화 필요
- (11) 빈용기(빈병)보증금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12) 재생아스콘 재활용률 제고방안 마련 필요
- (13) 건설폐기물 분리·선별 원활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 (14) 공사장폐기물 처리 관련 개선방안 마련 필요
- (15) 나대지상 건축공사 분리발주 대상에서 제외 필요
- (16) 폐기물 재활용으로 에너지 수급문제 해결방안 모색
- (17) 청소용역노동자 처우개선 방안 마련
- (18) 에코아스시스템 허위 보고 개선방안 마련
- (19) 폐전자제품 재활용 의무율 합리적 조정 필요
- (20) 일정규모 미만 자원재활용업 단속강화에 대한 입장 필력
- (21) 의료폐기물 권역별 처리구축체계 마련 필요
- (22) 폐기물처리시설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 (23)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율적 자원화 방안 강구
- (24) 음폐수 바이오가스시설 설치사업 감사원 청구
- (25)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성공적 정착 위한 개선방안 마련
- (26) 폐가전 문전수거사업 활성화 방안
- (27) 폐기물부담금 부과와 관련 제조자의 범위 명확화
- (28) 폐기물 매립에 대한 근본적인 틀 전환 필요

【대기 부문】

- (1)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지원책 마련 필요
- (2) 기후변화 적응대응 시스템 강화 필요
- (3) 온실가스배출 규제방안 마련
- (4)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환경성 관리방안 수립

시 정 및 처 리 요 구 현 황

- (5) 주유소 유증기 저감대책 마련
- (6)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목표달성량 산정식 일원화
- (7) 「대기환경보전법」 실효성 확보
- (8) 범정부적 기후변화 대응책 마련
- (9) 경유택시 도입 관련 환경부 입장 피력 필요
- (10) 실효성이 떨어진 그린카드제 개선방안 마련
- (11)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대한 의지 및 대책 마련
- (12) 탄소배출권거래제 시행 관련 준비 철저

【자연 부문】

- (1) 국립공원 케이블카 경제성 분석 시 환경오염 비용 포함
- (2)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시 주민의견 반영 필요 등
- (3) 전국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역할강화방안 마련
- (4) 생태통로 점검 필요
- (5) 우수리종 보호 조치 필요
- (6) 한국자원공원협회 지원책 마련 필요
- (7) 국립공원관리공단 방사동물 관리방안 마련
- (8) 국립공원관리공단 산불진화용 바닷물 사용 연구필요
- (9) 소나무 재선충 등 방지 위한 관리방안 마련 필요
- (10) 종복원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
- (11) 생태계 교란, 외래식물 퇴치를 위한 대비책 마련
- (12) 용늪 생태복원 필요
- (13) 사육곰 정책 재검토 필요
- (14) DMZ 세계평화공원 환경부 역할 강화 필요
- (15)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과 정부의 책임성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 (16) 4대강사업 환경영향평가 부적절
- (17) 생태계 교란종 급증에 따른 규제 강화 필요

시 정 및 처 리 요 구 현 황

- (18)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신규 설치 및 근무환경 개선 시급
- (19)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아니하는 연접지역 개발 관련
- (20) 내성천 환경 피해 대책 수립
- (21) 낙동강 하구 에코델타시티 사업 허용불가 입장 고수 필요

【환경보호일반 부문】

- (1) 녹색기업제도에 대한 재검토 필요
- (2) 석면 안전 관련 대책
- (3) 석면 슬레이트 철거 지원
- (4) 석면 피해 구제 관련
- (5) 지하철 역사 석면제거 계획 수립
- (6) 연구용역 관리감독 강화
- (7) 환경표지제도 및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제도 구분 필요
- (8)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개선 관련
- (9) 환경기술 성과관리 및 기술상용화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
- (10)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강화 필요
- (11) 어린이용품 안전관리 강화
- (12) 환경 관련 유사인증제 개선을 통한 신뢰성 확보
- (13) 화학물질안전원 인력충원 확보 필요
- (14) 화평법, 화관법 시행 관련 준비 철저
- (15) 생물다양성총회 관련 NGO협력 계획 피력
- (16) 한반도 온난화에 따른 아열대성 질환 관리 강화 필요
- (17) 환경교육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
- (18) 신축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개선방안 마련
- (19)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 역할 강화
- (20) 가습기 살균제 제작업체 관련
- (21) 생활용품 유해 화학물질 관리감독 강화

시 정 및 처 리 요 구 현 황

- (22) 친환경사칭 제품에 대한 대책 강구
- (23) 골프장 농약사용 관련 신속한 조치 필요
- (24) 방사능 피폭가능성이 높은 병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
- (25) 전자파 관리 방안 마련
- (26)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급수시설의 안정성 확보 대책
- (27)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지자체의 지연보고 개선
- (28) 삼성전자 불산사고 관련
- (29) 베트남 PCBs 오염폐기물 처리 타당성 조사 관련
- (30) 환경정책 개선 필요
- (31) 생태환경경제통계지표 개발 및 인력확보방안 마련 필요
- (32) 물휴지 등 생활화학가정용품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성분의 화학물질에 대한 위/유해성 평가 등 필요
- (33) 물발자국 지표 및 인증시스템 도입의 필요성

【본부에 대한 감사 중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관련사항】

- (1) 매립지 지분권 인천으로 이관 필요
- (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부적절한 사업위탁에 대한 관리감독강화 필요
- (3) 수도권매립지 매립기간 연장 및 주민지원 방안 모색 필요
- (4) 수도권매립지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감독 강화
- (5) 온실가스배출량에 대한 부서간 협력관계 구축 필요
- (6) 전자파의 인체유해 관련 국가적 차원관리 필요
- (7) 라돈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필요
- (8) 비정규직 처우개선 필요
- (9) 연산호 군락 훼손에 대한 조사 및 사후조치 철저

【본부에 대한 감사 중 서울시에 관련사항】

- (1) 서울시 청소용역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 필요

시 정 및 처 리 요 구 현 황

- (2)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제각각 방식에 대한 개선
- (3) 식물원(화목원) 조성계획 관련
- (4) 마곡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변경 관련
- (5) 인천수도권매립지 관련
- (6) 서울시민을 위한 행정

▶ 지방청 공통사항 ◀

- (1) 환경부 업무 중 지자체로 이양된 업무에 대한 검토 필요
- (2) 국조보조사업에 대한 정산 철저 필요
- (3) 생태계교란 외래 야생식물에 대한 정확한 모니터링 및 대책 마련 필요
- (4)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강화 필요
- (5) 환경영향평가 이행점검 철저 필요
- (6) 녹조 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필요
- (7) 구제역 가축매몰지 수질조사 철저 필요
- (8) 지방청 소관업무 원활한 이행을 위한 관리 필요
- (9) 4대강 수질 악화 및 어류 폐사 원인 파악 필요
- (10) 수자원의 지속관리 방안 마련 필요
- (11) 특별대책지역 환경규제 개선필요
- (12) 유역환경청 내 구인구직 문제 해소 필요
- (13) 대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철저 필요

▶ 4대강 유역청 공통사항 ◀

- (1) 4대강 사업 이후 녹조 발생에 따른 식수안전 대책 필요
- (2) 4대강 수계관리기금 집행상의 문제
- (3) 하구 오염관리 대책 필요
- (4) 4대강 사업 멸종위기종 실태조사 필요

시 정 및 처 리 요 구 현 황

▶ 한강유역환경청 ◀

- (1) 골프장의 농약사용에 대한 대책 필요
- (2) 한강수계기금의 개선 필요
- (3)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사업비 집행관련 개선 필요
- (4) 인천 SK 석유화학 증축관련 검토 필요
- (5) 보에 설치된 어도관리 대책 철저 필요
- (6) 한강수계 자문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필요

▶ 낙동강유역환경청 ◀

- (1) 하천정화시설의 체계적인 설치 및 운영 필요
- (2) 낙동강 유역 폐준설선에 대한 환경오염 대책 마련 필요
- (3) 환경영향평가 조사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방안 필요
- (4) 관련법령을 위반한 수의계약 체결에 대한 시정 필요
- (5) COD 중심 수질관리 필요
- (6) 주민건강영향조사관련 석면공장 인근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 홍보 필요
- (7) 조류 발생 관련
- (8) 신평·장림 산업단지 주변지역에 대한 악취 대책 필요

▶ 금강유역환경청 ◀

- (1)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생태계 보존 대책 마련 필요
- (2) 대청호 녹조발생 대책 필요
- (3) 대체습지의 건습지화에 대한 대책 필요
- (4) 금강수계에 조류경보제 도입 필요
- (5) 금강변 공산성 붕괴 원인 파악
- (6) 충북지역 산업단지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점검 철저 필요
- (7) 대청호 생태탐방선 도입 계획에 대한 적극 개입 필요

시 정 및 처 리 요 구 현 황

▶ 영산강유역환경청 ◀

- (1) 소규모하수처리장 관리 대책 필요
- (2) 화학물질 유출사고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 필요

▶ 원주지방환경청 ◀

- (1) 포스코 폐놀 유출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 필요
- (2) 숲 가꾸기 사업으로 인한 환경 훼손 대책 필요
- (3) 제천시 왕암동 폐기물매립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 (4) 환경감시단 신설 필요
- (5) 뉴트리아의 한강수계 확산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대구지방환경청 ◀

- (1) 관련법령을 위반한 수의계약 체결에 대한 시정 필요
- (2) 무분별한 수계주변 개발에 대한 대책 필요
- (3) 포항 음폐수 병합처리시설의 적절한 운영 대책 필요
- (4) 내성천 모래 유실관련 사후영향평가 조사 철저 필요
- (5) 대구 평리동 새동네 지역 환경피해 대책 필요
- (6) 환경감시단 인력확충 필요
- (7) 포항테크노파크 2단지 환경영향평가 관련 행정소송 적극 대응 필요

▶ 새만금지방환경청 ◀

- (1)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의 원칙 준수 필요
- (2) 새만금유역 비점오염물질 관리 필요

▶ 수도권대기환경청 ◀

- (1) 수도권 대기개선대책 마련 필요
- (2) 2차 특별대책 수립 관련

시 정 및 처 리 요 구 현 황

(3) 대표성 있는 지역에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필요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 (1) 환경분쟁조정 대상범위 확대 필요
- (2) 소음·진동 관련 분야 조정위원 보강 필요
- (3)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필요

▶ 국립환경과학원 ◀

- (1) 초미세먼지 인력 및 예산 확보 필요
- (2)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전담 인력 예산 확보 필요
- (3) 화학물질안전원 개원에 따른 비정규직 인력 고용승계 필요
- (4) 4대강에서의 물고기 집단 폐사 원인 규명 필요
- (5) 수도권 대기오염 대책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
- (6) 나노물질 안전성 확보 대책 마련
- (7) 4대강 수질 악화 및 녹조 관련 적절한 대책 마련 필요
- (8) 비정규직 처우 개선
- (9) 에코벨 사업의 제도 개선 방안 마련
- (10) 생태교란종 감소 대책 마련 필요
- (11) 전자파 라돈 연구 확대 및 정보 제공 필요
- (12) 해안사구 조사·연구 업무의 기관변경에 따른 대책 필요
- (13) 방사능 영향 연구 확대 필요
- (14) 4대강사업 관련
- (15) 총인처리시설의 응집제 사용에 따른 수질 연구 필요

▶ 국립생물자원관 ◀

- (1) 밀수 등으로 입수된 멸종위기종의 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
- (2) 자생생물조사 등 강화 필요

시 정 및 처 리 요 구 현 황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

- (1) 환경측정분석사 의무고용제 대비 관련
- (2) 교육기자재 교체 및 관리방안 마련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 (1) 에너지 정책 수립에 있어 역할 정립 필요
- (2)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조직의 안정성 제고
- (3)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관련

▶ 한국환경공단 ◀

- (1) 4대강 사업 관련 총인처리시설의 재점검 필요
- (2) 녹조제거 업체의 실적부풀리기 엄벌 필요
- (3) 캠프 하야리아 등의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
- (4) 소각시설 관리 기준 측정 조치 필요
- (5) 공단의 서비스 질 확보 필요
- (6) 음폐수처리시설의 적절 공법 선정 필요
- (7) 에코아스와 올바로 시스템의 적정 운영 방안 마련
- (8) 음식물처리시설 설치 사업 제도개선 방안 마련
- (9) 영농폐기물 수거 사업의 원활할 추진을 위한 대책 강구
- (10) 미군 기지의 토양정화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필요
- (11) 공단의 기념품 구입 관련
- (12) 지방 상수도 누수율 과다에 대한 대책 마련
- (13) 순환자원거래소 운영 내실화 대책 필요
- (14) 압수물자원화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대책 필요
- (15) 자자체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 지원 필요

시 정 및 처 리 요 구 현 황

▶ 국립공원관리공단 ◀

- (1) 지구 온난화에 대한 국내 동식물상 변화 대처 필요
- (2) 자연재해 동식물에 대한 전문가 양성
- (3) 종복원지 선택에 대한 기준 마련 및 종복원 기술원의 인력을 확보하고, 사육되는 반달가슴곰 폐지를 위한 종복원기술원의 역할 필요
- (4) 안전관리요원의 인력 확충 및 임금 인상 필요
- (5) 국립공원의 보존을 위한 제도개혁 방안 마련
- (6) 국립공원관리공단 인력 및 시설 확충 등 개선방안 마련
- (7) 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처벌 강화
- (8) 케이블카 설치 관련 경제성 분석 등 철저
- (9) 국립공원내 관리사무소의 안전장비 확보 필요
- (10) 산사태 발생지 사후관리
- (11) 철새전문연구센터 출장소 설치
- (12) 가야산 국립공원 네이처센터 조성 관련
- (13) 야영장 실정에 맞도록 전기사용료 체계 개선
- (14) 1사1탐방로 제도 보완
- (15) 자연자원 조사사업 결과 활용의 편의성 제고 필요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 (1) 그린에너지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원 감사 등 필요
- (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사채용비리 근절책 마련 필요
- (3) 수도권매립지의 사용기간 연장 관련
- (4) 황화수소 농도 증가 관련 전처리시설 선정의 적정성 검토
- (5) 반입폐기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등 필요
- (6) 쓰레기 불법반입 및 위반에 대한 엄중 처벌 필요
- (7) 음폐수협회와의 계약에 대한 신중 검토 필요
- (8) 쓰레기 반입검사 강화 방안 마련

시 정 및 처 리 요 구 현 황

- (9) 불법시설물 설치에 대한 대책 점검
- (10) 벤젠 등 화학물질 사용에 대한 관리 철저
- (11) 매립지 주변 악취 관리 필요
- (12) 노후화된 기존 고화처리장 대체시설 마련 시급
- (13) 드림파크 문화재단의 부실운영 대책 마련 필요
- (14) 채용위탁업체의 무분별한 개인정보수집 문제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 (1) 해외환경협력센터 운영의 내실화 필요
- (2) 녹색 위장 제품 대책 마련 필요
- (3) 비정규직 처우 개선
- (4) 환경오염 피해구제제도 도입
- (5) 환경기술 성과 활용을 위한 체계적 시스템 구축
- (6) 해외파견근무 직원에 대한 지원 확대
- (7) 중소기업 위주의 환경산업체 지원방안
- (8) 녹색매장 지정 및 운영의 내실화 확보 필요

2) 고용노동부 소관

시 정 및 처 리 요 구 현 황

▶ 고용노동부 본부 ◀

【공통사항】

- (1) 고객에 의한 성희롱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 (3) 유해물질 산업단지 내 직장어린이집 환경개선
- (4) 근로감독관 확충 및 근무기강 확립

시 정 및 처 리 요 구 현 황

- (5) 홍보예산 집행 철저
- (6) 고용노동행정 주민 편의 제고
- (7) 부당한 계약내용 시정
- (8) 공적개발원조 등 국제협력활동 강화
- (9) 재정지원사업 부정수급문제 개선 대책 마련
- (10) 각 고용노동지청에 대한 내부 감사 필요
- (11) 승강기안전기술원 기관장 해임 조치 필요
- (12) 노동부 산하기관의 시대착오적 안보교육에 대한 철저한 조사 필요
- (13) 대우세계경영연구회의 K-Move스쿨 선정 관련, 국민정서를 고려하여 상식에 입각하여 판단
- (14) 중앙노동위원회 4급 이상 근무평가, 5급 이상 승진평가 등 평가 방식에 대한 재검토
- (15) 국회의원의 상임위 활동에 필요한 자료제출요구 등에 비협조하는 행위 근절
- (16) 울진군을 관할하는 지청조정

【고용 부문】

- (1) 60세 정년연장제도 시행 전 정년연장의 조속한 시행 독려
- (2) 60세 정년연장제도 시행 전 “긴세대”의 보호조치
- (3) 시간선택제일자리 창출 지원 강화 및 내실화
- (4)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사업 효과 제고 방안 강구
- (5)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수탁기관 관리감독 시스템 구축 필요
- (6) 취업성공패키지 기초생활수급자 전달체계 변경 검토
- (7) 취업성공패키지 위탁금 정산제도 개선방안 마련
- (8) 피보험자격 관련 과태료부과에 따른 선의의 피해 방지
- (9) 실업급여 보험료율 특례제도 시행 검토
- (10) 모성보호급여 일반회계 또는 고용안정계정 부담 검토

시 정 및 처 리 요 구 현 황

- (11)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수탁기관 관리감독 강화
- (12) 4대 보험 가입여부 공개 등 구직자 보호 대책 마련
- (13) 직업소개업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직접 관리감독 필요
- (14) 직업상담원의 상담직 공무원 전환대책 마련
- (15) 농·축산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 마련
- (16)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의 실적 관리 적정화
- (17) 해외취업연수사업 등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방안 강구
- (18) 해외취업연수사업 등 청년 일자리사업 내실화 방안 강구
- (19) 유사사업에 대한 지역 간 지원금액 편차 해소
- (20) 건설일용근로자 기능지원사업의 훈련비 단가 상향
- (21)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근절대책 마련
- (22) 내일배움카드제 제도개선 방안 강구
- (23) 공공기관 주도적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실시방안 마련
- (24) 기금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예방 시스템 구축
- (25) 여성고용비율·여성관리자비율 제고를 위한 수단 강구
- (26) 고용노동 통계조사의 내실화
- (27) 장애인 예술교사 취업의 저변확대를 위한 업무협조
- (28) 사회적기업제품 고용노동부 구매 실적 제고
- (29) 사회적기업 지원 일원화
- (30) 외국인 고용관련 표준근로계약서 활용방안 제고
- (31) 고용센터 추가 신설

【노동 부문】

- (1) 통상임금판결과 관련한 모성보호급여 검토
- (2) 가학적 인사관리 방지대책 강구
- (3) 솔로몬 노무법인 관련 사건 철저한 조사
- (4) 노동관계법 위반 공공기관에 대하여 엄정한 조치 필요

시 정 및 처 리 요 구 현 황

- (5) 감정노동자 근로실태조사 및 근로조건 개선 대책 필요
- (6) 브랜드(프랜차이즈)별 근로감독 방안 검토
- (7) 학원강사 처우개선 조치 마련
- (8) 야간근로 관련 실태조사 실시 및 제도개선 방안 강구
- (9) 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필요
- (10) 체당금사건 신속처리 위한 방안 마련
- (11) 중증장애인 고용 사업장 최저임금법 준수 위한 조치 필요
- (12) 경제교과서의 최저임금제도 관련 내용 수정 필요
- (13) 감시·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법 적용제외 검토
- (14) 최저임금법 준수 위한 근본적 대책 강구
- (15) 숙식비 최저임금 산입 방안 검토
- (16) 퇴직연금 가입 활성화 대책 필요
- (17) 노동분쟁해결지원팀 운영 내실화
- (18) 통상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검토
- (19) 공공부문 민간근로자 처우 개선
- (20) 쌍용자동차 노조에 대한 손배소 문제 해결
- (21) 파견근로자 보호 대책 마련
- (22) 공공기관 등의 고용세습 철폐
- (23) 기간제교사 처우 개선
- (24) 아르바이트 노동자 보호
- (25)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 안정
- (26) 근로감독 재실시
- (27) 불법파견 감독 강화
- (28) 재단법인 지도·감사
- (29) 고용노동환경 실태조사
- (30)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조설립신고 반려 처분 취소
- (3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노조아님통보’ 행정처분 취소

시 정 및 처 리 요 구 현 황

(32) 도시철도 노조실태조사 실시

【산재 예방 및 보상 부문】

- (1) 산재병원 수지차보전 및 간호등급 상향조정 노력 필요
- (2) 산재모병원 건립 검토
- (3) IT업종 근로자 건강검진 지원방안 강구
- (4) 산재은폐 방지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
- (5)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다양화
- (6)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재심사절차 개선 방안 마련
- (7)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적용대상 확대 필요
- (8) 산업안전감독 등 실시
- (9) 도급사업 시 수급인 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 대책 마련
- (10)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책임 확대
- (11) 생식독성물질 관리
- (12) 마필관리사 안전보건 제고
- (13) 석면안전관리 강화
- (14) 건설업 자율안전건설팅제도 전면 재검토
- (15) 반도체사업장 근로자 보호
- (16) 근로복지공단과 산재병원 회계통합 검토

【본부에 대한 감사 중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관련사항】

- (1) 고용노동연수원의 분리방안 등 검토
- (2)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
- (3) 건설근로자공제회 업무 전반에 대한 추가감사 실시
- (4) 건설근로자공제회의 비리행위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 통보 및 비리행위 방지대책 마련

시 정 및 처 리 요 구 현 황

【6개 지방청 공통사항】

- (1) 장시간 근로 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 (2) 장애인취업을 위한 MOU체결 등 협력 강화
- (3) 복수노조 사업장에 대한 감독 강화
- (4) 근로자파견 감독 철저
- (5) 화학공장 관리 강화
- (6) 간접고용 근로자 보호
- (7) 비정규직근로자 보호
- (8) 공정하고 청렴한 민원처리
- (9)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법 위반을 예방할 수 있는 사전적 방안 마련
- (10) 이탈신고된 외국인근로자의 소재지 파악 업무 개선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 (1) 솔로몬 노무법인의 공인노무사법 위법혐의 철저한 조사
- (2) 법무보호복지공단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조사 및 엄정조치
- (3) 신고사건 처리기간 단축 위한 조치 필요
- (4) 서울도시철도공사 근로감독 계획 수립
- (5)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
- (6) 지하철 역사 석면안전관리 강화
- (7) 용역업체 비정규직 보호
- (8) 사업장 노사갈등 해소
- (9) 고용허가제 위반 및 퇴직공제 미가입 사실관계 확인 후 적절한 조치시행
- (10) 부정수급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리 철저

시 정 및 처 리 요 구 현 황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

- (1)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실시
- (2) 부당노동행위 고발사건 처리 철저
- (3) 용역업체 비정규직 보호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

- (1) 경남지역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제고 방안
- (2) 산재은폐 방지 위한 관리감독 철저
- (3) 진주의료원 퇴직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대책 마련
- (4) 현대중공업 근로감독 실시 및 산재보험료 감액분 환수
- (5) 주물업체 산업안전지도·감독 강화
- (6) 용역업체 비정규직 보호
- (7) 조선업 산업재해 감소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

- (1) 대구MBC 체불임금 청산 위한 지도감독 강화
- (2)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 대책 마련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

- (1) 건설현장 산업안전감독 강화
- (2)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성실외국인 재입국 취업제도 적극 활용 대책 마련
- (3) 사업주 지원 원격훈련의 부정수급 문제 등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
- (4) 3M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수사 촉구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 (1) 화력발전소 건설현장 산업안전감독 강화

시 정 및 처 리 요 구 현 황

(2) 불법과건 문제 해소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

- (1) 노사정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
- (2) 제도개선 건의
- (3) 의제별·업종별 위원회 활성화
- (4) 지역노사민정협의체 지원 체계 개선
- (5) 회의운영 내실화
- (6) 합의사항 이행률 제고

▶ 중앙노동위원회 ◀

- (1) 노동위원회 독립성·공정성 확보
- (2) 금전보상 산정기준 구체화
- (3) 회의 참여율 제고
- (4) 구제명령 이행률 제고
- (5)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의 엄정한 운영
- (6) 구제이익 관련 기간제근로자 보호 대책 마련
- (7) 화해제도 내실화
- (8) 중노위 재심판정 재심유지율 제고
- (9) 심문회의 개최 기간 준수

▶ 최저임금위원회 ◀

- (1) 최저임금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 강화

【소속 공공기관 공통사항】

- (1) 부당한 계약내용 시정
- (2) 청렴도 개선방안 및 비리행위 등 방지조치 계획 마련

시 정 및 처 리 요 구 현 황

▶ 근로복지공단 ◀

- (1) 삼성전자 백혈병 사건 항소취하 및 삼성측 보조참가 금지
- (2) 산재보험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다양화
- (3) 산재보험심사위원회 심사절차 개선 방안 마련
- (4) 산재보험급여 부정수급 방지대책 마련
- (5) 질병판정위원회 위원 공개 및 심의자료 사전 제공
- (6) 산재근로자 멘토링 사업에 산재관련 단체 참여 검토
- (7) 업무상질병인정기준 반영 위한 집행과정 개선 필요
- (8) 산재병원 경영합리화 대책 마련
- (9) 외국인근로자 통역서비스 확대 및 내실화
- (10) 산재의료기관 현지조사 및 처벌 강화
- (11) 자문의사제도 개선방안 마련
- (12) 대부사업 연체자 조기 신용회복 대책 필요
- (13) 부실 산재·장해판정 시정 대책 필요
- (14) 제3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제한 필요
- (15) 부당한 계약내용 시정
- (16) 부당이득 환수율 제고
- (17) 근로복지공단 소송 전담부서 설치 및 변호사 채용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 (1) 산업안전감독 강화
- (2) 외국인근로자 산업안전 대책 마련
- (3) 감정노동자 보호 노력 강화
- (4) 보조금 및 용자금 관련 제도 개선
- (5) 위험성평가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6) KOSHA 18001 발전방안 수립
- (7) 역학조사 절차 개선

시 정 및 처 리 요 구 현 황

- (8) 공단 직원 교육 강화
- (9) 서비스업 산업재해 감소
- (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업재해 감소

▶ 한국산업인력공단 ◀

- (1) 사업주 원격훈련지원 사업 이관에 따른 문제점 개선방안 강구
- (2) EPS센터 효율화 방안 마련
- (3) 기능경기대회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 방안 마련
- (4) 직업방송의 EBS와의 연계강화 및 콘텐츠 통합 방안 마련
- (5) 직업방송의 시청률 제고방안 마련
- (6) 숙련기술인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방안 강구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 (1) 사회적기업의 비리·부실운영 문제에 대한 대책강구
- (2)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유인책 마련
- (3) 공공기관에 대한 적극적 판로개척 방안 마련
- (4)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의 면밀한 추진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

- (1) 법률자문 계약방식 변경을 통한 비용 절감방안 강구
- (2) 여성사감 비중 상향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 (1) 노동인권 교육과정 강화
- (2) 조직관리 부적정 문제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 마련
- (3) 고용노동연수원의 공익적 노동교육 지원기능 강화

시 정 및 처 리 요 구 현 황

▶ 건설근로자공제회 ◀

- (1) 건설일용근로자 공제부금 일액 현실화
- (2) 지급 불능화된 퇴직공제금 반환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 (3) 자의적 자산투자 예방대책 마련
- (4)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화 방안 마련

▶ 한국고용정보원 ◀

- (1) 신직업발굴 및 소개사업 동시 추진 필요
- (2) 인사규정 위반한 인사행태 방지대책 마련

▶ 한국잡월드 ◀

- (1) 경쟁력 강화조치 지속적 실행
- (2) 광고수입 확충 및 중소기업 활용 대책 마련
- (3)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직업체험 기회 보장
- (4) 체험관 강사 및 상담사에 대한 적정 보수기준 제시
- (5) 안전사고 방지 위한 특별 점검 실시
- (6)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코너 신설 검토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1) 장애인 고용부담금 징수실적 제고
- (2) 장애인 취업의 질 제고
- (3)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악용하는 사례 근절
- (4) 중증장애인 취업을 탈피한 장애인 취업정책의 다변화
- (5)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인프라 확충
- (6) 장애특성에 따른 취업안내, 직업훈련과정 촉구
- (7) 장애인고용공단의 인력 확충
- (8) 질' 중심의 성과지표 촉구

시 정 및 처 리 요 구 현 황

- (9) 공단 근로조건(경력산정) 차별 문제
- (10) 여성 장애인 취업률 제고
- (11)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의 실효성 제고
- (12) 취업성공패키지 위탁사업비(성공금) 적정 사용
- (13) 부당한 계약내용 시정
- (14) 중증장애인의 직업훈련 특별배려 필요

▶ 노사발전재단 ◀

- (1) 시간선택제 일자리 컨설팅 사업의 효과 제고
- (2) 해외투자기업 지원사업 내실화
- (3) 직원 처우 개선

▶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

- (1) 승강기 안전관리 철저
- (2) 방만한 기관경영 해소
- (3) 신청사 건립 계획 조정
- (4) 노사갈등 해소

3) 기상청 소관

시 정 및 처 리 요 구 현 황

【기상청 전반에 대한 사항】

- (1) 장비 납품 비리, 인사 관련 비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대책 필요
- (2) 기상청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전환 고려 필요
- (3) 기상청 산하 지방청 및 지방기상대의 역할 점검 필요
- (4) 기상산업진흥원의 업무 변경 필요

시 정 및 처 리 요 구 현 황

【기상 장비 관련 사항】

- (1) 납품업체 와 기상청의 장비 관련 독점 문제 해소
- (2) 기상장비 국산화율 제고
- (3) 지진관측장비 구매사업의 감사원 감사 필요
- (4) 국정감사시 허위진술자 등에 대한 징계 필요
- (5) 기상장비의 구매 관련 입찰·평가·검증 등 전과정 시스템 개선
- (6) 기상산업진흥원 업무의 조달청 이관 필요
- (7) 기상 라이다 도입 관련
- (8) 일부 기상장비의 전용을 통한 추진
- (9) 해양기상관측장비의 확대 필요
- (10) 기상장비의 과도한 예비품 구입 지양
- (11)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 관련 의문 해소 필요
- (12) 기상관측장비의 부실한 유지보수 지양

【인사, 인력 및 조직 관련 사항】

- (1) 예보 부서에 대한 인력 고려 등 예보 역량 강화 필요
- (2) 지진관련 인재 양성 필요
- (3) 기상캐스터의 전문성 확보 및 전문가 충원 노력 필요
- (4) 국제 기구에 대한 파견 인력 확충
- (5) 국립기상연구소의 비정규직 인력 축소 필요
- (6) 기상콜센터 상담사의 처우 개선
- (7) 인력 적재적소배치 필요
- (8) 해양기상청 신설 재검토 필요

【기상 행정 및 감시/감독 관련 사항】

- (1) 기상청 내부 감사 기능 강화
- (2) 인사 공백으로 인한 문제 해결 필요

시 정 및 처 리 요 구 현 황

(3) 기상청 직원의 공직기강 강화 필요

【기상정보 접근성 및 예/특보 관련 사항】

- (1) 해양기상정보 서비스 확대 필요
- (2) 기상기후산업 특화기술 민간이전의 적절 방안 마련
- (3) 가뭄전망 등 공공기상서비스 강화
- (4) 안개특보 및 산지특보를 포함한 기상예보에 대한 정확도 확보 방안 마련

【기타 사항】

- (1) 기상방송 및 슈퍼컴퓨터의 자활방안 마련 필요
- (2)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기상청의 적극적 역할 필요
- (3) 평창 동계올림픽 기상조절 기술 관련
- (4) 소방방재청 등 지진 관련 기관과의 협조 방안 마련
- (5) 지진 관련 적절한 기준 마련 필요
- (6) 지진 관련 예산 및 인력 확보 필요
- (7)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지원 확대 필요
- (8) 기상 R&D 사업의 철저한 사전 검토 및 사후 평가 필요
- (9) 자동기상관측장비 운영개선 대책 필요
- (10)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기상장비 설치 관련 감사원감사 적절한 대응 필요
- (11) 국립기상연구소 제주혁신도시 이전 신속 추진
- (12) 기상기후아카데미에 대한 사업 과다 수주
- (13) 음파관측소 관리 부실로 인한 인공지진 대응 부진
- (14) 도시농림사업 프로젝트의 책임있는 추진 필요
- (15) 기상정보를 활용한 골프지수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부실
- (16) 기상관측표준화 사업의 운영 강화 필요

나. 대상기관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 환경부 소관

▶ 환경부 본부 ◀

【공통사항】

(1) 국고보조사업 미정산에 따른 대책 수립 필요

- ▷ 환경부에서 지자체에 교부한 국고보조금 중 종료 후 정산되지 않은 사업이 22.3%에 달하고 있으므로 미정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

(2) 환경부 장애인 고용률 제고 필요

- ▷ 환경부 장애인 고용률이 정부 부처 최하위인 1.74%인 만큼 장애인 고용률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고, 현재 비정규직 위주(87.5%)로 채용하고 있으므로 개선책을 수립할 것.

(3) 환경·기상 분야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인식 필요

- ▷ 4대강 사업, 음폐수 대란, 기상청 라이다 장비 구입 관련 부정 등의 정책 실패에 대하여 현정부가 책임을 인식하고 대책을 수립할 것.

(4) 환경단체 전문성 확보 필요

- ▷ 현재 환경단체가 정치적 성향이 강하므로 환경문제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해 나갈 것.

(5) 환경복지 정책에 대한 홍보강화 필요

- ▷ 상수도 사업, 슬레이트 지원사업, 어린이 활동공간 진단·개선사업, 어린이용품 환경안전진단, 환경성질환 예방, 실내 라돈관리 종합대책, 생태관광 프로그램 등 환경복지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

(6) 환경벤처 육성책 마련 필요

- ▷ 환경벤처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

(7) 현 정부 환경정책 공약 일관성 있게 추진 필요

- ▷ 지난 9월 25일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대통령은 환경인권을 규제로 보고, 기업 투자에서 많은 애로를 해소하는 분야라고 발언하였음. 또한, 도시형공장 설립 등 환경개선 공약에 역행하는 사안이 논의되었던바, 현 정부의 환경정책 개선 공약이 후퇴되지 않도록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

(8) 환경부 소관 법률 인·허가 의제처리 관련

- ▷ 국내에서 환경부 소관 법률 80여개 중에서 680개 조항이 인·허가 의제처리 되고 있는데, 의제처리 된 사업에 대한 통계를 만들도록 할 것.
- ▷ 환경규제 완화를 내걸고 추진하는 3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

- ▷ 수도권에 ‘도시형 공단’ 입주와 관련하여 재검토하고, 경기도내 입주율이 낮은 공단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것.

(9) 상습적 환경 분야 법령 위반 업체 등에 제재 조치 강화 필요

- ▷ 최근 3년간 3회 이상 수질과 대기 분야의 환경 관련 법령 위반 사업장이 369곳이고, 10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은 11곳이며, 특히 폐기물 업체가 다수 존재하고 있음. 10회 이상 상습적으로 환경 분야 법령을 위반한 업체의 경우 영업 정지나 현행보다 가중된 처벌을 하도록 하는 등 제재 조치를 강화할 것.

(10) 환경부가 기상청을 자체감사기관으로 포함하는 방안검토

- ▷ 기상청장의 경우 비리 문제로 사임하였고 기상산업진흥원장 및 본부장 등이 비리로 공석인 상황으로 내부 관리능력이나 감독/감시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기상장비 업무를 기상산업진흥원으로 이관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3년간 한번도 실시하지 않는 등 감시감독 기능이 미흡한 상황으로, 환경부가 기상청을 자체감사기관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상하수도 부문】

(1) 구제역 매몰지 발굴에 따른 생물학적 안전성 강화 필요

- ▷ 구역제 매몰지 침출수 유출 및 구제역 감염 가축의 과다 매몰로 인한 가축 사체의 불완전 부패 등으로 매몰지 굴착 시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 및 부처 간 협업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2) 군부대 내 토양환경오염에 대한 통계 관리강화 필요

- ▷ 군부대 내 토양오염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환경기초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대한 현황 파악을 통하여 환경오염저감방안을 국방부와 협의하여 마련하도록 할 것.

(3) 강릉포스코 토양오염 원인 규명 및 향후 방지 대책

- ▷ 강릉포스코 토양오염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철저히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점검할 것.

(4) 먹는샘물 경도기준 완화 필요

- ▷ 먹는샘물의 수질기준인 경도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

(5) 하수관거 관리대행업체 등록기준 개정 필요

- ▷ 흡인식 차량을 갖춘 경우 하수관거 관리대행업체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하수관거 관리대행업체 등록기준을 개정하고 관련 현황 자료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할 것.

(6) 주방용오물분쇄기(디스포저)에 대한 대책 마련

- ▷ 음식물폐기물을 80% 이상 회수할 수 있는 제품 중 인증된 제품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인증 받은 제품과 달리 개조되거나 전혀 다른 제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조속히 실태조사를 하여 제도개선, 처벌수위 및 단속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 ▷ 하수도가 막히거나, 하수구 내부에서 가스가 차서 역류하거나 폭발하는 등 디스포저 사용 시의 부작용 또는 위험성에 대해 충분하게 검토할 것.
- ▷ 디스포저 사용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정책에 역행하는데, 정부의 자원재활용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

(7) 상수도 위기관리시스템 관리감독 강화 필요

- ▷ 전국 상수도 보완시스템이 외부 해킹에 취약하고 방사능오염에 따른 대응훈련 및 회의 등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

(8)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기준 강화

- ▷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설계·시공 제품도 제조제품의 구조·규격·재질 기준을 적용하도록 할 것.
- ▷ 정화조 중 EPR 재질의 정화조도 오수처리시설과 같이 보강링 기준을 적용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시 하중으로 인한 측면 보호벽을 설치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것.

(9) 토양오염조사 개선 방안

- ▷ 주유소 토양오염도 조사는 정기검사, 정밀조사, 토양정화조치, 최종 검증 등 모든 과정에서 주유소 운영자가 업체를 선정하는 ‘갑을관계 구조’ 임.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탁제’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 토양오염우려가 높은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을 정리하여 관리하고, 검사 방법을 구체화하고 공사 착공 후에도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정유사들이 자율협약에 의해 시료를 채취하기보다는 환경부 소속 공공기관을 통하여 토양오염 검사를 하도록 할 것.

(10) 노후화된 옥내급수관 및 상수도관 관리방안 마련

- ▷ 옥내급수관 99%가 관리 되지 못하여 노후화된 급수관을 통해 녹물이 수돗물에 섞여 급수되어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 ▷ 전체 상수도관의 22.7% 이상이 20년을 초과한 노후 상수도관이며, 연간 급수량의 10분의 1이 누수 되고 있음. 또한 ‘상수도망 최적화시스템 구축사업’은 진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노후 상수도관 교체를 위해 법을 개정하거나 국비를 지원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할 것.

(11) 하야리아 부대 주변 토양 오염 물질 기준 강화 필요

- ▷ 하야리아 부대 주변 토양 오염 물질이 우리나라 토양오염 관리대상 물질에 포함되지 않아 인체 독성물질임에도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리대상에 포함시킬것을 검토할 것.
- ▷ 부산 시민 공원, 미군기지 오염토양 정화비용 분담 문제가 원만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중재할 것.

(12)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의 소규모 공장 및 일부 대형공장 등에 대한 환경오염 대책 마련 필요

- ▷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의 500m² 이하인 제조업체는 자동차 부품 등 중금속 폐수를 배출하더라도 「수도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간의 공장에 관한 정의가 모순되어 ‘법적 미비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레미콘공장을 비롯한 대형공장 등도 상당수 입지하고 있음. 상수원보호구역 및 취수지점의 중요성을 고려해볼 때 이들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관련법을 정비하고 이러한 공장 등에 대한 전수조사와 이로 인한 비점오염 및 토양오염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할 것.

(13) 동일 수원지 多브랜드 체제로 인한 불합리한 생수 가격 차별 개선

- ▷ 동일한 수원지의 생수가 여러 브랜드로 생산되고, 가격도 차이가 나고 있음. 대부분이 소비자는 대기업 제품에 대해서는 더 좋은 물로 인식하여 더 비싼 돈을 주고 구입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대기업이 폭리를 취하게 되는 상황인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 수원지에 1개 브랜드 제도를 다시 시행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것.

(14) 폐광산 토양·지하수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 ▷ 폐광산 오염에 대한 대처가 부처별로 집행되어 각 과정에 대한 책임소재가 모호하여 정화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단일 부처에서 환경조사와 정화를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 기초환경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폐금속광산 1,334개소와 정밀조사가 필요한 13개 폐석면광산 및 84개 폐석탄 광산에 대해 조속히 환경조사를 실시할 것.

(15) 인천 부평구 부영공원 토양오염 관련

- ▷ 미군 반환부지인 부영공원에서 2007년에는 멸종위기2급 보호종인 맹꽂이가 발견되었음. 2012년에는 다이옥신이 검출되었고, 지난 8월에는 앞다리가 3개인 기형맹꽂이가 발견되었는데, 그 원인에 대하여 조사를 할 것.
- ▷ 부영공원이 지목상 임야와 잡종지이지만 현재 수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2009년 인천시가 도시관리계획 상 근린공원으로 고시한 공원이므로, 2지역 기준이 아닌 1지역 기준으로 정화하도록 할 것.

【수질 부문】

(1) 강하구 수질 생태환경 개선방안 마련 필요

- ▷ 해마다 하구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나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생태환경 개선을 위한 법 마련 및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 특정 폐수배출시설의 합리적 배출기준 마련 필요

- ▷ 특별대책지역, 배출시설 제한지역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원폐수 수질을 최소 먹는 물 기준까지 허용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등 합리적 배출기준을 마련할 것.

(3) 새만금 수질개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 대책 수립 필요

- ▷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왕궁 특수지역에 현업축사매입과정에서 폐업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매도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수질개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 수립할 것.

(4) 4대강 사업에 대한 대책 수립 필요 등

- ▷ 수자원확보, 수질개선 등의 명분을 내세워 4대강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생태계 파괴, 국가 예산의 손해를 끼친 환경부 4대강 사업의 책임자들 반성할 것.

- ▷ 4대강 녹조 억제를 위하여 보의 개량 또는 해체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환경부가 주체적으로 근본대책을 수립할 것.
- ▷ 4대강에 대한 근본 대안 마련을 위하여 의원들이 4대강 재자연화 관련 법안을 발의하였으므로 환경부는 이 법률들을 검토한 후 의견을 마련해 볼 것.
- ▷ 총인처리의 급작스런 추진에 따라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환경부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라도 전반적인 재점검하고 개발논리로 인하여 환경부의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할 것.
- ▷ 총인 시설에서 예산 대비 효율성 평가, 전문가의 인적 확보, 이며, 실질적인 관리의 허점에 대한 보완, 방류수 기준 문제 등에 대한 합리적 조정, 약품 과다투여 문제 관련 자동제어 시스템 사용 여부 등에 대해 검토 후 저감 근본대책을 수립할 것.
- ▷ 4대강 사업 이후 수질관리를 위하여 총인처리시설에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할 것.
- ▷ 4대강 환경영향평가 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 졌는지 확인하고 개선사항 도출을 위하여 향후 계획 수립할 것.

- ▷ 4대강 사업 관련 감사원 감사나 국정감사로 기 밝혀진 사항 외에 추가로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파악할 것.
- ▷ 감사원 감사 결과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이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둔 사업으로 조작, 변경되는 과정에서 과학원에서 조사를 통해 수질 악화 및 녹조의 종류 확산 등의 조사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네 번이나 보고하였음이 밝혀진 바, 감사원에 요청한 43건의 자료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할 것.
- ▷ 4대강 정비사업은 총 22조가 들어간 대규모 국책사업이며, 철저한 검증 없이 보철거를 논하는 것은 소모적인 논쟁임. 현 시점에서 녹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
- ▷ 감사원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가 나왔으므로 면피용의 4대강 조사위원회의 활동 진행은 의미가 없음. 현재의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 철거는 불가피하고, 지금은 4대강사업의 타당성보다는 책임과 복원을 따질 때이며, 환경부가 철저하게 복원 계획을 세울 것.
- ▷ 4대강 사업의 잘못이 드러날까 봐 국민의 건강, 국토의 환경과 직결되는 제도개선에 반대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 지난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보호하고 반대 의견에 대응하기 위해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던 환경부 사업들을 면밀히 조사하여 보고할 것.
- ▷ 보 수문 개방 시나리오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할 것.

- ▷ 국무총리실 조사평가위원회와 별도로 환경부가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수문개방 방안과 그 밖의 생태계 복원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바로 내년부터 실시하도록 할 것.
- ▷ 환경부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훈장 6명, 포장 8명, 대통령표창 20명, 국무총리 표창 27명 총 57명을 훈포상하였음. 4대강 사업이 예산을 낭비한 실패한 사업으로 드러나고 있는 만큼 사업 추진에 앞장서 상훈을 받은 사람들은 책임을 지도록 할 것.
- ▷ 국립환경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수온에 의해서 독성을 가진 남조류 마이크로시스티스(Microcystis) 비율이 가장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향후에도 수온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5) 상수원 오염물질 유입 단속강화

- ▷ 4대강의 지류에서 상수원에 오염물질이 유입되어 어류폐사가 되고 있으므로 단속을 강화할 것.

(6) 수질예보제 관련 시정 필요

- ▷ 유사한 구간에서 수질예보제는 ‘경보해제’가 발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류경보제는 ‘경보발령’이 되어 국민들 입장에서는 수질이 어느 정도 악화되었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해 시정할 것.

(7) 상수원보호구역 협약에 의한 지정유예 방지책 마련

- ▷ 「수도법」 상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광역상수원인 전북 진안군 용담호의 경우 협약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유예하고 있으므로 해당 협약이 유효한지 유권해석을 내려 지자체에 통보할 것.

【폐기물 부문】

(1) 서울, 경기도 자체 폐기물처리장 설치 필요

- ▷ 서울 및 경기도가 자체 폐기물 처리장 설치를 하도록 독려할 것.

(2) 폐목재 재활용정책 개선필요

-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정책으로 폐목재를 파쇄한 우드칩의 수요처 쏠림현상이 발생하여 관련 업계의 원재료 확보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폐목재 물질재활용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3) 지정폐기물 등의 처리방식 변경 필요

- ▷ 지정폐기물 등이 발생지역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책 마련할 것.

(4) 수도권지역의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대책마련 필요

- ▷ 수도권지역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5) 소각·매립부담금 도입을 위한 사전검토 필요

- ▷ 소각·매립부담금 도입을 위하여 소각·매립량 감소 효과 검토 등 제도 도입에 따른 사전타당성 검토 선행할 것.

(6)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대책 마련

- ▷ 자원순환사회의 촉진을 위하여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안을 점검 하도록 하고, 재활용업을 활성화하며, 네거티브방식의 재활용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 국가와 국민 환경을 우선시하는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안 성안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7) EPR제도 재평가 필요

- ▷ EPR제도가 시행된지 만 10년이 된 상황이므로 해당 제도에 대해 재평가할 것.
- ▷ 통합공제조합의 설립으로 공제조합의 독점적 지위가 강화되고 재활용업자가 종속될 우려가 있는 만큼 상호 동등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 공제조합의 비리 근절이 되지 않는 것이 환경부 출신 인사가 근무하고 있어 환경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것.

(8) 농촌폐기물 수거체계 개선필요

- ▷ 농촌폐비닐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수거보상금에 대한 국고지원금 상향하고 회수시설 설치할 것.
- ▷ 수거 폐비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신규폐비닐 처리시설 설치, 처리시설의 효율성 제고방안 마련할 것.
- ▷ 폐농약통 수거율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할 것.

(9) 폐자동차 재활용 저해요인 개선 필요

- ▷ 차폐에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들이 혼입되어 재활용률의 저하를 가져오고 있으므로 개선책을 마련할 것.
- ▷ 폐차장에서 올바른시스템과 에코아스시스템에 중복으로 입력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

(10) 재제조 산업 활성화 필요

- ▷ 재제조품의 품목확대 및 발굴·육성을 위해 검토할 것.

(11) 빈용기(빈병)보증금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 대상품목 확대, 보증금 액수 현실화 등 빈용기(빈병) 보증금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할 것.

(12) 재생아스콘 재활용률 제고방안 마련 필요

- ▷ 폐아스콘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건설폐기물 처리 시 폐아스콘과 다른 건설폐자재가 혼합되어 배출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할 것.

(13) 건설폐기물 분리·선별 원할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 ▷ 건설폐기물 분리배출제도가 원활히 추진되고 있지 못하므로 분리선별업 신설 등 분리선별할 수 있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것.

(14) 공사장폐기물 처리 관련 개선방안 마련 필요

- ▷ 현재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공사장 생활계폐기물의 처리방법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등 공사장 생활계폐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할 것.

(15) 나대지상 건축공사 분리발주 대상에서 제외 필요

- ▷ 나대지상의 건축공사의 경우 분리발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할 것.

(16) 폐기물 재활용으로 에너지 수급문제 해결방안 모색

- ▷ 저탄소녹색마을 사업, 음폐수 바이오사업들이 지지부진한 상태이므로 해당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최근 불거지고 있는 전력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할 것.

(17) 청소용역노동자 처우개선 방안 마련

- ▷ 청소대행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독립채산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지자체의 청소용역노동자의 경우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관련 현황을 철저히 조사할 것.

(18) 에코아스시스템 허위 보고 개선방안 마련

- ▷ 현재 폐자동차 부품 해체 시 에코아스 시스템에 등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폐차장에서 시스템에 허위로 보고하고 있는 상황이고 냉매가스도 수거되지 않고 대기 중에 날려버리고 있는 상황이므로 폐자동차의 회수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폐자동차의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적인 개선방안 마련할 것.

(19) 폐전자제품 재활용 의무율 합리적 조정 필요

- ▷ 품목별 재활용 의무율을 부과하는 현재의 폐전자제품의 재활용제도 대신 전체 재활용목표량에 집중하고 제품군별 달성방식은 생산자들에게 자율성을 줄 수 있도록 하며, 재활용 의무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

(20) 일정규모 미만 자원재활용업 단속강화에 대한 입장 필력

- ▷ 신고의무대상 아닌 일정규모 미만의 자원재활용업체에 대한 지자체 단속강화 관련 환경부 입장 밝힐 것.

(21) 의료폐기물 권역별 처리구축체계 마련 필요

- ▷ 의료폐기물이 권역별로 처리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22) 폐기물처리시설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 ▷ 허가받은 폐기물 운반차량과 실제 운영하는 차량이 상이한 등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허가와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할 것.

(23)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율적 자원화 방안 강구 등

- ▷ 군 지역은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대상 지역에서 제외되어 재활용이 가능한 상당수의 자원이 낭비되고 있는바, 아파트나 상가 등이 밀집되어 있는 군 지역의 경우에는 직매립 금지대상 지역에 포함하고 소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재활용 의무를 강하게 부여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것.
- ▷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률 산정 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방법별로 실제 활용되고 있는 정확한 양을 파악하여 산정하도록 개선할 것.
- ▷ 음식물을 재활용하는 방법에는 사료·퇴비화, 바이오가스 등 여러 방식이 있고, 각 분야별로 수많은 공법과 기술이 있으나 지자체가 이러한 기술과 공법을 검토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환경부가 효율성 높은 공법과 기술, 신기술에 대한 검증·관리 및 육성 방안을 마련할 것.

- ▷ 음식물쓰레기의 고품연료 제조 허용 타당성을 검토할 것.
- ▷ 음폐수를 소각시설 약품대체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음폐수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할 것.
- ▷ 공적자본이 투입된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에서 생산된 사료가 유기질 비료의 원자재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바, 조사를 통하여 제품의 납품관계 등 운영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점검할 것.
- ▷ 환경부는 음폐수를 소각장에 반입해서 소각처리할 계획인데, 음폐수를 대량 소각하는 경우 음식물쓰레기와 생활쓰레기를 분리배출할 필요가 없어지고 환경부 정책의 골간인 자원순환 개념 자체가 흔들리게 됨. 또한 음폐수 소각은 다이옥신을 유발할 위험이 크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인바, 음폐수 대량소각의 유해성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할 것

(24) 음폐수 바이오가스시설 설치사업 관련 감사원 청구

- ▷ 국고 160억, 지방비 187억, 총 534억원이 소요된 동대문 환경자원센터가 가동중단이 된 상태임. 환경부에서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하여 거액을 투자한 바이오가스시설 사업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요청함.

(25)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성공적 정착 위한 개선방안 마련

- ▷ 현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용봉투가격이 지자체별로 차이가 많

고, 시행방식도 제각각이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할 것.

(26) 폐가전 문전수거사업 활성화 방안

- ▷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산, 인력, 기존업체와의 관계 등으로 인해 실적이 저조하거나 제도도입을 반대하고 있음. 물량 부족으로 수거비용이 과다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시행함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법적·제도적 지원 이외에 지자체의 기반시설 확보 지원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할 것.

(27) 폐기물부담금 부과와 관련 제조자의 범위 명확화

- ▷ 폐기물부담금 문제에 있어 생산자들이 재활용하지 않으면서 형식적으로 재활용하는 것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할 것.
- ▷ 폐기물부담금과 관련하여 지난해 별도구입 플라스틱 포장재 폐기물부담금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음. 판례에서는 ‘생산된 제품과 제품을 담는 포장재를 별도 상품’ 이라고 판시하였는데, EPR제도가 확장하면 제조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8) 폐기물 매립에 대한 근본적인 틀 전환 필요

- ▷ 매립 폐기물을 매립지에서 일일이 검사하는 방식을 전환하여 배출시부터 분리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존 방식의 틀을 전환하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대기 부문】

(1)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지원책 마련 필요

▷ 지자체의 온실가스감축 지원을 위한 정부대책을 마련할 것.

(2) 기후변화 적응대응 시스템 강화 필요

▷ 기후변화 대응 관련 인원, 예산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할 것.

▷ 지자체 기후변화 취약성평가 조사시스템 부족을 보완하고, 지자체 적응사업 전담인력 확보 및 인식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할 것.

(3) 온실가스배출 규제방안 마련

▷ 대규모 공장증설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4)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환경성 관리방안 수립

▷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목표연도는 2020년인데 반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좌우하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목표연도는 2030년으로 괴리가 있는 상황이므로 부처 간 조정 및 협의를 통하여 에너지기본계획의 환경성 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것.

(5) 주유소 유증기 저감대책 마련

- ▶ 휘발유 유조차가 주유소에 휘발유를 자주 공급하지 않아 저장탱크의 유증기가 곧바로 회수되지 못할 경우 저장탱크의 유증기가 통기관을 통해 일부 대기 중으로 비산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6)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목표달성량 산정식 일원화

- ▶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목표달성량을 확인하기 위한 산정식이 지자체와 수도권대기환경청 간 상이하므로 환경부 차원의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고, 수도권지역에 발전소 증설이 추진되고 있어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역행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
- ▶ 2015년부터 시행예정인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대책을 세울 것.

(7) 「대기환경보전법」 실효성 확보

- ▶ SK 하이닉스 이천공장 1차 스크러버(대기오염방지시설)를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였으며, 1차 스크러버 청소시 2차 스크러버만으로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하여 대기 중에 배출하는 등 문제가 지적되었음에도 대기업들은 환경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바, 향후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전국 반도체 공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며,

국회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할 것.

(8) 범정부적 기후변화 대응책 마련

- ▷ 2014년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이 기업의 반발로 인해 후퇴하고 있는 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업의 전기료 현실화가 필요하고, 배출권 할당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현황 제출 할 것.
- ▷ 배출권거래제 시행과 관련하여 정부차원의 전문인력 양성, 기후변화 대응 관련 지자체 지원 확대 등 정부차원의 대응책 마련할 것.

(9) 경유택시 도입 관련 환경부 입장 피력 필요

- ▷ 경유택시 도입 관련 타부처 추진 현황, 환경부가 파악하고 있는 경유자동차 환경비용 및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달성관련 경유택시 도입에 대한 환경부 입장 밝힐 것.
- ▷ 국토부에서 경유택시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여 경유택시를 양산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는 수도권대기환경정책에 역행하는 조치이므로 이에 대한 환경부의 향후 대책 수립할 것.

(10) 실효성이 떨어진 그린카드제 개선방안 마련

- ▷ 그린카드제는 친환경제품을 구매하면 에코포인트를 적립해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제도임. 에코포인트 실적이 전체 카드사용 적립포인트 대비 1.3%에 그치고, 그린카드를 통해 구매된

친환경제품이 697개 품목에 불과한바, 에코포인트 적립 대상 품목을 늘리고 소비자들이 친환경제품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11)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대한 의지 및 대책 마련

- ▷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설정도 중요하지만 로드맵을 정밀하게 제시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는 정책이 되므로, 확고한 정책 추진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갈 것.
- ▷ 에너지 수요 급증으로 늘어나는 배출량을 감축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려면 전력수요를 좀 더 강하게 관리하는 등 추가적인 감축 수단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2) 탄소배출권거래제 시행 관련 준비 철저

- ▷ 2015년 탄소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앞두고 민간 교육기관에서는 ‘탄소배출권 거래중개사’ 라는 자격증을 단순 유망직종으로 과장하여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어 교육 수요자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고, 유사 자격증이나 교육 과정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할 것.
- ▷ 지자체, 공공기관 및 관계 부처 공무원에 대한 배출권거래제 및 탄소산업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정부 차원의 전문인력 양성 필요

- ▷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면 중소기업들은 배출량 측정·보고·검증 등의 작업에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지원책 마련 필요
- ▷ 기획재정부에서 계획기간 시작 12개월 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환경부에서는 계획기간 시작 6개월 전까지 할당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나, 기획재정부의 준비가 늦어짐에 따라 주무관청으로서 조속하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강력히 요청하도록 할 것.
- ▷ 배출권 거래소 지정, 할당 대상 업체별 할당량 결정, 금융·세제상 지원 등과 관련한 부분은 먼저 확정하고 제시하여 시장의 혼란을 막도록 할 것.
- ▷ ‘비의무감축국가’ 로서는 최초로 전국 단위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는데 준비가 너무 미흡한바, 인력충원이나 비상 TF 구성, 관계 부처에 대한 강력한 지원 등 대안 마련 필요

【자연 부문】

(1) 국립공원 케이블카 경제성 분석 시 환경오염 비용 포함

- ▷ 국립공원 케이블카 경제성 분석 시 수익성 위주의 재무분석이 아닌 환경오염 관련 비용을 분석지표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을 구하고 의견서 받아 제출하도록 할 것.

(2)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시 주민의견 반영 필요 등

- ▷ SK인천석유화학이 환경영향평가 변경 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 지자체 요구를 묵살한 바 있고, 화학물질사고 방체계획 작성 시에도 관련 정보를 지역주민과 공유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향후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등 방안을 마련할 것.

(3) 전국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역할강화방안 마련

- ▷ 전국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력확충 및 시스템을 정비하도록 할 것.

(4) 생태통로 점검 필요

- ▷ 생태통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점검 및 지킴 보완을 검토할 것.

(5) 우수리종 보호 조치 필요

- ▷ DNA검사 등을 통하여 우수리종일 가능성이 높은 반달가슴곰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할 것.

(6) 한국자원공원협회 지원책 마련 필요

- ▷ 한국자원공원협회가 법률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등 지원책을 마련할 것.

(7) 국립공원관리공단 방사동물 관리방안 마련

▷ 방사된 멸종위기종 동물이 폐사되지 않도록 관리방안 마련할 것.

(8) 국립공원관리공단 산불진화용 바닷물 사용 연구필요

▷ 산림청에서 국립공원내 산불진화를 위하여 바닷물 사용을 검토하고 있으나 바닷물 이용 시 토양미생물 등에 피해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용여부에 대한 연구 및 관련 부처와 협의할 것.

(9) 소나무 재선충 등 방지 위한 관리방안 마련 필요

▷ 소나무 재선충 등 국립공원 내 병충해 방지를 위해 예산 및 인력 확보 등 관리방안 마련할 것.

(10) 종복원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

▷ 종복원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야생동물 서식지 적합조사·보전, 주민들의 이해 등의 대책을 마련 할 것.

▷ 종복원사업이 국립공원에 한정하여 추진되지 않도록 할 것.

(11) 생태계 교란, 외래식물 퇴치를 위한 대비책 마련

▷ 생태계 교란, 외래식물 퇴치를 위하여 개체수 및 서식지를 제대로

과약하고, 환경과학원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그간 퇴치사업 관련 결과보고서 및 향후 사업계획 제출할 것.

- ▷ 뉴트리아 등 생태계 교란 외래생물 퇴치를 위하여 위기의식을 갖고 향후 무분별한 도입 억제 등 사전예방적 관리제도 및 법적 근거 마련할 것.
- ▷ 위해우려종 24종을 제외한 외래생물은 수입 시 위해 검토를 받지 않는 상황이므로 국내 수입되는 외래생물에 대한 위해성 검토, 신고제 도입 및 사육현황 파악 등에 대해서 검토할 것.
- ▷ 4대강 사업 후 유속이 느려져 큰빛이끼벌레가 확산되고 있으므로 실태조사할 것.

(12) 용늪 생태복원 필요

- ▷ 강원도 용늪 생태 복원하도록 조치 취할 것.

(13) 사육곰 정책 재검토 필요

- ▷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종으로 관리되고 있는 곰 사육정책을 폐지하기로 하였으나 환경부는 도축 유도 위주의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 바 이를 재검토하고 증식금지 조치에 대한 곰 사육농가의 자발적 참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

(14) DMZ 세계평화공원 환경부 역할 강화 필요

- ▶ DMZ 세계평화공원이 남북 간 군사대결 완화 및 평화 기운 조성을 위한 평화의 공원이지만 생태공원이기도 한 만큼 환경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노력할 것.

(15)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과 정부의 책임성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 ▶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업주가 직접 업체를 지정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하는 ‘갑을구조임. 또한, 환경영향평가업체가 건설·시공 등을 겸업하고 있고, 건설업체의 자회사가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객관적 평가가 어려운 구조적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기술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하여 현장조사가 부실하게 실시되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과 정부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공탁제’ 실시에 대해 검토할 것.

(16) 4대강사업 환경영향평가 부적절

- ▶ 4대강 사업에서 보의 관리수위를 2미터로 낮추어서 운영한다는 불가능한 조건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였고, 환경영향평가시에 4계절 조사를 하지 아니하여 평가기간을 단축하거나 의견수렴 생략 등 평가절차 간소화로 인해 환경영향평가제도가 훼손되었는바, 이에 대해 별도로 내부감사 실시하고 향후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제대로 운영할 것.

- ▷ 여러 보고서의 은폐 및 부풀려진 예산 적용, 비현실적인 조건을 동원한 수질개선 효과를 거짓 홍보한 것, 환경영향평가가 무력화되는 과정 등에 대해 철저히 규명하기 위하여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

(17) 생태계 교란종 급증에 따른 규제 강화 필요

- ▷ 최근 생태계 교란종으로 인해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 수입과정에서 검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바, 관세청과 협조하여 검역을 철저히 할 것.
- ▷ 검역 이외에 우리나라 기후변화에 따른 대책도 마련할 것.
- ▷ ‘뉴트리아’ 와 같이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 검토 없이 수입되었다가 생태계 교란과 농가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외래생물 수입 시 국가 차원에서 통합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위해성 평가와 도입 후의 관리, 위해발생시의 신속한 퇴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것.

(18)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신규 설치 및 근무환경 개선 시급

- ▷ 로드킬 등으로 인해 야생동물 구조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는 전국에 11개소에 불과한 실정인데, 센터가 미설치된 곳이나 구조업무가 많은 지역에 센터를 설치하고, 구조관리센터에 대한 전문인력의 확보 및 처우개선 지원이 필요

(19)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아니하는 연접지역 개발 관련

- ▶ 제주 해군기지 사업자(국방부)의 명의 분할 등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피하는 등의 편법 여부를 조사하고 사후감시방안을 마련하여 난개발을 조장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0) 내성천 환경 피해 대책 수립

- ▶ 영주댐 건설로 내성천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바, 추가로 내성천보 건설(하천정비사업)에 따른 환경 피해를 설명하고, 영주댐을 홍수조절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 영주댐 공사로 회룡포 내성천의 모래유실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수자원공사의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의견서에는 모래가 17% 유실될 것이라고 하였는바, 환경부에서 이를 별도로 검토해 볼 것.
- ▶ 수자원공사에 변경된 설계에 따른 모래 훼손 예측결과를 재산정하여 그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토록 요구하고, 그 대책이 나올 때까지 공사를 일시 중단할 것.
- ▶ 이미 자갈밭화 되어가고 있는 댐 직하류의 장갑화 현상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

(21) 낙동강 하구 에코델타시티 사업 허용불가 입장 고수 필요

- ▶ 낙동강 하구 에코델타시티 사업에 대하여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상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주무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에 상관없이 환경영향평가 상 조건들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사업에 대한 허용불가방침을 고수하도록 할 것.

【환경보호일반 부문】

(1) 녹색기업제도에 대한 재검토 필요

- ▷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대기업들의 화학물질 유출 및 폐수무단 배출 등 법 위반 사례가 계속되고 있으나 적발 시 과태료 부과처분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므로 녹색기업제도를 선진화하는 등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2) 석면 안전 관련 대책

- ▷ 석면지질도 작성에 15-18년 정도 소요됨에 따라 작성의 의미가 희석되고 있음. 지질도의 불확실성으로 자료 공개를 위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 석면관리 대상 건축물석면지도의 원활한 제작을 위하여 건축물 석면에 대하여 신속히 조사할 것.
- ▷ 폐광, 슬레이트지붕, 공공시설, 건축물에 대한 석면점검을 위한 부처간 협의 등 자연석면에 대한 연구 및 대응책 마련할 것.
- ▷ 전체 건축물 중 석면관리 제도 대상은 1.1%에 불과한 만큼 미대상 건축물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하고, 건축물석면조사 발주비용 단가에 차이가 크므로 발주비용에 대한 지침 마련할 것.

- ▷ 학교 2만여 곳 중 79%인 1만 6,000여 곳이 석면을 포함하고 있으며, 622개 학교는 석면 천장을 학기 중에 개보수하고 있어 1급 발암물질이 청소년들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므로, 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조속히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것.
- ▷ 생태환경 공원 등에 1급 발암물질로 만들어진 석면 조경석이 무방비로 방치되어 있고, 무허가로 납품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 할 것.
- ▷ 슬레이트 지붕에서 흘러내린 빗물이 토양오염을 일으키고 있는 바, 이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조치를 취할 것.

(3) 석면 슬레이트 철거 지원

- ▷ 지방비 미확보 및 개량비 자가 부담으로 석면 슬레이트 철거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므로 국고 사업 후 남은 사업비를 개량비에 투입하는 등 슬레이트 철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취할 것.
- ▷ 슬레이트 지붕 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허가 주택은 지붕철거 대상에서 제외되어 석면에 계속 노출되고 있는 상황인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적극 검토할 것.

(4) 석면 피해 구제 관련

- ▷ 의료기관에서 석면과 관련된 질병으로 의심되는 환자들이 원활하게 치료를 받기 위해서 진단서에 석면으로 인한 질병 또는 폐암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할 것.

- ▷ 석면피해 구제급여가 현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하므로 환경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피해구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개입할 것.
- ▷ 석면폐증 환자의 경우 한달 40만원의 요양생활수당이 끊겨서 생활이 막막한 반면, 석면 피해구제 여유자금은 200억원임. 석면폐증 환자에 대한 지원책 재정비 할 것.
- ▷ 「개인정보보호법」이 통과된 이후에 이주율이 높은 도시 지역의 경우 질환 대상자들 파악이 어려운데, 안전행정부·지자체·국민건강보험공단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마련하여 피해자 발굴을 위해 노력할 것

(5) 지하철 역사 석면제거 계획 대책 수립

- ▷ 환경부에서 발표한 지하철역사 석면제거 계획 시점과 서울메트로 역사 개보수 계획 간 차이가 있어 환경부의 지하철 역사 석면 제거 계획이 실효성을 갖도록 현재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역사 석면제거 대책을 수립할 것.
- ▷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4개 광역시 지하철 석면 사용여부 정밀 조사를 통해 안전조치 취할 것.
- ▷ 제2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기간 내에 서울시 지하철 2호선 7개 역사 석면뿔칠 제거를 위해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계획대로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할 것.

(6) 연구용역 관리감독 강화

- ▷ PCBs(폴리염화비페닐류) 관련 연구용역 수행과정에서 해당 연구용역 수탁자가 횡령의 혐의로 입건유예처분이 내려졌음에도 여전히 환경부자문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내부감사를 진행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

(7) 환경표지제도 및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제도 구분 필요

- ▷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은 재활용제품에, 환경표지제도는 친환경제품에 특화된 인증제도인 만큼 제도 취지에 맞도록 인증제도를 관리해 나갈 것.
- ▷ 공공기관 우수재활용제품에 대한 최저 의무구매비율 규정을 마련하는 등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구매율 향상을 위한 조치취할 것.

(8)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개선 관련

-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중 설립이 완성된 진안에코에듀센터의 경우 사업 목적과 달리 상업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1년간 방문자 1만 1,476명 중 아토피피부염 환자가 628명으로 5.4%에 불과한바, 아토피피부염 환자 등 환경질환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현재 설립예정 중인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에 대해서도 사업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할 것.
- ▷ 어린이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개선계

획 등 향후 대처방안 마련할 것.

- ▷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사업의 실효성 제고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 사업추진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할 것.

(9) 환경기술 성과관리 및 기술상용화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

- ▷ 그 동안 개발된 환경관련기술의 상용화 및 해당 산업이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할 것.

(10)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강화 필요

- ▷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기준 준수여부,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것.
- ▷ 지난 9월 서울시에서 대형마트, 키즈카페 등의 실내놀이터 14곳의 모래를 조사한 결과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1) 어린이용품 환경안전관리 강화

- ▷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기준을 강화하고, 관련 사업자들에게 환경기준 초과에 따른 회수조치 등 법적 제재조치에 대하여 주지시킬 것.
- ▷ 관리 사각 지대에 있는 어린이용품을 발굴하여 규제를 강화하고, 안전규제 대상을 잘 선별하여 규제대상을 확대할 것.

- ▷ 학교 앞 문구점의 경우 어린이용품 안전관리 대상 사업자에 포함되어 제재를 받는 것이 과도한 규제가 아닌지 여부를 검토할 것.
- ▷ 어린이 제품에 포함될 수 있는 환경유해인자에 대해 진단사업을 실시한 후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기준을 초과한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제품회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12) 환경 관련 유사인증제 개선을 통한 신뢰성 확보

- ▷ 환경 관련 인증제의 기준이 불분명하고 인증 간 유사성이 많으므로 인증제 기준 보강을 통하여 국가 인증제도의 신뢰성 및 객관성을 확보할 것.

(13) 화학물질안전원 인력충원 확보 필요

- ▷ 화학물질안전원에 전문성 있는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조치 취할 것.

(14) 화평법, 화관법 시행 관련 준비철저

- ▷ ‘화평법, 화관법 악법논란’ 과 같이 법 시행에 따른 기업들의 저항으로 화평법 시행의 취지가 훼손당하고 있으므로 하위법 준비 및 인프라 구축, 예산 반영 등 제도가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것.

- ▷ 국내 화학물질의 위해성여부를 전문평가 하는 GLP(비임상 시험 기준) 실험기관의 화학물질처리 능력이 부족하므로 화평법 시행전에 국내 GLP 기관에 대한 육성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 ▷ 화평법 상 대기업 내 R&D 목적의 화학물질에 대하여서는 화학물질등록을 면제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
- ▷ 신규화학물질 등록과 관련하여 REACH 기준으로 규제를 하도록 향후 법 시행 과정에서 검토해볼 것.
- ▷ 화평법 제정 논의 시 예비심사제도를 삭제하면서 유통량 조사를 통해서 예비심사제도의 역할을 하고, 필요 시 하관법 하위법을 만들 때 유통량 조사 부분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안을 제출할 것.
- ▷ 국제적으로 유해물질로 공인되고 있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국제적 기준을 준용해서 쓰는 방법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 ▷ 화평법 시행과 관련하여 유해성을 시험할 항목 46개 중 생물 분야 독성실험 등 17개 항목에 대해서는 실험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화학물질 시험서비스 시장 규모가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 상황에서 외국 시험기관을 통해 실험을 할 경우 수백억원의 외화가 낭비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5) 생물다양성총회 관련 NGO협력 계획 피력

- ▷ 생물다양성총회 관련 NGO 협력계획이 무엇인지 밝힐 것.

(16) 한반도 온난화에 따른 아열대성 질환 관리 강화 필요

- ▷ 한반도 온난화에 따른 아열대성 질환 발생 대비하여 아열대질환 감시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등 관리 강화할 것.

(17) 환경교육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

- ▷ 환경교육지도사 자격제도 도입, 국가환경센터의 설립을 위한 법 개정 및 지역환경센터 관련 지침을 배포 등 환경교육 활성화 대책 마련할 것.
- ▷ 일선 학교의 환경과목 선택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수립하고,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지원이 6년째 동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중간점검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할 것.

(18) 신축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개선방안 마련

- ▷ 현재 신축 공동주택 시공사가 제출한 실내공기질 기준치 초과 수치와 지자체 자체 조사한 수치가 크게 차이가 있는 상황이므로 시공사에서 최소한 실내공기 정화 조치가 완료된 시점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19) 가습기 살균제 피해 관련 정부 역할 강화

- ▷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제작 업체에 대하여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우리나라 국책연구기관의 결과를 수용하도록 만들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장기 소송으로 고통 받지 않도록 역할을 강화할 것.
- ▷ 환경부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보상과 관련하여 법적 근거 부족으로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근거가 없다 하여 관련법을 발의하였음. 그러나 「환경보건법」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가습기살균제관련 입법에 대하여 협조하지 않고 있는데,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가 되도록 이러한 입장을 재검토할 것.
- ▷ 가습기 살균제 PHMG가 독성물질이라고 밝혀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함유량을 파악하는데도 4개월씩 소요되었는데, 아직까지 PHMG 함유량과 독성의 상관 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일임. 환경부와 보건복지부가 정부차원에서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상관 관계에 대해서 밝힐 수 있도록 할 것.
- ▷ 옥시와 홈플러스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회사들이 독성에 대한 확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서 커다란 피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비록 재판중이기는 하나 환경부는 적극적으로 제조사의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노력을 할 것.

(20) 가습기 살균제 제작업체 관련

- ▷ 옥시, 홈플러스 등 가습기 살균제 제작 업체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의식 갖고 물질적 정신적으로 보상할 것.

- ▷ PHMG라는 화학물질의 흡입 독성은 확인된 바 있고, 제조업체가 이에 대해 실험을 한 결과를 가지고 있음. 해당 물질을 사용한 옥시 등은 법에 따라서 물질 안전정보를 교환하고 실험을 했어야 했음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았고, 질병관리본부의 독성평가를 인정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한바,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기금 조성을 포함 향후 대책을 밝힐 것.
- ▷ 옥시, 흙플러스 등 가슴기 살균제 제작 업체들은 살균제 화학물질의 인체유해성에 대한 어떠한 자료도 제공받지 못했다고 하고 있으나 2008년 핀란드 제조사에서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실험에서 흡입 시 폐독성이 있다는 자료도 발표한 바 있으므로 관련 자료에 대한 회사 차원의 조사를 다시 할 것.

(21) 생활용품 유해 화학물질 관리감독 강화

- ▷ 생활용품에 포함된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를 기초로 안전·표시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며, 함유량에 대한 정보를 제품에 표기하도록 환경부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할 것.

(22) 친환경사칭 제품에 대한 대책 강구

- ▷ 친환경 사칭 제품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하여 환경부가 분석해서 자료를 공정위에 넘기면 공정위가 처리할 수 있도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 법안을 발의하였는데, 동 법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 ▷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인 FITI시험연구원에 분석 의뢰한 결과 친환경 제품이라고 표시된 8가지 제품 중에서 인형, 어린이 배변훈련 팬티, 목욕완구, 어린이용 놀이메트, 보드 등 5가지 제품에서 유해성 물질이 검출되었음. 이러한 친환경 사칭 제품에 대한 제재수단이 전혀 없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허위광고 제품에 대해 조사한 예가 없는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하여 대책을 강구할 것.

(23) 골프장 농약사용 관련 신속한 조치 필요

- ▷ 골프장에 사용되는 농약성분 또는 잔류농약에 대해 조사를 하고, 신속한 조치를 할 것.

(24) 방사능 피폭가능성이 높은 병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

- ▷ 방사능을 다루거나 방사능이 실제 피폭되는 갑상선 요양병원 등에 대하여 환경부가 관리감독하거나 대응 매뉴얼 등을 만들고, 발암물질이 생활공간 어디까지 있는지에 대해 철저한 전수조사를 할 것.

(25) 전자파 관리 방안 마련

- ▷ 전자파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암물질로 지정하여 사전 예방을 위한 정책추진을 권고한 바 있으며, 국민의 건강상의 안전을 위해 전자파를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생활환경’에 포함시켜 규제할 필요가 있음.
- ▷ 전자파의 경우 법 개정 전이라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의 평가 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검토할 것.

- ▷ 전자파의 유해성이 모두 밝혀지지 않았지만 전자파가 인체에 전혀 유해하지 않다는 사실도 입증된 바 없으므로, 지속적인 조사와 규명 등 관리 필요
- ▷ 전자파는 전파나 전기 관련 산업의 진흥이 주목적인 법률들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나,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고 잠재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환경부가 소관 부처로 전자파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송전선 지역 67개 중 과반 이상이 암 발병이 증가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고, 여수마을과 당진마을 같이 주민들이 암 발병 등으로 고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환경부가 피해 실태조사, 건강조사를 즉시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것.

(26)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급수시설의 안정성 확보 대책

- ▷ 현재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급수시설의 경우 라돈과 우라늄이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곳이 많은데, 마을상수도사업을 하거나 지방상수도 사업을 할 때 교육부 또는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할 것.

(27)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지자체의 지연보고 개선

- ▷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오염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로 하여금 환경부로 즉시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도록 개선할 것.

(28) 삼성전자 불산사고 관련

- ▷ 유해물질 관련 고의로 사고를 은폐하거나 반복적인 삼성전자 화성

사업장의 경우는 그에 맞는 처벌을 받도록 할 것.

- ▷ 삼성 화성사업장은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아 정기점검을 면제받는 등의 이익을 취한 후 사고가 나서 녹색기업이 취하되었는데,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
- ▷ 삼성전자를 비롯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86%에 해당하는 1만 4,225개 사업장이 화학물질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바,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속히 화평법과 화관법이 본래 입법 취지대로 시행되도록 노력할 것.

(29) 베트남 PCBs 오염폐기물 처리 타당성 조사 관련

- ▷ PCBs 오염폐기물 처리 타당성 조사 사업과 관련하여 적절한 총괄업체의 선정 여부, 과거 부정한 연구수행 경력이 있는 교수의 참여 문제, 등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도록 할 것.

(30) 환경정책 개선 필요

- ▷ 현행 환경정책 허가제도는 배출되는 오염물질 농도·성상, 사업장별 생산공정 특성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바,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도입된 현행 허가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31) 생태환경경제통계지표 개발 및 인력확보방안 마련 필요

- ▷ 생태환경경제통계지표에 대한 연구, 개발 및 관련 법률 제정, 인

력확보방안 마련할 것.

(32) 물휴지 등 생활화학가정용품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성분의 화학물질에 대한 위/유해성 평가 등 필요

- ▷ 가습기살균제 화학물질4종(PGH, PHMG, CMIT, MIT)에 대한 호흡독성을 정부에서 확인하였으나 경피독성 및 경구독성에 대하여는 특별한 연구결과가 없음. 하지만 해당 물질들이 물티슈, 핸드워시, 세제, 살균제 등으로 실생활에 광범위하게 유통중이나 국내외 연구결과에 따르면 해당 화학물질들이 피부접촉만으로도 인체에 해를 입힐 가능성이 존재하는바 환경부 차원의 조속한 연구(위/유해성 평가)를 진행하도록 할 것.
- ▷ 현행 생활화학가정용품의 경우 제품별 소관부처가 달라 관리기준도 각각 다른 상황으로 이에 따른 관리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화평법 시행을 계기로 환경부 차원의 통합 가이드라인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할 것.

(33) 물발자국 지표 및 인증시스템 도입의 필요성

- ▷ 물의 효율적인 수요관리와 수출제품의 경쟁력강화 측면에서 정부 차원의 물발자국 지표 및 인증시스템 개발 및 활용 대책을 마련할 것.

【본부에 대한 감사 중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관련사항】

(1) 매립지 지분권 인천으로 이관 필요

- ▷ 매립면허 권한과 환경부 및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매립지 지분권이 인천으로 이관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 마련할 것.

(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부적절한 사업위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 ▷ 드림파크 문화재단에 2년간 233억의 부적절한 사업을 위탁해온 바 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할 것.

(3) 수도권매립지 매립기간 연장 및 주민지원 방안 모색 필요

- ▷ 수도권매립지 기간연장 및 주민지원 관련 대안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한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간 협의일정 및 계획서 제출할 것.

(4) 수도권매립지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감독 강화

- ▷ 수도권매립지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폐기물처리승인예외기관이나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아 환경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므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5) 온실가스배출량에 대한 부서간 협력관계 구축 필요

- ▷ 온실가스 배출 관련 자료가 늦게 공표되고 있으므로 온실가스 배

출량에 대한 부서 간 협력관계 구축방안 제시할 것.

(6) 전자파의 인체유해 관련 국가적 차원관리 필요

- ▷ 현재 전자파의 인체유해에 대한 연구 및 환경정책기본법 상의 환경오염에 포함시키는 등 국가적 차원의 관리해 나갈 것.

(7) 라돈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필요

- ▷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라돈조사를 실시하고, 라돈 저감 공사 등을 지원하는 등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8) 비정규직 처우개선 필요

- ▷ 소속기관, 산하기관 내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개선 필요.

(9) 연산호 군락 훼손에 대한 조사 및 사후조치 철저

- ▷ 연산호 군락이 제주 해군기지의 불법적인 공사에 의해 황폐화되었으나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사후조치가 미흡한 바, 공사중지명령을 요청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사후조치를 철저히 할 것

【본부에 대한 감사 중 서울시에 관련사항】

(1) 서울시 청소용역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 필요

- ▷ 현재 생활쓰레기 처리 업무와 관련하여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시 25개 자치구만 독립채산제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서울시 청소노

동자들의 임금이 매우 열악한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

- ▷ 그간 정부는 서울시에 ‘독립채산제 폐지’를 수차례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주의로 인해 시정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시정조치 취할 것.

(2)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제각각 방식에 대한 개선

- ▷ ‘단지별 종량제’의 경우 세대별 배출량에 기반하고 있지 않아 종량제가 의도한 경제적 인센티브로 작용하기 어렵고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전용봉투 가격과 크기 때문에 시민들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할 것.
- ▷ 성북구의 경우 음식물쓰레기처리기 RFID를 설치한 지 두 달도 되지 않아 악취와 소음으로 작동을 중단하였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3) 식물원(화목원) 조성계획 관련

- ▷ 지난 8월 21일 서울시는 기존의 마곡지구 ‘문화테마호수공원’ 조성계획을 철회하고, ‘식물원(화목원)’ 조성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를 원래 계획대로 복구하여 추진할 것.

(4) 마곡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변경 관련

- ▷ 서울시는 2010년 12월 31일 마곡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였으나, 당초 승인된 계획을 변경하여 소형아파트 세대수를 대 폭 늘려 임대주택이 과도하게 늘어났음. 마곡지구 내 아파트 건설 계획도 당초 계획에 마도록 수정하는 한편,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 하고 서울시 각 자치구의 형평을 맞춘 균형 있는 주택정책 추진할 것.

(5) 인천수도권매립지 관련

- ▷ 2016년이면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가 종료되는데 서울시의 대처 가 미온적이며, 서울시의 소각시설 가동률도 타 시도에 비해 매우 낮은 편임. 이에 대해 서울시가 적극적 대안 마련을 마련할 것
- ▷ 경인아라뱃길 부지 보상금으로 받은 1,025억원을 2016년까지 단 계적으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에 쓰기로 했는데, 경인 아라뱃길 활용 검토할 것.

(6) 서울시민을 위한 행정

- ▷ 2012년 서울시는 100% 불용 예산이 1,600억원임에도 예비비를 1,000억원 편성하였고, 올해에는 예비비가 1,100억원 미집행되었 으나 무상보육 예산이 없어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함. 정치에 민 감하기 보다는 서울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것.

▶ 지방청 공통사항 ◀

(1) 환경부 업무 중 지자체로 이양된 업무에 대한 검토 필요

- ▶ 동해시 영풍의 아연정광석 물류창고 주변 오염 등에 있어 환경부 업무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업무간의 상이로 관리·감독상에 여러 문제점이 있으므로 환경부 업무 중 지자체로 이양된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대책을 마련할 것.

(2) 국조보조사업에 대한 정산 철저 필요

- ▶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인 하수관거정비사업의 정산 완료율이 낙동강청은 94.6%로 제일 높고, 영산강청은 32.8%, 한강청은 49.7%, 금강청은 65.9%, 새만금청은 68.8%로 매우 낮은 상황이므로 법적 정산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제방안을 마련할 것.

(3) 생태계교란 외래 야생식물에 대한 정확한 모니터링 및 대책 마련 필요

- ▶ 생태계 교란 외래 야생식물에 대한 종별 서식지 등 정확한 모니터링과 더불어 종별 제거방법 및 제거 시기 등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할 것.

(4)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강화 필요

- ▷ 관할 수계에 하수처리장 중 유입되는 하수보다 시설용량이 부족하여 초과되는 하수를 처리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하천이나 호소로 방류하여 상수원 등 하천의 오염이 우려되는 바, 그 실태를 조사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하수를 처리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하천이나 호소로 방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환경부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 설계용량 대비 실제유입량이 초과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중장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슬러지 1ton당 약품 사용량이 6kg에서 23,000kg까지 소요되는 등 편차가 크므로 적정한 약품사용량에 대한 점검 및 약품 과다사용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5) 환경영향평가 이행점검 철저 필요

- ▷ 환경영향평가는 무분별한 개발사업에 대한 최후의 견제수단이므로 현장조사의 비율을 높여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이행점검을 보다 철저히 수행하도록 할 것.

(6) 녹조 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필요

- ▷ 4대강사업으로 녹조 발생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녹조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 대책을 강구할 것.

(7) 구제역 가축매몰지 수질조사 철저 필요

- ▷ 최근 모 식품회사의 먹는샘물의 수원지가 구제역 매몰지 인근지역으로 알려져서 사회문제화 되었음을 감안하여 가축 매몰지의 관리 및 수질조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할 것.

(8) 지방청 소관업무 원활한 이행을 위한 관리 필요

- ▷ 지방청 중 본부에서 결정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 및 소관부서 등이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관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관리를 강화할 것.

(9) 4대강 수질 악화 및 어류 폐사 원인 파악 필요

- ▷ 4대강의 수질이 악화되고 물고기가 폐사되는 원인이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이라는 지적이 있으나 아직 이에 대한 원인이 규명된 바 없으므로 과학적인 원인분석을 실시할 것.

(10) 수자원의 지속관리 방안 마련 필요

- ▷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하여 물발자국 지표 및 인증시스템을 도입할 것.

(11) 특별대책지역 환경규제 개선필요

- ▷ 특별대책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의 원폐수는 최소 먹는 수질기준까지 허용하고, 방류수에는 불검출되도록 규제를 개선할 것.

(12) 유역환경청 내 구인구직 문제 해소 필요

- ▷ 4대강 유역 환경청 내 구인구직 문제 해결 방안 환경 본부에서 검토해 볼 것.

(13) 대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철저 필요

-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 등 운영실태 점검에서 절반이상의 사업장이 위반, 지도단속 부실 등 사업장에 대한 무관심과 관리가 소홀함.

▶ 4대강 유역청 공통사항 ◀

(1) 4대강 사업 이후 녹조 발생에 따른 식수안전 대책 필요

- ▷ 4대강 사업에 따른 보 설치 이후 물 체류시간 증가로 조류 농도 증가 및 녹조발생이 우려되므로 식수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 보 설치로 인한 체류시간 증가로 낙동강 상류에 녹조가 발생한 것 보다는 기후변화로 인한 측면이 크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점검할 것.

(2) 4대강 수계관리기금 집행상의 문제

- ▷ 4대강 수계관리기금 관련 예산 및 결산관련 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면보다는 대면회의를 개최하도록 노력할 것.

- ▷ 4대강 수계관리기금 관련 기금 지원액의 배분기준 수립에 있어 지자체별로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3) 하구 오염관리 대책 필요

- ▷ 하구 수생태 건강성 조사 및 평가 결과 오염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바, 하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대책을 마련할 것.

(4) 4대강 사업 멸종위기종 실태조사 필요

- ▷ 4대강 사업 이전에 발견됐던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 28종일 사라진 사실이 낙동강 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에서 드러났음에도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멸종위기종 실태 조사는 제외되었으므로 환경부는 4대강 사업의 영향으로 종과 개체수가 감소한 멸종위기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후환경영향평가 조사를 강화할 것

▶ 한강유역환경청 ◀

(1) 골프장의 농약사용에 대한 대책 필요

- ▷ 골프장의 농약사용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골프장내 웅덩이 등에 대하여 호우시 등에 따른 실질적인 오염원 점검 및 관리 대책을 수립할 것.

(2) 한강수계기금의 개선 필요

- ▶ 한강수계기금의 지원 사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타 수계기금의 사례와 같이 한강하류지역도 포함하도록 하여 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기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할 것.

(3)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사업비 집행관련 개선 필요

- ▶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주민지원사업비를 목적외 사용 등 부정한 집행이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관련 사업비를 회수하고 사업비 집행 과정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4) 인천 SK 석유화학 증축관련 검토 필요

- ▶ 파라자일렌 생산을 위한 인천 SK 석유화학의 증축과 관련하여 인근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바,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검토할 것.

(5) 보에 설치된 어도관리 대책 철저 필요

- ▶ 4대강 사업 이후 일부 보의 어도가 폐쇄되는 등 어도를 부실하게 관리한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어도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6) 한강수계 자문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필요

- ▶ 임기 2년 동안 자문위원회 회의에 단 한번 도 참석하지 않은 자문위원이 약 44%로에 달하여 자문위원회가 부실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낙동강유역환경청 ◀

(1) 하천정화시설의 체계적인 설치 및 운영 필요

- ▶ 하천정화시설 중 다수가 설계 대비 낮은 유입량에 따른 가동률 저조, 환경기초시설과 같은 지역에 설치됨에 따른 중복 운영으로 인한 비효율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는 등 부실하게 설치·운영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2) 낙동강 유역 폐준설선에 대한 환경오염 대책 마련 필요

- ▶ 4대강 정비사업 이후 방치된 폐준설선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이들 선박들에 대한 관리지침을 마련하는 등 관련기관 등과 함께 관리 대책을 수립할 것.

(3) 환경영향평가 조사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방안 필요

- ▶ 한강살리기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조사의 경우 저서생물은 37년전 문헌자료, 곤충은 10년전 자료를 사용하고, 낙동강살리기 사업의 사후환경영향평가 조사의 경우에는 122.14km에 해당하는 조사 지역을 하나의 공구로 설정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으므로 향후 환경영향평가 조사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4) 관련법령을 위반한 수의계약 체결에 대한 시정 필요

- ▶ 수의계약 체결시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으로 2개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과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5) COD 중심 수질관리 필요

- ▷ 낙동강수계의 경우 비점오염원 등 난분해성 물질의 증가 등이 예상되므로 COD 중심의 수질관리로 정책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것.

(6) 주민건강영향조사관련 석면공장 인근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 홍보 필요

- ▷ 석면공장 인근 주민에 대한 주민건강영향조사시에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속적인 홍보 대책을 수립할 것.

(7) 조류 발생 관련

- ▷ 낙동강수계 조류관리에 있어 수질예보제와 조류경보제로 이원화되어 운영함에 따라 주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8) 신평·장림 산업단지 주변지역에 대한 악취 대책 필요

- ▷ 폐수배출시설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로 인해 악취를 유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금강유역환경청 ◀

(1)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생태계 보존 대책 마련 필요

- ▷ 4대강 사업 이후 유속 감소로 인한 하천의 부영양화 현상으로 물고기집단 폐사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보 시설로 인한 유속감소가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근본 대책 수립을 강구 할 것.

(2) 대청호 녹조발생 대책 필요

- ▷ 대청호 주변 소옥천유역의 녹조발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3) 대체습지의 건습지화에 대한 대책 필요

- ▷ 금강살리기 사업의 보완대책으로 조성한 대체습지의 건습지화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4) 금강수계에 조류경보제 도입 필요

- ▷ 금강의 수질문제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수질예보에 비해 더 엄격한 조류경보제가 필요해 보이므로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 할 것.

(5) 금강변 공산성 붕괴 원인 파악

- ▷ 금강변 공산성이 붕괴되고 있는데 그 붕괴원인이 금강살리기 사업

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파악할 것.

(6) 충북지역 산업단지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점검 철저 필요

▷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조사 결과, 충북지역 산단의 경우 절반에 가까움 49%에 대해 시정조치가 내려짐.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감축 등의 사전관리 및 점검을 철저히 할 것.

(7) 대청호 생태탐방선 도입 계획에 대한 적극 개입 필요

▷ 상수원 보호구역인 대청호의 생태탐방선 도입 문제로 충북도와 대전·충남도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음. 생태탐방선을 이용한 환경교육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대청호를 식수원으로 이용하는 대전·충남도에서 수질 오염이 우려하여 반대하고 있으므로, 관할환경청인 금강유역환경청은 지역주민의 상수원 보전을 위해 확실한 반대의사를 표명하여 지자체간 갈등해결에 적극 나서도록 할 것.

▶ 영산강유역환경청 ◀

(1) 소규모하수처리장 관리 대책 필요

▷ 소규모하수처리장의 시설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수질기준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와 효율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할 것.

(2) 화학물질 유출사고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 필요

- ▷ 여수 산단내 화학사고가 계속되고 있는바,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

▶ 원주지방환경청 ◀

(1) 포스코 폐놀 유출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 필요

- ▷ 강릉시 옥계 포스코 제련공장의 폐놀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원인파악 및 폐놀 유출량 추정 등 사후 수습을 철저히 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 대책을 강구할 것.

(2) 숲 가꾸기 사업으로 인한 환경 훼손 대책 필요

- ▷ 산림청의 ‘숲 가꾸기 사업’으로 야생식물의 서식공간이 축소되거나 멸종위기 동·식물을 훼손하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므로 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3) 제천시 왕암동 폐기물매립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 ▷ 제천시 왕암동 폐기물매립장의 에어돔 붕괴에 따른 침출수 유출 우려 등 각종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철저한 원인조사 및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4) 환경감시단 신설 필요

- ▷ 현재 원주지방환경청 관할구역에서의 환경오염 감시활동을 한강유역환경청 소속 환경감시단이 활동하고 있는바, 지역정서 등을 감안하여 원주청 소속으로 환경감시단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할 것.

(5) 뉴트리아의 한강수계 확산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 남한강지역에서 뉴트리아가 서식개체가 발견되는 등 한강수계로 확산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실태조사 및 퇴치계획을 마련할 것.

▶ 대구지방환경청 ◀

(1) 관련법령을 위반한 수의계약 체결에 대한 시정 필요

- ▷ 수의계약 체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체결에 대한 시정 및 향후 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2) 무분별한 수계주변 개발에 대한 대책 필요

- ▷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다수의 낙동강수계주변 개발계획을 발표하는 등 수계의 오염원이 증가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3) 포항 음폐수 병합처리시설의 적절한 운영 대책 필요

- ▷ 포항시 남구 호동 쓰레기매립장 내 음폐수 병합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방류수 수질기준 미준수 및 악취 등으로 정상가동을 못하고 있으므로 이 시설에 대한 공법 선정, 설계, 시운전 등의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적절한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

(4) 내성천 모래 유실관련 사후영향평가 조사 철저 필요

- ▷ 낙동강살리기 사업으로 인하여 내성천 모래 유실량이 많아 멸종위기종인 흰수마자의 서식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 및 대책을 수립할 것.

(5) 대구 평리동 새동네 지역 환경피해 대책 필요

- ▷ 대구 서구 평리동 새동네 지역은 인근 음식물쓰레기처리장 및 염색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 소음, 먼지 등으로 환경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대책을 마련할 것.

(6) 환경감시단 인력확충 필요

- ▷ 감시단의 인력부족으로 점검률이 낮고, 특히 낙동강수계의 경우 800만 시민의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어 시설 점검 강화가 필요함으로 단속인력 확충 등으로 효율적인 감시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할 것.

(7) 포항테크노파크 2단지 환경영향평가 관련 행정소송 적극 대응 필요

- ▷ 2013년 9월 2일자로 포항시가 대구지방환경청에 대해 ‘환경영

향평가 협의 거부처분 취소' 행정 소송 제기하였는데, 포항테크노파크 2단지 조성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이 부지 내 있어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여 5년째 정체 중인 사업계획임. 얼마 전 감사원 특정감사까지 받아 관련자 징계 및 협약 해지를 권고 받은 사실이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포항시는 이 사업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지역 내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포항시 측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에 대해 지역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위해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 새만금지방환경청 ◀

(1)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의 원칙 준수 필요

- ▷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간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는 용담댐과 관련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이라면 입지가 불가능한 공업단지, 카누연습장 등 각종 신규 오염원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상수원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할 것.

(2) 새만금유역 비점오염물질 관리 필요

- ▷ 새만금유역 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유기질비료사용과 가축분뇨 불법처리 등으로 비점오염물질의 비율이 증가하여 새만금호 목표수질 초과 우려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철저히 관리할 것.

▶ 수도권 대기환경청 ◀

(1) 수도권 대기개선대책 마련 필요

- ▷ 수도권대기환경실무위원회가 주로 서면회의로 개최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바,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 2차 특별대책 수립 관련

- ▷ 비도로 이동오염원의 경우 계획 대비 달성률이 저조하므로 2차 특별대책에 반영하도록 할 것.
- ▷ PM10 농도가 줄어드는 등 대기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더 치명적인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높은 수준에 있으므로, 2차 특별대책에 반영하도록 할 것.
- ▷ 수도권 대기환경 1차 특별대책 시행으로 인한 NO_x나 VOC_s 등의 저감 성과가 미약하므로, 2차 특별대책에 반영하도록 할 것.
- ▷ 2010년부터 2013년 8월말 현재까지 사업장 총량관리제 대상 사업장별 배출현황을 보면, 배출량이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는 사업장이 96개소(32.3%)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화력발전 등 발전부문 사업장들은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의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는 발전부문 및 비발전부문 중 대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대책이 포함되도록 할 것.

(3) 대표성 있는 지역에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필요

- ▷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시에 설치의 편의성보다는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고 설치목적에 맞는 대표성이 있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것.
- ▷ 현재 서울에 위치한 초미세먼지 측정망은 단 2개소로 인구의 대다수가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에 대기오염이 제대로 측정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할 것.(3) 대표성 있는 지역에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필요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1) 환경분쟁조정 대상범위 확대 필요

- ▷ 전자파,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오염, 지하수 수위저하 등 국민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환경피해들을 환경분쟁조정대상 범위에 포함시키고, 환경분쟁 조정제도의 개선방안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 ▷ 환경분쟁 대상 환경피해의 범위에 방사능오염이나 전자파를 추가하고, 지하수 일조권 등을 포함하는 것에 대하여도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2) 소음·진동 관련 분야 조정위원 보강 필요

- ▷ 소음·진동으로 인한 환경분쟁이 전체의 86%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동 분야의 조정위원은 3명에 불과하므로, 소음·진동 관련 분

야의 조정위원을 보강할 것.

(3)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필요

- ▷ 지방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최근 조정건수가 단 한 건도 없는 지자체가 있는 등 지자체 주민들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어렵게 할 여지가 있으므로 지방위원회의 운영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국립환경과학원 ◀

(1) 초미세먼지 인력 및 예산 확보 필요

- ▷ 초미세먼지의 본예보 실시와 관련하여 예산 및 인력 확보가 미흡하므로 국가 차원에서 예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전담 인력 예산 확보 필요

- ▷ 화학물질유해성 심사와 관련하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대비한 전담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것.

(3) 화학물질안전원 개원에 따른 비정규직 인력 고용승계 필요

- ▷ 화학물질안전원 개원에 따라 과학원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의 비정규직 인력에 대한 고용 승계 내용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검토할 것.

(4) 4대강에서의 물고기 집단 폐사 원인 규명 필요

- ▷ 최근의 물고기 떼죽음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4대강 공사로 인한 수량부족, 용존산소 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과학원의 원인규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신속히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세울 것.

(5) 수도권 대기오염 대책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

- ▷ 자동차 매연여과장치는 질소산화물의 총량 저감에 큰 효과가 없어 보이는바, 인증기준을 실제 도로 주행시 발생량을 고려한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제작사들과 협의할 필요가 있는 등 자동차 오염물질 저감사업에 개선할 부분이 많으므로 종합적 점검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6) 나노물질 안전성 확보 대책 마련

- ▷ 나노물질에 대한 조사·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생활용품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7) 4대강 수질 악화 및 녹조 관련 적절한 대책 마련 필요

- ▷ 4대강 수질 예측 시 수질이 악화되고 녹조확산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정반대로 수질이 개선이 된다는 홍보를 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향후 적절한 자료를 공개하고, 정보가 왜곡되어 국가재앙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8) 비정규직 처우 개선

- ▷ 비정규직의 수가 너무 많고, 승진 및 보수체제도 열악한 상황으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9) 에코벨 사업의 제도 개선 방안 마련

- ▷ 에코벨 사업의 2012년 실적이 28건밖에 되지 않고 있고 지방청에서도 이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전문성을 가지고 여러 사업들을 통합해서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것.

(10) 생태교란종 감소 대책 마련 필요

- ▷ 생태교란종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데, 종별 매뉴얼이 정확하고 다양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생태교란종 서식조사를 초기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청이 지자체에 신속하게 알려줄 수 있도록 하고, 외래생물 종합정보시스템에 올려진 잘못된 정보를 수정하여 보고할 것.

(11) 전자파 라돈 연구 확대 및 정보 제공 필요

- ▷ 자연방사능 물질인 라돈에 대한 연구과제 확대를 실시하고,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하며, 지자체와 협의하여 전문적인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것.

(12) 해안사구 조사·연구 업무의 기관변경에 따른 대책 필요

- ▷ 해안사구에 대한 조사·연구 업무는 그 업무의 전문성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으로 국립생태원으로 이관에 따른 준비상태 등을 감안하여 이관시기 등을 조정할 것.

(13) 방사능 영향 연구 확대 필요

- ▷ 최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의 2차 확산 공포가 크므로 인공방사능 물질 연구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

(14) 4대강사업 관련

- ▷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수생태계 장기 모니터링을 기초로 생물서식처, 수변생태공간 복원에 대한 중장기 연구를 강화하도록 노력할 것.

(15) 총인처리시설의 응집제 사용에 따른 수질 연구 필요

- ▷ 한강수계 하수처리장 중 일부에서 알루미늄이나 철의 농도가 먹는 물 수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바, 총인처리시설의 응집제 사용에 따른 수질영향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것..

▶ 국립생물자원관 ◀

(1) 밀수 등으로 입수된 멸종위기종의 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

- ▷ 밀수 등으로 입수된 멸종위기종을 액침표본으로 관리한 것은 부적절한바, 재발 방지를 위하여 세관, 검역소, 자원관, 환경부 간의 업무협조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 밀수 동물을 생물자원관에서 처리하기 보다는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이와 관련하여 엄격한 기준을 마련할 것.

(2) 자생생물조사 등 강화 필요

- ▷ 북한 접경지역에 대한 자생생물 조사를 더욱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
- ▷ 자생생물 조사·발굴사업에 대한 연도별 목표량 상향조정하고 해외보다 국내 생물자원조사에 예산을 더 투입하도록 할 것.
- ▷ 국내외 생물자원에 대한 연구조사, 공유와 활용 차원에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및 국립생태원과 협력체계를 수립할 것.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

(1) 환경측정분석사 의무고용제 대비 관련

- ▷ 2013년 7월 16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20년 7월부터는 시험·검사 기관은 분야별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 소지자 1인 이상을 의무고용 하여야 함. 현재 배출된 인력 42명 중 수질분야는 38명인 반면, 대기분야는 4명에 불과한바, 대기분야 인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2) 교육기자재 교체 및 관리방안 마련

- ▷ 114개의 교육기자재 중 32개가 내구연한을 초과하였으며 일부 장비는 불용 후 대체장비를 구매하지 않았는데,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기자재 적정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1) 에너지 정책 수립에 있어 역할 정립 필요

- ▷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온실가스 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한 센터의 역할을 정립할 것.

(2)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조직의 안정성 제고

- ▷ 비정규직의 수가 너무 많고, 승진 및 보수체계도 열악한 상황으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
- ▷ 기관의 위상과 역할 제고를 위해 기관명을 ‘국가온실가스정보원’으로 개칭하는 것을 검토해 볼 것.

(3)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관련

- ▷ 2011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BAU 대비 30%로 설정하였으나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사실상 감축목표를 완화하였음. 감축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감축률을 강화해야하는

데, 2013년 3%에서 2014년 2.8%로 감축률이 오히려 감소하였는바,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검토할 것.

- ▷ 온실가스 감축 목표 재산정에 따라 관련 업계에 미칠 영향을 검토할 것.
- ▷ 온실가스 감축기준을 우리나라의 경우 BAU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과거 기준년도로 하는 것을 검토할 것.
- ▷ 에너지기본계획과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은 상호 연계하여 작성하는 것과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작성시 시민사회 등의 참여 및 공론화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

▶ 한국환경공단 ◀

(1) 4대강 사업 관련 총인처리시설의 재점검 필요

- ▷ 총인처리시설 관련하여 약품의 과다 사용으로 인하여 예산낭비 및 유지보수 비용 등이 늘어날 수 있고, 기술진단이 잘못되는 등 감사원 및 환경부의 감사결과 총인시설의 부실이 심각한데, 그 경위를 파악하고, 문제해결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배치하거나 기술진단을 제대로 실시할 것.

(2) 녹조제거 업체의 실적부풀리기 엄벌 필요

- ▷ 수질오염방제센터에서 녹조제거 관련 사업을 실시하는데, 부당하게 실적을 부풀려 이익을 취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형사 고발 조치할 것.

(3) 캠프 하야리아 등의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

- ▷ 캠프 하야리아 지역의 시민공원 이용과 관련하여 토양, 가스, 지하수 등에 대한 일부 항목의 유해성이 기준치보다 높다는 민원이 제기된 것은 정화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므로, 한국환경공단은 정화의 적절성에 대하여 철저히 점검하여 보고할 것.
- ▷ 캠프 하야리아 지역의 유해성평가 관련 유해물질이 일부지역에서 초과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정밀실태조사 시 환경공단에서 재조사 요청 등 제대로 된 역할 수행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므로, 한국환경공단이 직접 유해성 조사 결과가 높은 지역부터 선정하여 측정을 제대로 실시할 것.
- ▷ 부산시와 사업을 진행한 미군기지 정화사업과 관련하여 환경공단의 역할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지자체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4) 소각시설 관리 기준 측정 조치 필요

- ▷ 소각시설에서 다이옥신 배출이 줄지 않고 있는데, 측정 후 개선명령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축소하고, 재활용산업육성과 관련한 도시광산 사업장의 경우 용융시설이 아니라 소각시설의 대기관리 기준을 적용할 것.

(5) 공단의 서비스 질 확보 필요

- ▷ 공단 경영평가 등급이 낮는데 국민들에게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할 것.

- ▷ 석면피해구제업무 관련 업무 처리기간이 짧아져 환경복지서비스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관련부서에 대한 사기진작을 실시할 것.

(6) 음폐수처리시설의 적절 공법 선정 필요

- ▷ 포항시 호동 음폐수처리시설 처리 공법 선정에 있어 KNR 공법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데도 이를 선정한 것은 지자체, 영산만산업,공단 모두의 잘못인바 예산 확보와 공단 신뢰도 하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7) 에코아스와 올바로 시스템의 적정 운영 방안 마련

- ▷ 에코아스나 올바로 시스템에 처리실적이 등록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실태파악과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폐배터리 처리내역의 입력 등 올바로시스템과 에코아스 시스템을 이중으로 입력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8) 음식물처리시설 설치 사업 제도개선 방안 마련

- ▷ 음식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설계감리와 설치검사를 모두 공단에서 실시하여 견제 감시 기능이 없으므로 실시설계 감리를 공단에서 하더라도 설치 검사는 타 시설에서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9) 영농폐기물 수거 사업의 원활할 추진을 위한 대책 강구

- ▷ 영농폐기물 중 폐비닐의 45%가 수거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금액이 너무 적고 민간위탁 수거자 수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폐비닐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10) 미군 기지의 토양정화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필요

- ▶ 캠프에세이온을 비롯하여 반환 예정인 미군기지의 토양정화사업에 대해 교육청 등 기관의 재조사요청과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9개 중에 세 군데 기지에서 석면배관, 부실 정화검증서 등 부실정화가 확인되었는바, 9개 미군기지의 정화검증서 및 토양정화사업 등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등 철저히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

(11) 공단의 기념품 구입 관련

- ▶ 창립기념품 구입 가격이 다소 높을 뿐 아니라 구입 수량도 상당한바, 구입품목 선정과 수량 산출시 일정 원칙과 기준에 따라 구입할 것.

(12) 지방 상수도 누수율 과다에 대한 대책 마련

- ▶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누수율과 수도요금이 비싸게 나타나고 있는바, 수도관망 노후화 문제를 지자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재원을 투입하여 개선하도록 할 것.

(13) 순환자원거래소 운영 내실화 대책 필요

- ▶ 순환자원거래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양산, 가습기, 헌책 등 중고물품 거래보다는 폐기물이 거래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14) 압수물자원화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대책 필요

- ▷ 압수물 판매액이 점점 감소하고 있고, 관련예산의 집행실적도 저조한 등 사업 추진이 부진한바, 관계기관과의 협조 등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수행 대책을 마련할 것.

(15) 자자체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 지원 필요

- ▷ 중앙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실가스 관리 인프라가 미흡한 지자체에 대한 감축활성화 지원 대책을 검토할 것.

▶ 국립공원관리공단 ◀

(1) 지구 온난화에 대한 국내 동식물상 변화 대처 필요

- ▷ 지구 온난화에 따라 식물종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우리 식물의 변화에 대비, 지속적인 조사 모니터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와 과학원 및 산림청 등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대처할 것.

(2) 자연재해 동식물에 대한 전문가 양성

- ▷ 자연재해 및 동식물에 대한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노력할 것

(3) 종복원지 선택에 대한 기준 마련 및 종복원기술원의 인력을 확보하고, 사육되는 반달가슴곰 폐지를 위한 종복원기술원의 역할 필요

- ▷ 여우 및 산양의 복원지가 실제 서식지와 차이가 나 여우가 폐사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므로, 중복원지역의 선택 사유 등에 대하여 보고하고, 방사사업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연구 및 기술을 추진할 인력이 부족한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시민들이 모금하여 국가에 기증한 반달가슴곰을 중복원기술원에서 기를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할 것.

(4) 안전관리요원의 인력 확충 및 임금 인상 필요

- ▷ 안전관리요원이 전 국립공원에서 부족하고, 대부분 무기계약직이며, 임금이 낮은 수준으로 안전관리요원의 노동권 문제와 시민의 안전권을 위하여 개혁안을 마련할 것.

(5) 국립공원의 보존을 위한 제도개혁 방안 마련

- ▷ 국립공원의 보존을 위하여 안식년 제도, 스트레스지수 개발, 모니터링 등 다양한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 ▷ 국립공원 스트레스 지수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심각’ 이상에 대한 관리 대책을 수립할 것.

(6) 국립공원관리공단 인력 및 시설 확충 등 개선방안 마련

- ▷ 무등산국립공원에 재난구조대가 없어 충원할 필요가 있으며, 공원내 통화불능지역 해소를 위하여 노력할 것.

- ▷ 현장 직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직원처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노후화된 관사 개선과 확보가 필요하며, 노사협력과 현장방문 등 직원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할 것.

(7) 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처벌 강화

- ▷ 국립공원관리공단 불법행위 단속과 관련하여 출입금지, 취사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미흡한데 철저히 관리하고, 긴급구조 출동건수 증가 등으로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환경감시원들의 보수를 인상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

(8) 케이블카 설치 관련 경제성 분석 등 철저

- ▷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관련 경제성 분석에서 비용편익분석 대신 재무분석으로 대체한 것은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부적절하므로 이에 대하여 입장을 환경부와 정리하여 보고할 것.

(9) 국립공원내 관리사무소의 안전장비 확보 필요

- ▷ 국립공원 내 관리사무소에 응급처치 및 일반구조용 안전장비 개수가 기준에 미흡하므로 안전장비에 대한 확충 및 정기적인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10) 산사태 발생지 사후관리

- ▷ 산사태 발생지 143개소 중 74곳은 사후모니터링을 한 적이 없고,

61곳은 2012년 1회만 사후모니터링을 했을 뿐 관리를 하고 있지
아니함. 또한, 탐방로 근처 산사태가 발생한 45곳 중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 곳이 27곳에 달하고 있는바, 산사태 발생지에 대한 사
후관리를 할 것.

(11) 철새전문연구센터 출장소 설치

- ▷ 철새이동경로의 전국 주요망 구축을 위해 출장소 설치가 필요하
며, 관련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12) 가야산 국립공원 네이처센터 조성 관련

- ▷ 현재 가야산 국립공원에 성주군과 국립공단이 네이처센터 조성
추진하고 있는데, 기존의 자연관찰로와 연계한 실내학습이 가능한
실내의 종합학습장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13) 야영장 실정에 맞도록 전기사용료 체계 개선

- ▷ 지난 7월 국립공원 야영장 전기사용료가 기존 1박당 2천원에서
성수기 기준 4천원으로 인상되었는데, 전기사용료를 일괄 인상하
기 보다는 지역특성에 맞도록 전기사용료 체계를 개선할 것.

(14) 1사1탐방로 제도 보완

- ▷ 국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1사1탐방로’의 명칭을 변경하고, 기업로
고 대신 기업의 봉사단체명을 표지판에 부착하는 등 제도를 보완할 것.

(15) 자연자원 조사사업 결과 활용의 편의성 제고 필요

- ▷ 국립공원 자연자원 조사사업 1992년부터 10년마다 진행하고 있으나 그동안 서식종 조사 결과에 대한 DB 등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일반국민들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1) 그린에너지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원 감사 등 필요

- ▷ 그린에너지개발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출자한 자회사로 기존의 업체를 배제하고 고화제를 납품받고 있고, 돈을 주고 처리하는 폐기물을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는 등 비리가 많으므로 환경부가 특별감찰을 실시하고, 필요하면 감사원에 감사요구를 하는 등 조치를 하고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을 것.

(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사채용비리 근절책 마련 필요

- ▷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지침상 학력제한이나 연령제한이 있어서는 안되나 동점자 처리에 있어 학력이나 연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연봉협상이 결렬되어 채용이 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드림파크 골프장 개장 준비팀 전문계약직 채용 시 특정 아카데미 출신 면접자에게 특혜를 준 의혹이 있어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청 등 대책마련 할 것.

(3) 수도권매립지의 사용기간 연장 관련

- ▷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가 직접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테마파크 등 대안의 활용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 ▷ 서울시 및 인천시와 수도권매립지 연장 문제를 위하여 접촉하고 있으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직접적인 노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제3매립장의 공유수면매립변경승인의 계속 신청 등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 ▷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인천시민의 마음을 살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고, 매립종료와 관련한 행정소송도 가능하다는 강력한 추진의지를 갖추는 등 주체적이고 전략적인 계획을 갖출 것.
- ▷ 매립지로 인한 이익은 인천시민에게 돌려주면서 매립기간 연장을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할 것.
- ▷ 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하여 인천시 및 서울시 등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

(4) 황화수소 농도 증가 관련 전처리시설 선정의 적정성 검토

- ▷ 황화수소 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전처리시설은 제약을 못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므로, 전처리시설을 채택한 환경부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지만 140억원을 투자하고도 못 쓰고 있는데 대해서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함. 이에 대한 대책과 저감 방안을 마련할 것.

(5) 반입폐기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등 필요

- ▷ 반입폐기물 중 가연성의 비중이 높는데, 분리선별 시스템을 도입하여 자원재활용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방안 마련에 대하여 노력할 것.
- ▷ 또한 폐기물을 에너지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 구축방안을 강구 할 것.

(6) 쓰레기 불법반입 및 위반에 대한 엄중 처벌 필요

- ▷ 폐기물 반입업체 5곳 중 4곳이 위반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위반시 벌금과 조치사항이 너무 미약한 것에 기인하는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

(7) 음폐수협회와의 계약에 대한 신중 검토 필요

- ▷ 음폐수협회를 거쳐 공사에 반입하고 있는 음폐수의 경우 개별사업자가 협회에 별도의 관리비 등을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협회와 계약하지 말고 개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주민 부담을 최소화도록 할 것.

(8) 쓰레기 반입검사 강화 방안 마련

- ▷ 작년 갈등으로 인하여 반입량이 절대적으로 줄었으나 갈등 해소 후에도 크게 증가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하여 조사하고, 적발현황을 보면, 재활용될 수 있는 폐기물이 많이 매립되고 있으므로 폐기물 검사인원 고용을 늘리든지, 정밀검사를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9) 불법시설물 설치에 대한 대책 점검

- ▷ 수도권매립지에서 바이오리액터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1차 사업시 환경부장관의 승인없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법률을 위반한 것인바, 이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실시할 것.
- ▷ 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악취가 더욱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도 관련 자료를 지방청에 제출하지 않고 악취의 추가포집정도 설치하지 않고 2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대응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보고할 것.

(10) 벤젠 등 화학물질 사용에 대한 관리 철저

- ▷ 작업환경측정 자료에 벤젠을 사용하지만 그 결과가 누락되었고, 유독물, 화학물질의 취급량과 등록자료가 상이한바,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

(11) 매립지 주변 악취 관리 필요

- ▷ 매립지 주변의 폐기물 적환장, 하수처리장 및 소각장 등에서 악취와 비산먼지가 계속 나타나고 있어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를 주민들이 오해하여 수도권매립지 탓으로 돌리지 않도록 대응을 분명히 할 것.
- ▷ 수도권매립지는 인천 서구청에서 관할하는 업체 중 가장 많이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악취 저감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

(12) 노후화된 기존고화처리장 대체시설 마련 시급

- ▷ 2012년 하수슬러지, 2013년 음폐수 해양투기 전면 금지로 인해 각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수도권매립지의 시설을 이용하여 전량 처리하고 있는 상황임. 기존고화처리장의 경우 15년 된 노후 시설로 처리기술이나 고장 및 악취에 취약한바, 자원순환이 될 수 있는 대체시설을 설치할 것.

(13) 드림파크 문화재단의 부실운영 대책 마련 필요

- ▷ 최근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공사의 합동 감사결과 20가지의 지적을 받는 등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동 재단에 대한 관리·감독 대책을 마련할 것.

(14) 채용위탁업체의 무분별한 개인정보수집 문제

- ▷ 민간 채용위탁업체에서 지원자들의 가족관계를 포함한 무분별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므로 이를 즉시 시정하고 위부 채용위탁업체가 개인정보를 수집·활용·보관·폐기하는 전과정에 있어 엄격한 관리 등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1) 해외환경협력센터 운영의 내실화 필요

- ▷ 중소환경기업의 해외진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해외환경산업협력센터 내실화 방안을 강구할 것.

(2) 녹색 위장 제품 대책 마련 필요

- ▷ 녹색 위장제품 관리·추방 대책에 친환경제품 생산기업 보호 및 기업의 친환경제품 개발 촉진 방안을 포함하고, 전체 환경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할 것.

(3) 비정규직 처우 개선

-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하고,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하여 무기계약직 전환자의 임금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4) 환경오염 피해구제제도 도입

- ▷ 환경오염 사고 시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피해배상과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환경오염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위해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에 대해 환경부 및 기술원은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마련할 것.

(5) 환경기술 성과 활용을 위한 체계적 시스템 구축

- ▷ 영세 산업체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성과 관리 및 확산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것.

(6) 해외파견근무 직원에 대한 지원 확대

- ▷ 해외파견 직원에 대해 연간 약 6,100만원 이내의 지원금을 지급

하고 있으나, KOICA 등 타 기관과 차이가 많이 발생함. 해외근무의 특수성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안정적 업무수행을 위해 타 기관과의 형평성에 맞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7) 중소기업 위주의 환경산업체 지원방안

- ▷ 2012년 기준 금융기관의 전체 대출 중 환경산업체에 대한 대출은 0.69%로 극히 저조한 수준인바, 기술력이 높거나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환경산업체에 대한 융자지원 방식을 개선하는 등 중소기업 환경산업체가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8) 녹색매장 지정 및 운영의 내실화 확보 필요

- ▷ 녹색매장 심의위원단 100명 중 83명이 위원회 회의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고 있는 등 부실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고, 심의위원 위촉 기준과 절차도 미흡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 고용노동부 소관

▶ 고용노동부 본부 ◀

【공통사항】

(1) 고객에 의한 성희롱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 ▶ 고객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의 인권구제를 위해 사업장 지도·점검 및 교육 등 개선책을 마련할 것.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 ▶ 직장 내 성희롱을 근절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강화와 매뉴얼 구비 등의 개선책을 마련할 것.

(3) 유해물질 산업단지 내 직장어린이집 환경개선

- ▶ 전주, 백석 등 일부 산업단지의 경우 PSM(공공안전관리)대상 사업장이 다수 있고 그곳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에서 아동들이 유해환경에 장시간 노출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유해물질 산업단지 내 공동직장어린이집에 대하여 환경개선 지원을 하도록 시정할 것.

(4) 근로감독관 확충 및 근무기강 확립

- ▶ 근로감독관 결원이 많고 비위 적발도 적지 않으므로, 근로감독관 정원 확대 등 인력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근로감독관의 비위를 근절할 것.

(5) 홍보예산 집행 철저

- ▷ 각 실국 별로 시행하는 텀키홍보 예산의 책정 규모 및 집행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 ▷ 청소년 근로자보호 관련 홍보의 경우 법상 근로감독의 역할과 홍보위탁업체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 수행할 것.

(6) 고용노동행정 주민 편의 제고

- ▷ 대구 북부지청(대구 서부지청으로 명칭 변경)이 이전함에 따라 경북 칠곡 주민의 접근성이 떨어져 불편함을 겪고 있으므로, 관할 조정 등 주민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7) 부당한 계약내용 시정

- ▷ 고용노동부 및 그 소속기관의 용역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에 노동3권 제한, 불합리한 차별 등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내용이 다수 있으므로, 즉시 시정하고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8) 공적개발원조 등 국제협력활동 강화

- ▷ 우리 노사관계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개선 등을 위해 국제협력 활동을 강화할 것.
- ▷ 수원국 현실에 맞는 직업훈련정책 컨설팅, 구체적인 실현 프로그램 설계, 시설운영 지원 등 패키지형 사업을 ILO와 협력하여 추진할 것.

(9) 재정지원사업 부정수급문제 개선 대책 마련

- ▷ 지난 3년여 동안 고용노동부의 각종 보험사업과 재정지원사업의 부정수급 적발금액이 1,800억원으로 나타나 부정수급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10) 각 고용노동지청에 대한 내부 감사 필요

- ▷ 일부 고용노동지청이 지역 기업들과 유착하여 근로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므로 고용노동지청과 지역 기업들의 유착여부, 고용노동지청의 기강해이 등에 대한 내부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할 것.

(11) 승강기안전기술원 기관장 해임조치 필요

- ▷ 승강기안전기술원 이사장은 공공기관을 맡아서 경영할 수 있는 역량·관리능력·도덕성이 전반적으로 부재하므로, 법인카드 부정사용 등 방만한 기관경영과 무리한 청사건립 계획 등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임 조치할 것.

(12) 노동부 산하기관의 시대착오적 안보교육에 대한 철저한 조사 필요

- ▷ 한국폴리텍대학 등에서 북한, 이념, 체제 등을 소재로 한 시대착오적이고 편향적인 냉전, 안보교육을 실시하였던 만큼, 한국폴리텍대학을 비롯한 산하기관의 이념 편향적인 안보교육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그 책임을 물을 것.

(13) 대우세계경영연구회의 K-Move스쿨 선정 관련, 국민정서를 고려하여 상식에 입각하여 판단

- ▷ 대우세계경영연구회가 K-MOVE 스쿨에 선정된 것과 관련, 국민정서를 고려해서 상식에 입각하여 판단할 것.

(14) 중앙노동위원회 4급 이상 근무평가, 5급 이상 승진평가 등 평가방식에 대한 재검토

- ▷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이뤄지고 있는 노동위원회 4급 이상의 근무평가와 5급 이상의 승진평가 등 평가방식에 대해서 중앙노동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재검토 할 것.

(15) 국회의원의 상임위 활동에 필요한 자료제출요구 등에 비협조하는 행위 근절

- ▷ 정부가 국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행위는 「대한민국헌법」 제61조에 따른 국회의 국정감사를 부정하는 행위이자 「국회법」 제128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위반하는 행위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라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2조의 죄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전 직원에게 숙지시킬 것.
- ▷ 국회의원에게 자료제출을 거부하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에게 같은 법 제12조에 상응하는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것.

- ▷ 「대한민국헌법」이 정하고 「국회법」 등 관계법에 따른 국회의 국정감사 및 국회의원의 상임위 활동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요구에 있어 정부 차원의 협조지침을 정하고 자료제출 등에 따른 불필요한 갈등 및 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

(16) 울진군을 관할하는 지청조정

- ▷ 울진 관할이 태백지청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 포항지청으로 환원하도록 검토할 것.

【고용 부문】

(1) 60세 정년연장제도 시행 전 정년연장의 조속한 시행 독려

-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또는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년 60세 연장제도가 시행되는데, 법 시행 이전이라도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을 비롯한 공공부문에 있어서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도록 하고, 향후에는 정년 65세 연장제도 또한 도입을 논의할 것.

(2) 60세 정년연장제도 시행 전 “깁세대”의 보호조치

-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년연장제도의 시행 이전에 정년이 도래하는 55년생부터 58년생까지의 300만명 근로자(일명 “깁세대”)에 대한 민간분야의 고용안정조치가 필요하고,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부터라도 “깁세대”의 보호를 솔선수범할 것.

(3) 시간선택제일자리 창출 지원 강화 및 내실화

- ▷ 대기업보다는 시간선택제일자리 창출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
- ▷ 인건비 지원기준(요건)을 최저임금의 130%로 획일화할 경우 임금수준의 하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직무 또는 직종별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 ▷ 시간선택제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의 대상이 중소기업과 수도권에 편중된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 여력이 있는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수도권 편중 현상도 해소할 대책을 마련할 것.
- ▷ 시간선택제일자리에 대하여 사회보험료(고용보험료, 국민연금납부금)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으나, 추진계획 등이 면밀히 준비되지 못하였으므로 기업·규모·직종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세부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예산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
- ▷ 시간제일자리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도 추진되는 등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므로, 「고용정책 기본법」 외에도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것.
- ▷ 정부의 시간제일자리 확대 정책이 일자리 쪼개기(예를 들어 점5일자리, 돌봄노동자 일자리시간 쪼개기 등)로 변질되고 나쁜 일자리 양산을 촉진할 수 있어 이를 불식시키는 조치를 취할 것.

(4)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사업 효과 제고 방안 강구

-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사업을 통한 사회보험 신규가입 실적이 미흡하므로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규모 조직과 협력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

(5)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수탁기관 관리감독 시스템 구축 필요

-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비롯해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 위탁을 받은 일부 수탁기관이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할 뿐 아니라 부정수급 의혹까지 나타나고 있으므로,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수탁기관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수탁기관들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와 같은 문제들을 방지할 것.

(6) 취업성공패키지 기초생활수급자 전달체계 변경 검토

- ▷ 기초생활수급자의 탈수급률을 비교하면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사업보다 보건복지부 희망리본사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 전달체계가 합리적으로 구축된 것인지 의문이 있으므로, 기초생활수급자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전달체계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7) 취업성공패키지 위탁금 정산제도 개선방안 마련

- ▷ 취업성공패키지 위탁금(기본금) 정산반환방식이 상담사에게 과도한 행정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정산제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8) 피보험자격 관련 과태료부과에 따른 선의의 피해 방지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내용을 정정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근로자가 신고내용을 정정하지 못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로 말미암아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감독을 철저히 할 것.

(9) 실업급여 보험료율 특례제도 시행 검토

- ▶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실업급여 보험료율 특례제도가 시행령 미비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비정규직 남용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동 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검토해볼 것.

(10) 모성보호급여 일반회계 또는 고용안정계정 부담 검토

- ▶ 모성보호급여가 대부분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에서 지출됨에 따라 해당 계정의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법정적립배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모성보호급여를 일반회계 또는 고용보험기금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계정에서 지출하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1)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수탁기관 관리감독 강화

-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사업은 중장년층 고용안정을 위해 전직지원 컨설팅과 제2인생설계 지원, 재취업알선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균

형 있게 제공하는 것임에도 상당수 수탁기관들이 단기 취업성과에 치중하여 본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취업성공패키지 등 다른 고용서비스와 유사해진 측면이 있으므로, 당초의 전직지원서비스 개편 취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12) 4대 보험 가입여부 공개 등 구직자 보호 대책 마련

- ▷ 허위 구인광고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인기업의 4대 보험 가입여부 등 구인기업의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
- ▷ 워크넷과 유사한 도메인이나 명칭을 사용하는 직업정보제공사이트들이 별다른 제재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으므로 유사 도메인이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13) 직업소개업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직접 관리감독 필요

- ▷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역량이 부족하여 지난 10년 동안 직업소개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건수가 매우 적은 것으로 보이므로, 직업소개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고용노동부가 직접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4) 직업상담원의 상담직 공무원 전환대책 마련

- ▷ 고용센터 상담직렬 공무원으로 전환되지 못한 직업상담원들은 상담경험이 풍부하고 업무이해도가 높으므로 이들을 상담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

(15) 농·축산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 마련

- ▷ 외국인근로자 도입업종 중 농·축산업의 경우 실근로시간을 입증하기 어려워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이 크게 침해되고 있고, 현재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도 용이하지 아니한 바, 농·축산업에서의 근로시간 및 임금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토록 할 것.

(16)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의 실적 관리 적정화

- ▷ 고용노동부가 작성한 청년 일자리 창출 실적을 보면 창출된 일자리라고 볼 수 없는 단순 사업 참여자 등이 포함되고 있는 바, 향후 현실적인 목표를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실적이 적정화되도록 할 것.

(17) 해외취업연수사업 등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방안 강구

- ▷ 해외취업연수사업과 K-Move 스쿨 모두 서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지방은 훈련시설이나 관련 정보가 부족하므로 정부차원의 지원이 더욱 필요한 바, 두 사업 영역이 지방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

(18) 해외취업연수사업 등 청년 일자리사업 내실화 방안 강구

- ▷ 우리나라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질 낮은 기업으로의 취업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는 해외취업연수사업, 위장 운영기관을 선정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 등 청년일자리

사업이 적정하게 관리·운영되고 있지 아니한 바, 청년 일자리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제고하여 이들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

(19) 유사사업에 대한 지역 간 지원금액 편차 해소

- ▷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의 경우 타 지역의 사업과 비교하여 유사한 사업임에도 1인당 지원금액의 편차가 큰 경우도 존재하는 바, 형평성과 예산낭비의 여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토록 할 것.

(20) 건설일용근로자 기능지원사업의 훈련비 단가 상향

- ▷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시간당 훈련비 단가가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는 바, 이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증액토록 할 것.

(21)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근절대책 마련

- ▷ 직업능력개발사업 훈련기관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문제는 통상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바, 불법사용 근절대책을 마련토록 할 것.

(22) 내일배움카드제 제도개선 방안 강구

- ▷ 현재 내일배움카드제는 일부 직종으로의 편중훈련 문제, 취업률 저하 문제, 산업별 인력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훈련상담원의 고용불안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업·지역·산업의 인력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시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훈련비 단가를 현실화하며,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제도개편 방안과 훈련상담원의 고용안정화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

- ▷ 4대 인기직종에 대한 계좌를 연말에 발급중지토록 한 조치는 취업훈련이 계절적 수요에 기초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아니한 바, 이에 대한 시정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

(23) 공공기관 주도적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실시방안 마련

- ▷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은 시설 장비 등 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비용이 소용되어 민간훈련기관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이므로 폴리텍대학 등 공공기관이 동 훈련을 주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

(24) 기금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예방 시스템 구축

- ▷ 최근 3년간 고용보험기금 등의 기금으로 추진한 사업에서 발생한 부정수급 규모가 1,560억원에 달하고 있는 바,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할 것.

(25) 여성고용비율·여성관리자비율 제고를 위한 수단 강구

- ▷ 여성고용비율·여성관리자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다수의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의 경우 그 효과가 저조한 실정이므로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할 것.

(26) 고용노동 통계조사의 내실화

- ▷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경우에 지역별로 공개가 되고 있지 않고 있는 등 고용노동부가 생산하는 승인통계가 대체로 부실하므로, 앞으로 고용률 70% 로드맵을 달성하고 그에 걸맞는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통계조사의 표본수를 늘리고 조사를 확충할 것.

(27) 장애인 예술교사 취업의 저변확대를 위한 업무협조

- ▷ 예술분야에 특기를 발휘하는 장애인을 예술교사로 육성하여 방과 후학교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동부가 교육부·문화관광부 등 관련 부처와 논의하여 이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할 것.

(28) 사회적기업제품 고용노동부 구매 실적 제고

- ▷ 사회적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가 활성화되도록, 고용노동부도 제품 구매 실적을 제고할 것.

(29) 사회적기업 지원 일원화

- ▷ 사회적기업 지원에 일원화가 필요하므로, 부처 간에 칸막이를 없애고 TF 등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30) 외국인 고용관련 표준근로계약서 활용방안 제고

- ▷ 외국인 고용계약서 관련 숙박비, 식대비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한 표준근로계약서에 대한 활용 실태를 조사할 것.

- ▷ 중기청 등을 통해 모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31) 고용센터 추가 신설

- ▷ 원거리 고용센터 이용으로 불편을 겪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노동 행정수요가 높은 칠곡 등 지역에 고용센터를 추가 신설하여 고용센터의 접근성을 높일 것.

【노동 부문】

(1) 통상임금판결과 관련한 모성보호급여 검토

- ▷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이 확대될 경우 모성보호급여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법적청구가 가능한 예상분에 대하여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2) 가학적 인사관리 방지대책 강구

- ▷ 상당수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가학적인 인사관리가 행해지고 있어 근로자들이 정신적인 고통과 우울증을 겪고 있음에도 이러한 행태를 예방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3) 솔로몬 노무법인 관련 사건 철저한 조사

- ▷ 솔로몬 노무법인은 노동부 출신 공무원이 대표일 뿐 아니라 사무실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같은 건물에 입주해 있고 해당 노무법

인 소속 노무사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는 등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의 유착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 솔로몬 노무법인이 사건 수임 관련 불법행위 혐의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해당 노무법인에 대한 조사·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므로, 솔로몬 노무법인의 불법행위,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의 유착 의혹 등에 대하여 철저하게 조사할 것.

(4) 노동관계법 위반 공공기관에 대하여 엄정한 조치 필요

- ▷ 일부 공공기관이 임신부에게 휴일근로와 야간근로를 강요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례가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하여 유사한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 ▷ 상당수 공공기관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거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불이행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근로감독건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감독을 철저히 하고 더욱 강화된 조치를 마련할 것.

(5) 감정노동자 근로실태조사 및 근로조건 개선 대책 필요

- ▷ 상당수 감정노동자들이 우울증과 자살충동 등을 겪고 있으므로 감정노동자들의 근로실태를 조사하고 이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
- ▷ 미스터리 쇼퍼(Mystery Shopper)제도가 원래 취지와 달리 감정

노동자들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지 않은지 실태조사 및 근로감독을 실시할 것.

(6) 브랜드(프랜차이즈)별 근로감독 방안 검토

- ▶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근로실태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에도 제한된 근로감독관 인력으로 말미암아 효과적인 근로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므로, 아르바이트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브랜드(프랜차이즈)별로 근로감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7) 학원강사 처우개선 조치 마련

- ▶ 사설학원의 강사는 다수가 근로자성격을 인정받음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고, 임금체불금액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학원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8) 야간근로 관련 실태조사 실시 및 제도개선 방안 강구

- ▶ 야간근로는 근로자들의 업무상 재해율을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있고 상당수 근로자들이 야간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되나 야간근로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태조사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으므로, 야간근로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야간근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및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9) 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필요

- ▶ 임금체불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연이자제도를 재직근로자에게도 적용하고 사업주에게 급여명세서 지급의무를 부과하며, 체불사

건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0) 체당금사건 신속처리 위한 방안 마련

- ▷ 도산등사실인정 및 체당금 확인신청 처리기간이 상당히 길 뿐 아니라 지방고용노동청별로 소요기간의 차이가 큰 상황이므로 체당금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11) 중증장애인 고용 사업장 최저임금법 준수 위한 조치 필요

- ▷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 중증장애인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음에도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12) 경제교과서의 최저임금제도 관련 내용 수정 필요

- ▷ 고등학교 경제교과서를 보면 최저임금제도에 관하여 왜곡되거나 사실관계가 잘못된 내용이 기술되어 있으므로 교육부와 협의하여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균형 있고 정확한 내용이 서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

(13) 감시·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법 적용제외 검토

- ▷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제도 적용하면 이들의 일자리를 더욱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최저임금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4) 최저임금법 준수 위한 근본적 대책 강구

- ▷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이 여전히 과도한 현실이므로,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주 명단공개, 사업주 사법처리 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

(15) 숙식비 최저임금 산입 방안 검토

- ▷ 현행 최저임금법령에 따르면 숙식비는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데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숙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6) 퇴직연금 가입 활성화 대책 필요

- ▷ 퇴직급여 체불문제를 해결하려면 퇴직연금 가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신규사업장이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제재하는 방안, 영세사업장이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사업에 가입할 경우 수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7) 노동분쟁해결지원팀 운영 내실화

- ▷ 노동분쟁해결지원팀 제도를 도입한지 1년여가 되었으나 변호사나 노무사와 근로감독관간의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상담내용에 대한 민원인의 불만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므로, 노동분쟁해결지원팀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할 것.

(18) 통상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검토

- ▷ 통상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될 경우 국가와 공공기관은 근로자에게 임금차액을 지급해야 하고, 모성보호급여지출 소요도 증가하는 만큼 통상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고용보험기금을 비롯한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재원확보대책을 마련할 것.

(19) 공공부문 민간근로자 처우 개선

- ▷ 중앙부처 무기계약직 간 임금격차 해소 및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에 대한 현실적인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 고용노동부 내부에서조차 직종 또는 업무 등에 따라 민간근로자에 대한 처우가 상이하므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민간근로자 처우를 개선할 것.

(20) 쌍용자동차 노조에 대한 손배소 문제 해결

- ▷ 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의 파업과 관련하여 국가가 상당한 규모의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신청하였음.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중재자 역할을 할 것.

(21) 파견근로자 보호 대책 마련

- ▷ 근로자파견업체가 수수료율을 불공정하게 책정하여 중간착취가 발생하고 있음. 수수료율의 상한선을 정하거나 업종별로 특성을 고려하여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 워크넷에 공공연히 파견금지업종에 파견근로자를 모집한다는 광고가 게재되고 있음. 이를 즉시 시정하고 향후 근로자파견이 금지된 업종 또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22) 공공기관 등의 고용세습 철폐

- ▷ 다수의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의 단체협약 또는 인사규정에 고용세습 조항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지도할 것.

(23) 기간제교사 처우 개선

- ▷ 기간제교사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근로조건 보호 및 처우 개선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24) 아르바이트 노동자 보호

- ▷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할 것.

(25)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 안정

- ▷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고용안정을 위해 교육당국과 긴밀하게 제도개선을 협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26) 근로감독 재실시

- ▷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근로감독은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재조사를 실시할 것.

(27) 불법파견 감독 강화

- ▷ 경기 안산 지역의 불법파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또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민관협의체 등을 통한 TF를 구성해서 해소 대책을 마련할 것.

(28) 재단법인 지도·감사

- ▷ 공익재단인 함께일하는재단과 관련하여 비리의혹, 노사갈등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감사 등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29) 고용노동환경 실태조사

- ▷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도소매 유통업체, IT업종 등에 있어서 불법파견 등을 포함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고용노동환경 실태조사를 할 것.

(30)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조설립신고 반려 처분 취소

-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노조설립신고 반려 처분은 전공노와 고용노동부 간의 10여차례가 넘는 실무협의를 거쳐 사실상 합의에 이르렀으나, 법령과 신의칙이 아닌 정무적 판단에 기인해 내린

부당한 처분이므로 노조설립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하고 전공노와 대화를 통해 다시 절차를 밟아 노조설립신고필증을 교부할 것.

(3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노조아님통보’ 행정처분 취소

- ▷ 14년간 합법적으로 활동해 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노조아님통보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라 보기 어렵기에 위 행정처분을 취소할 것.

(32) 도시철도 노조실태조사 실시

- ▷ 도시철도 노조의 실태를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산재 예방 및 보상 부문】

(1) 산재병원 수지차보전 및 간호등급 상향조정 노력 필요

- ▷ 산재병원의 수지차를 보전하여 산재병원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간호등급이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 산재모병원 건립 검토

- ▷ 업무상 질병·재해에 관한 임상연구 강화, 산재의료수가제도와 산재의료전달체계 확립, 민간지정의료기관에 대한 선도관리 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산재모병원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3) IT업종 근로자 건강검진 지원방안 강구

- ▶ IT업종 근로자의 상당수는 장시간 근로에 따라 불면증과 우울증 뿐 아니라 심혈관계질환 등을 겪고 있으나 건강검진을 받는 비율이 낮아 조기에 치료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IT업종 근로자들의 건강검진 수검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

(4) 산재은폐 방지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

- ▶ 위험의 외주 및 산재은폐를 통해 원청업체가 수백억 원의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은 사례가 있으므로, 산재은폐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감면받은) 산재보험료 환수나 개별실적요율제 적용제외, 징벌적 과태료부과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체들의 산재은폐시도를 방지할 것.
- ▶ 개별실적요율제도가 산재은폐 및 위험작업의 외주화를 부추기는 문제가 있으므로 할인율, 특히 대기업에 대한 할인율을 낮추는 것을 포함하여 개별실적요율제도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편방안을 마련할 것.

(5)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다양화

- ▶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이 의학전문가로 편중되어 법리적 판단보다 의학적 판단이 우선시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나 산재보험전문가의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위원구성을 변경할 것.

(6)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재심사절차 개선 방안 마련

- ▷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의 사건처리가 과중하고, 심사위원들이 심사 안전 관련 자료를 사전에 검토할 수 없어 재심사가 부실하게 이뤄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는 당사자의 구두진술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안내문구를 당사자에게 발송하고 있는바, 해당 안내문구를 삭제하고 개선안을 제시할 것.

(7)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적용대상 확대 필요

- ▷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6개 직종에 대해서만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들 직종 외에도 산재보험적용이 필요한 직종을 파악한 후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것.

(8) 산업안전감독 등 실시

- ▷ SK 하이닉스에서 유해·위험한 작업을 하도급업체에 도급을 주면서 정보제공 등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산업안전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9) 도급사업 시 수급인 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 대책 마련

- ▷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미흡 등으로 인해 수급인의 근로자가 죽거나 다치는 산업재해가 빈발하고 있으므로, 실태를 파악하고 도급인의 책임 확대, 산업안전감독 강화, 사고예방을 위한 매뉴얼 작성 등의 조치를 취할 것.

(10)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책임 확대

- ▷ 책임감리제가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사고 발생 시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책임감리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책임을 확대할 것.

(11) 생식독성물질 관리

- ▷ 근로자에게 유해한 생식독성물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 ▷ 생식독성과 관련한 불임, 유방암, 기형아 출산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생식독성물질 취급실태 조사결과에 따라 특별관리 대상물질을 추가로 지정할 것.

(12) 마필관리사 안전보건 제고

- ▷ 각종 사고와 부상에 노출되어 있는 마필관리사에 대한 안전보건대책을 마련할 것.

(13) 석면안전관리 강화

- ▷ 취급이 전면 금지된 석면이 시중에서 취급되고 있으며, 건축물 또는 설비 해체 전 석면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으므로,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할 것.

(14)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제도 전면 재검토

- ▷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제도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재해율 감소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전면적으로 제도를 재검토하고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며 근로자대표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

(15) 반도체사업장 근로자 보호

- ▷ 하도급업체 근로자를 포함하여 전체 반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스크리버 청소 작업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에 따라 특수건강진단도 실시할 것.
- ▷ 반도체 사업장에서 스크리버 청소 작업에 사용하는 화학물질(부산물 포함)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리대책을 마련할 것.

(16) 근로복지공단과 산재병원 회계통합 검토

- ▷ 근로복지공단과 산재병원의 회계를 통합하는 것이 좋을지 분리하는 것이 좋을지 분석하여 개선안을 마련할 것.

【본부에 대한 감사 중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관련사항】

(1) 고용노동연수원의 분리방안 등 검토

- ▷ 고용노동연수원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속기관에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

- ▷ 사회적기업의 확대 못지 않게 중요한 사항이 사회적기업의 사후관

리이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진흥원의 인력과 예산을 사회적기업 3,000개의 지원과 사후 관리에 합당한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

(3) 건설근로자공제회 업무 전반에 대한 추가감사 실시

- ▷ 건설일용근로자를 위한 공제부금은 선량하게 관리되어야 함에도 이른바 묻지마식 자의적 자산투자로 인하여 대규모 투자손실을 초래하였고, 근무 중에 골프를 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며, 해외 원정도박을 한 의혹도 존재함에도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감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모두를 밝혀내지 못하였는 바, 고용노동부는 추가감사를 실시토록 할 것.

(4) 건설근로자공제회의 비리행위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 통보 및 비리행위 방지대책 마련

- ▷ 공제회의 비리행위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를 국회에 통보토록 하고, 향후 동일한 비리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마련토록 할 것.

【6개 지방청 공통사항】

(1) 장시간 근로 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 ▷ 주·야간 맞교대 사업장을 비롯하여 장시간 근로가 만연한 사업장에서 장시간 근로 구조 및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각 지방고용노동청이 적극적으로 지도점검할 것.

(2) 장애인취업을 위한 MOU체결 등 협력 강화

- ▷ 전국적으로 기업과 지방자체단체의 장애인 고용률이 계속적으로 저조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각 지방노동청이 장애인공단지사·지방자치단체 등과 MOU를 체결하여 장애인 취업알선을 적극적으로 할 것.

(3) 복수노조 사업장에 대한 감독 강화

- ▷ 복수노조 허용 이후 회사가 노동조합 설립에 개입하여 노사갈등 또는 노노갈등을 유발하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엄정하게 사법 조치할 것.

(4) 근로자파견 감독 철저

- ▷ 상시적·지속적 업무임에도 일시적·간헐적 업무로 신고하고 파견금지업종에 파견근로자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철저히 조사·감독할 것.

(5) 화학공장 관리 강화

- ▷ 중대산업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화학공장과 그 주변 군(軍) 화학부대가 MOU를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사고 가능성을 줄이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

(6) 간접고용 근로자 보호

- ▷ 파견, 용역, 하도급 등 간접고용 근로자의 근로조건, 고용승계 등 계약 상황을 상시적으로 관리·감독하여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유도할 것.

(7) 비정규직근로자 보호

- ▷ 비정규직근로자를 많이 사용하고 있거나 대량으로 계약해지가 일어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

(8) 공정하고 청렴한 민원처리

- ▷ 지방고용노동청 고객지원실(민원상담실)에서 민원을 부당 또는 불성실하게 처리하거나 민원인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민원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처리하고 직원의 비위를 근절할 것.

(9)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법 위반을 예방할 수 있는 사전적 방안 마련

- ▷ 외국인근로자가 맺은 근로계약 계약서상으로도 최저임금 위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상당히 많으므로 사전적으로 사업주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

(10) 이탈신고된 외국인근로자의 소재지 파악 업무 개선

- ▷ 사업주로부터 피해를 당한 외국인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고(진정)를 한 경우 사업주가 보복의 일환으로 이탈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고용센터가 신고(진정)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한 후 외국인근로자의 소재지를 파악토록 하여 외국인근로자가 부당하게 미등록 체류자로 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련 업무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1) 솔로몬 노무법인의 공인노무사법 위법혐의 철저한 조사

- ▷ 솔로몬 노무법인과 소속 노무사들의 위법혐의와 관련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대처가 매우 미온적이었다고 판단되므로, 검찰수사와 별개로 공인노무사법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 철저하게 조사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

(2) 법무보호복지공단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조사 및 엄정조치

-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철저하게 조사하고 위반사실 확인 시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

(3) 신고사건 처리기간 단축 위한 조치 필요

- ▷ 지방고용노동청별 신고사건 평균처리일수를 비교해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57.4일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신고사건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4) 서울도시철도공사 근로감독 계획 수립

- ▷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기관사가 자살하는 사건이 여러 건 발생하였음에도 기관사의 근로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기관사를 포함하여 철도공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근로감독 계획을 수립할 것.

(5)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

- ▷ 상급단체 탈퇴강요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있는 MBC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할 것.

(6) 지하철 역사 석면안전관리 강화

- ▷ 서울 지하철 역사의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는 때에 안전보건 규정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으므로,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필요시 근로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

(7) 용역업체 비정규직 보호

- ▷ 일부 자치단체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의 외주와 관련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지침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침을 준수하도록 지도할 것.

(8) 사업장 노사갈등 해소

- ▷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 해지, 노조간부 징계 등으로 현대증권 노사관계가 악화되고 있으므로, 노사갈등 해소를 위해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9) 고용허가제 위반 및 퇴직공제 미가입 사실관계 확인 후 적절한 조치시행

- ▷ 건설 사업장의 외국인근로자 불법고용 문제(고용센터 신고 인원과

실제 출역인원간 차이)와 건축허가일과 착공일의 차이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 미납문제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10) 부정수급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리 철저

- ▷ 서울청 관할 사회적기업의 부정수급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서울시와의 업무 협조를 통해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사회적기업 전반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

(1)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실시

- ▷ 강제적 정리해고, 노동조합 활동 탄압이 이어지고 있는 하이원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

(2) 부당노동행위 고발사건 처리 철저

- ▷ 인천국제공항공사 협력업체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

(3) 용역업체 비정규직 보호

- ▷ 일부 자치단체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의 외주와 관련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지침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침을 준수하도록 지도할 것.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

(1) 경남지역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제고 방안

- ▷ 경남지역의 경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사업장의 설치이행률이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2) 산재은폐 방지 위한 관리감독 철저

- ▷ 사업장에서 산재은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

(3) 진주의료원 퇴직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대책 마련

- ▷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실직자가 280여명 발생하였으나 이들에 대한 조치가 매우 미흡하므로 진주의료원 퇴직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이들이 조속히 재취업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4) 현대중공업 근로감독 실시 및 산재보험료 감액분 환수

- ▷ 현대중공업 하청업체를 점검한 결과 다수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적발되었고 현대중공업도 근로기준법 위반 정황이 있으므로, 현대중공업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이와 같은 논란을 불식시킬 것.

- ▷ 현대중공업은 개별실적요율제를 통해 그동안 거액의 산재보험료 감액을 받았음에도 산재은폐 사실이 확인된 만큼 감액분에 대한 환수조치를 실시하고 아울러 제도개선도 추진할 것.

(5) 주물업체 산업안전지도·감독 강화

- ▷ 소규모 주물업체가 밀집된 부산 북부, 경남 창원 및 양산 지역 등을 중심으로 주물업체에 대한 긴급 안전진단과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방열복 미착용과 관련한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

(6) 용역업체 비정규직 보호

- ▷ 일부 자치단체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의 외주와 관련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지침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침을 준수하도록 지도할 것.

(7) 조선업 산업재해 감소

- ▷ 조선업의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

(1) 대구MBC 체불임금 청산 위한 지도감독 강화

- ▷ 대구MBC 직원들에 대한 임금체불액이 8억 1천만원에 이를 정도로 임금체불이 심각한 상황이므로, 체불임금이 조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

(2)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 대책 마련

- ▷ 대구·경북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구인자와 구직자간의 일자리 미스매치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

(1) 건설현장 산업안전감독 강화

- ▷ 도급인의 법 위반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음.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과 수시감독을 강화하고 악의적인 부실시공과 안전관리 소홀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할 것.

(2)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성실외국인 재입국 취업제도 적극 활용 대책 마련

- ▷ 목포 지역에서 임금체불 문제 등이 높게 발생하고 있는 바,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토록 하고, 사업장에서 성실외국인 재입국 취업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토록 할 것.

(3) 사업주 지원 원격훈련의 부정수급 문제 등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

- ▶ 사업주 지원 원격훈련의 부정수급액 중 약 42%가 광주청 관할에서 발생하고 있고, 훈련생과 훈련과정이 부적정하게 매치되는 사례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으며, 부정수급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자가 대표자 변경을 통해 새로운 훈련기관을 운영하여도 이를 방지하지 못하는 문제 등도 발생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토록 할 것.

(4) 3M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수사 촉구

- ▶ 3M은 흑자를 내고 있음에도 실질적 지배구조 아래에 있는 한국 3M하이테크, 한국3M보건안전, 한국3M트레이딩 등은 연결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아 이익을 과소하게 보이게 하여 법인세 감면,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억제 등 부정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조사 또는 수사를 진행할 것.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1) 화력발전소 건설현장 산업안전감독 강화

- ▶ 당진 화력발전소 9·10호기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고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

(2) 불법파견 문제 해소

- ▷ 한국원자력연구원 소속 비정규직근로자 중 불법파견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

(1) 노사정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

- ▷ 통상임금 등 주요한 현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노사정위원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
- ▷ 한-EU FTA 시민사회포럼 사무국으로서 미비준 핵심 협약의 비준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

(2) 제도개선 건의

- ▷ 청와대 내에 노사관계 및 노동시장 정책을 총괄하는 노동전담 조직을 신설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

(3) 의제별·업종별 위원회 활성화

- ▷ 노사정위원회의 의제별 또는 업종별 위원회 설치·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4) 지역노사민정협의체 지원 체계 개선

- ▷ 지역노사민정협의체 지원을 고용노동부가 수행하고 있는데, 중앙과 지역이 단절되어 있어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

(5) 회의운영 내실화

- ▷ 서면회의와 위원 대리참석을 줄여 회의 운영을 내실화할 것.

(6) 합의사항 이행률 제고

- ▷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위원회 합의사항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중앙노동위원회 ◀

(1) 노동위원회 독립성·공정성 확보

- ▷ 노동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사·조직 등을 망라한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 사측의 대리를 맡아 오던 로펌 출신의 공익위원이 늘어남으로 인해 노동자 측으로부터 공익위원 기피 신청이 늘어나는 만큼 기피신청 현황과 사례를 살펴보고 공정한 노동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

(2) 금전보상 산정기준 구체화

- ▷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금전보상(금품지급)명령에 있어 노동위원회의 금전보상 산정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구체적·객관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할 것.

(3) 회의 참여율 제고

- ▷ 노동위원회 위원 중 회의 참여 실적이 저조한 위원이 많아 회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4) 구제명령 이행률 제고

- ▷ 일부 공공기관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까지 노동위원회의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례가 있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한 공공기관의 이행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5)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의 엄정한 운영

- ▷ 노동위원회 공익위원과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제척·기피·회피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것.

(6) 구제이익 관련 기간제근로자 보호 대책 마련

- ▷ 기간제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다투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아 부당해고로 인한 잔여 계약기간의 임금을 민사소송을 통해 받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 보호에 역행하

고 노동위원회 설립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법 또는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할 것.

(7) 화해제도 내실화

- ▶ 노동위원회의 화해는 분쟁을 당사자 간에 신속하게 해결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나 노동위원회에서 당사자 의사에 반하여 무리하게 화해를 유도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화해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8) 중노위 재심판정 재심유지율 제고

- ▶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결과 위원회의 재심유지율이 85% 상당에 머물고 있음. 재심판정에 대한 불복은 줄이고, 소송 결과 재심유지율은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우수한 조사관 인력을 충원할 것.

(9) 심문회의 개최 기간 준수

- ▶ 노동위원회 규칙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사건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함에도 실제로는 60일을 넘겨 심문회의를 개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심문회의 개최 소요기간을 단축할 것.

▶ 최저임금위원회 ◀

(1) 최저임금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 강화

- ▷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이 최근 10년간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바, 법률의 취지를 반영하여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를 강화할 것.

【소속 공공기관 공통사항】

(1) 부당한 계약내용 시정

- ▷ 고용노동부 소속 공공기관의 용역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에 노동3권 제한, 불합리한 차별 등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내용이 다수 있으므로, 즉시 시정하고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2) 청렴도 개선방안 및 비리행위 등 방지조치 계획 마련

- ▷ 각 피감기관의 청렴도 개선방안 및 비리·부정·부패행위에 대한 방지조치 계획을 마련토록 할 것.

▶ 근로복지공단 ◀

(1) 삼성전자 백혈병 사건 항소취하 및 삼성측 보조참가 금지

- ▷ 삼성전자 백혈병 사망노동자 고(故) 김경미 씨 유족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검찰이 해당 사건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지 않도록 공단이 검찰에 항소반대의견을 제시하고, 현재 항소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를 취하할 것.

- ▷ 삼성전자 근로자 백혈병 사망사건에서 삼성전자가 행정소송의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다면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삼성전자가 해당 사건에서 보조참가하지 않도록 삼성전자에 의견을 제시할 것.

(2) 산재보험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다양화

- ▷ 산재보험심사위원회 위원이 의학전문가로 편중되어 법리적 판단보다 의학적 판단이 우선시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나 산재보험전문가의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위원구성을 변경할 것.

(3) 산재보험심사위원회 심사절차 개선 방안 마련

- ▷ 산재보험심사위원회의 사건처리가 과중하고, 심사위원들이 심사안건에 관한 자료를 사전에 검토할 수 없어 심사가 부실하게 이뤄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4) 산재보험급여 부정수급 방지대책 마련

- ▷ 공단 직원들이 브로커나 근로자 또는 사업주, 의료기관 등과 공모하여 산재보험 부정수급사건에 개입하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내부감사 역량을 높일 것.
- ▷ 산재보험은 부정수급 적발금액이 증가한 반면, 부당이득금을 회수하는 비율이 낮은 실정이므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5) 질병판정위원회 위원 공개 및 심의자료 사전 제공

- ▷ 개별 사건을 심의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들의 명단이 공개되지 않아 청구인의 체척·기피신청권이 무력해질 뿐 아니라 판정의 공정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개별 사건마다 질병판정위원회 위원의 명단을 공개할 것.
- ▷ 질병판정위원회 위원에게 심의사건 관련 자료가 사전에 제공되지 않아 공정하고 심층적인 심의가 이뤄지기 어려우므로 사전에 심의 자료를 위원들에게 제공할 것.

(6) 산재근로자 멘토링 사업에 산재관련 단체 참여 검토

- ▷ 산재근로자 멘토링 사업을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수행하고 있는데 산재극복 경험을 활용하기 위한 사업의 취지상 산재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이 사업에 산재관련 단체가 수탁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7) 업무상질병인정기준 반영 위한 집행과정 개선 필요

- ▷ 고용노동부가 업무상질병인정기준을 구체화하였음에도 집행과정에서 이러한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업무상질병인정기준이 근로복지공단의 조사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사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집행과정을 개선할 것.

(8) 산재병원 경영합리화 대책 마련

- ▷ 산재병원 재정수지적자의 구조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을 극복

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시설으로서의 기능을 특화하는 방향으로 경영합리화 대책을 강구할 것.

- ▷ 진료비 감면이 과다하지 않도록 진료비감면 사무처리지침을 개정하는 것을 비롯하여공단 직원중심이 아닌 산재근로자 중심으로 산재병원의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9) 외국인근로자 통역서비스 확대 및 내실화

- ▷ 외국인근로자의 산재승인율이 내국인근로자보다 낮은 이유가 외국인근로자에게 통역서비스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므로,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통역사를 배치하거나 3자 통역서비스를 확대 및 내실화하는 조치를 취할 것.

(10) 산재의료기관 현지조사 및 처벌 강화

- ▷ 산재의료기관의 위법행위 적발을 위한 현지조사가 미흡할 뿐 아니라 산재의료기관이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후 적발되더라도 진료제한이나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강도가 미약하여 산재의료기관의 위법행위를 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산재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강화하고 처벌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

(11) 자문의사제도 개선방안 마련

- ▷ 근로복지공단의 자문의사 중 직업환경의학 관련 의사의 비중이 낮아 전문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산재판정 관련하여 직업환경의학 자문을 할 수 있는 전문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12) 대부사업 연체자 조기 신용회복 대책 필요

- ▷ 근로복지공단 대부사업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연체자들이 조기에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절차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신용거래정보 조기 해제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는 동시에 많은 신용불량자들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3) 부실 산재·장해판정 시정 대책 필요

- ▷ 합리적 기준 없이 산재불승인 결정이 내려지거나 장해등급이 잘못 부여되는 부실심사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산재판정이나 장해판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
-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피재근로자가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회를 보장할 것.

(14) 제3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제한 필요

- ▷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에 따르면 건설기계임대업자에 의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는 경우 공단은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해당 건설기계임대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건설공사의 산업안전책임은 궁극적으로 원수급인에게 있는 점, 건설기계임대업자는 대체로 영세자영업자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제3자(건설기계임대업자 포함)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5) 부당한 계약내용 시정

- ▷ 근로복지공단 및 소속 산재병원등의 용역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에 노동3권제한, 불합리한 차별 등 불공정한 내용이 다수 있으므로, 즉시 시정하고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16) 부당이득 환수율 제고

- ▷ 부당이득 환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

(17) 근로복지공단 소송 전담부서 설치 및 변호사 채용

- ▷ 공단의 높은 패소율을 해소하기 위한 소송 전담부서 및 전담변호사 채용 방안 등을 마련하고, 관련 부서의 인원을 확충할 것.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1) 산업안전감독 강화

- ▷ 2013년 7월 발생한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는 안전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한 데서 비롯된 것임. 향후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지도를 철저히 할 것.

(2) 외국인근로자 산업안전 대책 마련

- ▷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 원인을 철저히 분석·규명하고 특단의 종합대책 수립 등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3) 감정노동자 보호 노력 강화

- ▷ 감정노동자의 직무스트레스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작성한 기술지침의 인지도가 낮으므로 연중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감정노동자가 많은 유통업체나 콜센터 등의 건강증진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

(4) 보조금 및 융자금 관련 제도 개선

- ▷ 클린사업장 조성 및 산재예방시설 설치를 위한 보조금·융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부정수급, 폐업사업장에 대한 융자금 미회수, 지원 품목의 부적절 문제 등을 시급히 해결할 것.
- ▷ 보조금 및 융자금이 경기지역에 편중되는 등 일부 불균형이 있으므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역별 지원규모 등을 조정할 것.

(5) 위험성평가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 위험성평가를 자발적·모범적으로 실시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6) KOSHA 18001 발전방안 수립

- ▷ KOSHA 18001(자율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재해예방 효과에도 불구하고 인증 이후 매년 발생하는 사망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KOSHA 18001의 발전방안을 수립할 것.

(7) 역학조사 절차 개선

- ▷ 역학조사 결과보고서에 조사에 참여한 위원의 의견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 보고(제출)하고, 과거에 비해 길어진 직업성 암 역학조사 기간을 단축할 것.

(8)공단 직원 교육 강화

- ▷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신기술 또는 신공법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의 숙지도가 낮으므로, 직원 대상으로 신기술 또는 신공법 등에 대한 교육을 적기에 실시할 것.

(9) 서비스업 산업재해 감소

- ▷ 서비스업의 산업재해를 줄일 것.

(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업재해 감소

- ▷ 택배 및 쿠팡서비스업 종사자의 재해율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

▶ 한국산업인력공단 ◀

(1) 사업주 원격훈련지원 사업 이관에 따른 문제점 개선방안 강구

- ▷ 사업주 원격훈련 사업은 부정수급의 비중이 높고, 그 환수율은 저조함에도 부정수급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전문인력은 부족한 문제

점이 나타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그 내용을 보고할 것.

(2) EPS센터 효율화 방안 마련

- ▷ 인력 및 예산운용 측면에서 EPS센터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할 것.

(3) 기능경기대회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 방안 마련

- ▷ 지방대회 수상자가 심사위원을 추천하는 현행 심사위원 선정방식은 공정성 문제를 야기하고, 사전에 문제를 공개하는 출제방식은 선수들의 실질적인 실력평가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지방·전국기능경기대회 요리종목에서 선수 불법과건에 따른 형평성 문제 및 심사위원 담합 논란이 발생되었는 바,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토록 할 것.

(4) 직업방송의 EBS와의 연계강화 및 콘텐츠 통합 방안 마련

- ▷ 학생 진로지도 및 직업훈련 콘텐츠가 각 기관(한국고용정보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학술정보원, 한국직업방송, EBS직업교육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고 있는바, 콘텐츠 활용도를 제고하고 국가의 진로취업교육의 통합을 위하여 직업방송의 EBS와의 연계강화 및 각 기관에서 제작 중인 콘텐츠의 통합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

(5) 직업방송의 시청률 제고방안 마련

- ▷ 직업방송이 사회복지분야 공익채널로 선정되어 매년 2,160편의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송하고 있으나 작년 시청률은 0.002%를 넘지 못하고 있는 바 양질의 프로그램 제작 및 전 국민대상의 직업방송이 구축되기 위한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

(6) 숙련기술인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방안 강구

- ▷ 숙련기술인 육성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숙련기술인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1) 사회적기업의 비리·부실운영 문제에 대한 대책강구

- ▷ 정부지원을 목적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거나 정부지원에 의존하여 부실하게 운영하는 등 사회적기업의 비리와 부실 운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2)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유인책 마련

- ▷ 사회적기업이 청소 용역 등 노동집약적 업종으로 집중되고 있는 바, 업종 다변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토록 할 것.

(3) 공공기관에 대한 적극적 판로개척 방안 마련

- ▷ 2013년에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할 계획이 없는 공공기관이 36개에 달하고 있는 바,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할 것.

(4)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의 면밀한 추진

- ▷ 정부가 2017년까지 3,000개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1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이러한 목표가 달성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우려와 이것이 저임금 일자리만 양산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을 면밀히 추진토록 할 것.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

(1) 법률자문 계약방식 변경을 통한 비용 절감방안 강구

- ▷ 폴리텍대학의 법률자문 실적이 미미하므로 현행 정기적 자문비용 지급방식을 자문 건당 지급방식으로 변경하여 관련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할 것.

(2) 여성사감 비중 상향

- ▷ 전체학생 중 여학생 비중이 15%에 달하고 있으나, 여성 사감 비중은 전체 사감의 10%에도 달하지 못하고 있는 바, 여성 사감의 비중을 높이도록 할 것.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1) 노동인권 교육과정 강화

- ▷ 청소년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과정이 미흡한 바, 관련 예산의 확보 등을 통해 이를 강화토록 할 것.

(2) 조직관리 부적정 문제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 마련

- ▷ 고가장비 도입 시 심의규정 미흡 및 장비 활용도 미흡 문제, 연구비를 지원받은 후 결과물 미제출 교원의 증가 문제, 불법특혜 용역계약 문제, 분실도서 변상금 부정사용 문제 및 도서구입비 횡령 의혹 등 조직관리 영역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되었는 바, 이에 대한 개선 및 재발방지 조치를 마련토록 할 것.

(3) 고용노동연수원의 공익적 노동교육 지원기능 강화

- ▷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민간부문 노동교육의 중립성 및 교육의 효과성 증대를 위하여 고용노동연수원의 공익적 노동교육 지원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할 것.

▶ 건설근로자공제회 ◀

(1) 건설일용근로자 공제부금 일액 현실화

- ▷ 건설일용근로자 1인당 적립된 퇴직공제금이 80만원에 불과한 바,

공제부금 일액(현행 4,000원)을 현실화 할 것.

(2) 지급 불능화된 퇴직공제금 반환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 ▷ 2012년 말 현재 퇴직공제금 중 지급불능금이 총 1,839억원에 달하고 있고, 이 중에서 100억원은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건설근로자가 사망함에 따라, 20억원은 시효경과에 따라 지급이 불능화된 금액인 바, 동 불능금(이자 포함)을 건설근로자 또는 그 유족에게 반환하는 방안, 지급불능 퇴직공제금의 일반회계 전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 등 관련 제도를 개선토록 할 것.

(3) 자의적 자산투자 예방대책 마련

- ▷ 묻지마식 자의적 자산투자로 인하여 대규모 투자손실을 초래하였는 바, 향후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토록 할 것.

(4)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화 방안 마련

- ▷ 공제회 소속 정규직 직원이 84명인 반면, 파견근로자가 43명에 달하여 파견근로자가 과도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정규직화 등 이들의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토록 할 것.

▶ 한국고용정보원 ◀

(1) 신직업발굴 및 소개사업 동시 추진 필요

- ▷ 새로운 직업을 발굴하거나 우리나라에 소개하는 사업을 몇 년에

결쳐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할 것.

(2) 인사규정 위반한 인사행태 방지대책 마련

- ▶ 최근 기획조정실 인사를 보면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직원들을 전보하는 사례가 상당수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인사규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업무의 연속성을 저해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인사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한국잡월드 ◀

(1) 경쟁력 강화조치 지속적 실행

- ▶ 신규 고객 및 재방문 고객을 증가시키기 위해 최신 직업정보영상 제공, 체험실 개편, 콘텐츠 개발 등 잡월드의 경쟁력 강화조치를 지속적으로 실행할 것.

(2) 광고수입 확충 및 중소기업 활용 대책 마련

- ▶ 광고유치 실적이 저조하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 투자가 곤란한 상황이므로 광고수입을 확충하기 위한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할 것.
- ▶ 대기업 중심의 광고계약으로 직업체험관이 대기업 홍보물로 이용되는 우려가 있으므로, 광고계약에 중소기업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3)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직업체험 기회 보장

- ▷ 잡월드의 수익성과 공공성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취약계층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직업체험 참여기회를 보장할 것.

(4) 체험관 강사 및 상담사에 대한 적정 보수기준 제시

- ▷ 전시체험관 운영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체험관 강사 및 상담사에 대한 적정 보수기준을 제시하여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직업체험 및 상담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할 것.

(5) 안전사고 방지 위한 특별 점검 실시

- ▷ 잡월드 건물에 균열이 상당수 나타나 안전성 확보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 점검을 실시할 것.

(6)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코너 신설 검토

- ▷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잡월드 청소년 직업체험관에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코너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 장애인 고용부담금 징수실적 제고

- ▶ 장애인 고용을 대신하기 위하여 금전으로 납부하는 부담금조차 적기에 납부하지 않거나 아예 내지 않는 액수가 커지고 있으므로(약 70억원 상당), 국세청·지방자치단체의 과세정보 등을 이용하여 보다 적극적인 징수조치를 할 것.

(2) 장애인 취업의 질 제고

- ▶ 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한 장애인 취업률은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취업의 질을 보면 비정규직, 단순종사원, 사무보조 등이 대다수이므로, 향후 장애인 고용의 양적인 팽창 외에도 고용의 질을 높이도록 할 것.

(3)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악용하는 사례 근절

- ▶ 일부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고용부담금이 면죄부로 악용되고 있고, 특히 대기업과 교육청 등의 장애인고용이 저조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4) 중증장애인 취업을 탈피한 장애인 취업정책의 다변화

- ▶ 기존의 중증장애인 위주의 취업정책은 실질적으로 중증장애인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므로, 중증장애인 외에도 대다수 장애인을 위주로 한 취업정책을 마련하여 장애인과 사업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

(5)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인프라 확충

- ▷ 취업에 필요한 훈련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들에게 보다 많은 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실적 위주의 사업추진보다는 장애인고용이 저조한 기업에 대한 통합지원서비스를 실질화할 것.

(6) 장애특성에 따른 취업안내, 직업훈련과정 촉구

- ▷ 장애인 취업과 관련된 사업에서 취업률 일변도의 성과지표를 탈피하도록 하고, 보호가 절실한 중증장애인에 대하여도 실질적인 배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별 특성에 따른 취업안내, 직업훈련과정을 마련할 것.

(7) 장애인고용공단의 인력 확충

- ▷ 장애인 취업실적이 증가하고 있는데 반하여 장애인고용공단의 인력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므로, 장애인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고용공단의 정원을 채우고 향후 증원계획 또한 마련할 것.

(8) 질' 중심의 성과지표 촉구

- ▷ 장애인고용공단의 알선취업 실적이 2008년 6,906건에서 2012년 10,515건으로 대폭 늘어나고 있음에도 질 좋은 일자리 취업과 관련된 지표 등은 파악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보다는 질을 중심으로 성과평가를 할 것.

(9) 공단 근로조건(경력산정) 차별 문제

- ▷ 공단의 일부 직원에 대하여 기존 민간경력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없는 등 근로조건에 차별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경력산정 기준을 마련하여 시정토록 할 것.

(10) 여성 장애인 취업률 제고

- ▷ 여성장애인의 취업률이 남성장애인에 비하여 절반 수준도 못 미치고 있음에도 여성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못하므로, 향후 여성장애인 취업률 신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

(11)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의 실효성 제고

- ▷ 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체결하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서 실제 장애인고용이 증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12) 취업성공패키지 위탁사업비(성공금) 적정 사용

- ▷ 공단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취업성공패키지 위탁사업비 중 성공금은 사업성과를 높이는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집행잔액은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반납하도록 할 것.

(13) 부당한 계약내용 시정

- ▷ 장애인고용공단 일부 지사 등의 용역계약사, 과업지시서 등에 노동3

권제한, 불합리한 차별 등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내용이 다수 있으므로, 즉시 시정하고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14) 중증장애인의 직업훈련 특별배려 필요

- ▷ 장애인직업훈련원에서 중증장애인, 특히 신변처리가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의 입학을 거부하는 관행을 시정하고, 중증장애인이 활동보조인과 함께 직업훈련원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제반 여건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노사발전재단 ◀

(1) 시간선택제 일자리 컨설팅 사업의 효과 제고

- ▷ 노사발전재단이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간제 일자리 컨설팅 사업의 경우 2010년 이후 약 40억원 상당이 소요되었으나 실질적인 일자리창출효과가 적으므로, 향후 컨설팅사업이 일자리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효과성을 제고할 것.

(2) 해외투자기업 지원사업 내실화

- ▷ 노사발전재단에서 수행하는 해외투자기업 지원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분쟁예방프로그램 구축지원 등 사업내용을 다변화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사업을 내실화할 것.

(3) 직원 처우 개선

- ▷ 공공기관인 노사발전재단 직원 중 다수가 비정규직으로 고용불안

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정규직 전환 등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

(1) 승강기 안전관리 철저

- ▷ 2013년 7월 지하철 야탑역에서 발생한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는 감독기관의 관리·감독 소홀과 안전기준 미비 등에 기인한 것이므로, 현실에 맞게 안전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승강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2) 방만한 기관경영 해소

- ▷ 반복적으로 법인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예산으로 구입한 물품의 등록 및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의 의혹이 있으므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비위가 있는 경우 징계 및 인사조치 등을 엄정하게 취할 것.

(3) 신청사 건립 계획 조정

- ▷ 무리하게 신청사를 건립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기관실정과 필요를 감안하여 적절한 규모로 시행할 것.

(4) 노사갈등 해소

- ▷ 임금협약 타결, 노사공동선언 채택 등 원만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향후 불필요한 노사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3) 기상청 소관

【기상청 전반에 대한 사항】

(1) 장비 납품 비리, 인사 관련 비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대책 필요

- ▷ 청장 취임 시 장비도입, 인사 등에 관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인바, 이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
- ▷ 최근 계속 발생하는 장비 납품 비리는 인사 조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연결고리를 끊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2) 기상청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전환 고려 필요

- ▷ 최근 기상산업의 전체 연 매출은 1,663억원 수준으로 협소한데, 이는 기상청이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이유로 기상업체에서 수행하여야 할 일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으로, 대행역무사업을 기상청이 직접 수행하는 등의 개선방안이 필요하고, 이와 함께 기상청의 기능과 역할, 조직, 예산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하여 점검하여 근본

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기상청이 기상관련 민간 기상사업자의 업무영역을 침범하여 민간 기상산업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므로 민간 기상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방안 마련할 것.

(3) 기상청 산하 지방청 및 지방기상대의 역할 점검 필요

- ▷ 기상청 관련 업체중 88%가 장비업을 하고 있는데, 이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과도한 수로서, 민간서비스 확대를 유도하고 기상청은 이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지방청 및 지방기상대의 업무 필요성에 대하여 면밀히 고민할 것.

(4) 기상산업진흥원의 업무 변경 필요

- ▷ 기상산업진흥원의 업무는 장비구입과 유지보수에만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진흥원이 기상청을 대신하여 사업자들의 배만 불러주는 것으로, 기상산업발전을 위하여 민간예보나 기상컨설팅, R&D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것.

【기상 장비 관련 사항】

(1) 납품 업체와 기상청의 장비 관련 독점 문제 해소

- ▷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는 공급을 독점하고 기상청은 수요를 독점하는 쌍방 독점의 문제가 장비 입찰 비리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이므로, 독점 해소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할 것.

(2) 기상장비 국산화율 제고

- ▷ 기상장비 국산화율이 29.1%로 낮고, 전체 31개 중 12개가 0%로써 큰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중소기업의 R&D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부족한 측면이 있고, 또한 예산 증액 이외에도 성과도 부진한바, 이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 ▷ 기상장비의 외국장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수입대행업체 간 과당 경쟁이 심하고 예산의 국외유출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국내기상장비 산업 육성하도록 할 것.

(3) 지진관측장비 구매사업의 감사원 감사 필요

- ▷ 지진관측장비 구매사업 제안요청서를 기상산업진흥원이 임의로 수정하여 심사위원회에 제공하고 지진관련 실적이 전혀 없는 농심데이터시스템이라는 회사가 낙찰된바, 이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고, 해당자들을 고발할 것.

(4) 국정감사시 허위진술자 등에 대한 징계 필요

- ▷ 국정감사 질의답변 중, 지진관측장비 구매와 관련하여 낙찰 기준을 수정하는 회의에 참석하였음에도 부인하는 등 허위로 진술한 담당국장 등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할 것

(5) 기상장비의 구매 관련 입찰·평가·검증 등 전과정 시스템 개선

- ▷ 장비 구매 관련 비리가 발생하는 것은 장비 구매 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한 객관적 검증 시스템도 부족하기

때문인바, 장비구매 원칙을 명확하게 마련하고 그 원칙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 ▷ 기상업계에 있는 두 회사 간의 경쟁에 의해 국민에 대한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낙찰에서 탈락한 업체도 수공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것.
- ▷ 턴키 발주로 인하여 예산낭비가 굉장히 심했는데, 지진조기경보 구축 및 운영사업의 입찰낙찰률이 98.3%이며, 해양기상관측장비 사업의 경우에도 94.2%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인바, 이에 대하여 감사를 철저히 하고, 분리발주 또는 WMO 입찰 확대방안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반드시 마련할 것.
- ▷ 낙찰률 관련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위와 해당 사업 입찰 관련 문제가 있는지 확실하게 조사하여 보고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6) 기상산업진흥원 업무의 조달청 이관 필요

- ▷ 장비 구매 및 장비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기상청과 기상산업진흥원과 유착되어 비리가 계속 발생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기상산업진흥원을 없애고 모든 장비 구매 및 유지보수 업무를 조달청으로 이관하도록 할 것.
- ▷ 기상장비 구매 시 본부 차원에서 외부 위원회를 구성하여 적합성 심사를 하거나 기상청에서 직접 구매하도록 하는 등 대책을 수립할 것.

(7) 기상 라이다 도입 관련

- ▷ 김포공항과 제주공항에 라이다 장비를 도입했음에도 자체 판정을 이유로 도입 불가를 주장하고 있는바, 사용되지 않은 경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것.
- ▷ 새로 도입한 기상라이다의 경우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돌풍의 감지 기능이 미흡하여 항공안전에 큰 영향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해당 계약업체에 변상조치와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을 것.
- ▷ 항공기상청과 특정업체와의 유착관계가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고, 기상청이 장비구매 검수·검사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항공기상청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녹취가 발견되는 등 다양한 문제가 있으므로, 근본적인 비리, 유착관계를 끊기 위하여 시정조치와 철저한 관리감독, 이와 함께 감사원에 기상청 전체적인 감사를 요구할 것.
- ▷ 항공기상청이 라이다장비를 자체검사하지 않았음에도 자체검사하였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어불성설인바, 위증사실이 드러나면 국회법의 절차에 의하여 엄격하게 처리할 것. 특히 항공기상청 정보지원과장이 특정 업체의 장비를 구매하기 위해 그 업체가 요청한 조건을 지방기상대 소속직원으로부터 받아 진흥원에 전달한 증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관련자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

- ▷ 기상라이다와 관련하여 계약해지가 되는 경우에는 변상판정제도를 활용하여 엄벌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 ▷ 기상라이다의 경우 업체 선정, 기준변경 등 많은 지적이 있었어도 이를 선정하여 결국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바, 입찰 조건 변경 과정부터 최종 결정까지를 점검하고, 감사원의 감사와 함께 책임자 색출과 문책을 실시하여 기상청의 똑바로 정립할 것.
- ▷ 항공 장비 도입 및 입찰 구매 과정에서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 및 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항공기상청 운영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도입된 라이다와 관련하여 항공기상청과 진흥원의 생산자료가 서로 다른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직원에 대하여 조치할 것.

(8) 일부 기상장비의 전용을 통한 추진

- ▷ TDWR장비의 경우 연도중 16억원의 전용을 통하여 공사를 추진한 것은 부당한 전용인바, 이에 대하여 조치할 것.

(9) 해양기상관측장비의 확대 필요

- ▷ 연안·도서지역 주민에게 해양기상정보는 안전과 경제활동에 매우 중요한데도 해양기상관측장비가 육지에 비하여 과소하고, 예·특보 구역도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바, 해양관측장비를 효과적으로 확충하고, 연안바다와 평수구역 등을 세분화하여 관측을 강화할 것.

(10) 기상장비의 과도한 예비품 구입 지양

- ▷ 기상청 소관 장비확충 사업의 경우 연간 사용량이 거의 없거나 사용량에 비하여 많은 예비품을 구매하는 것은 불필요한 낭비로 전용까지 하여 예비품을 구매하는데, 장비 관리 비용이나 보관비용 발생 등으로 낭비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장비 구매 행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11)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 관련 의문 해소 필요

- ▷ 기상항공기 도입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과 달리 다목적 관측용 항공기를 도입하기로 하여 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연구보고서는 3개월만에 작성되고 내용도 영성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할 것.
- ▷ 다목적 항공기의 낙찰과 관련하여 설계용역 발주에서 도입방식을 턴키로 변경한 것은 예산의 자의적 사용으로 보이고, 낙찰업체의 전문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바, 전문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혁신적인 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노력할 것.
- ▷ 다목적 기상항공기 낙찰 업체가 기상항공기 도입에 전문성이 부족함바 동 사업의 추진에 대한 기상청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

(12) 기상관측장비의 부실한 유지보수 지양

- ▷ 기상산업진흥원이 관리하는 기상관측장비의 유지보수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일인당 장비수가 많고 광활한 지역을 담당하기 때문

으로 진흥원이 담당할 수 있는 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에 따라 유지보수를 맡겨 철저한 유지보수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인사, 인력 및 조직 관련 사항】

(1) 예보 부서에 대한 인력 고려 등 예보 역량 강화 필요

- ▷ 예보 부서의 업무에 비하여 충분한 인력배치나 보수체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이는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임에도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이에 대하여 보고할 것.
- ▷ 기상청 본청에서 지역기상대로 내려갈수록 예보관의 평균 보임기간이 짧아지고 있는데, 이는 순환보직제로 인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며, 기상청 예보관 관련 연구 계획을 마련할 것.
- ▷ 기상 예보의 충실한 수행을 위하여 역량을 강화할 것.
- ▷ 선진국에서 전문교육기관을 두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기상 분야 전문 교육기관이 필요하고, 예보관의 역량을 강화하여 공공기상서비스를 강화할 것.

(2) 지진관련 인재 양성 필요

- ▷ 최근 지진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지진학 등의 인재 양성 시스템이 부족한바, 교육부와 논의하여 정부의 지원을 통해 지진학자 양성 시스템 등 관련 정책을 명확하게 수립할 것.
- ▷ 지진 발생과 관련하여 기상청의 지진해일 담당부서 인력현황을 보

면, 지진해일을 연구하는 전문가가 전무한 실정으로 기상청의 지진해일 전문가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할 것.

(3) 기상캐스터의 전문성 확보 및 전문가 총원 노력 필요

- ▷ 기상캐스터의 경우 전문가나 전공자가 국민에게 설명하는 것이 설득력 높을 것으로 보이는바, 방송국과 기상청이 연계하여 국민에게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

(4) 국제 기구에 대한 파견 인력 확충

- ▷ WMO 등 기상 관련 국제기구에 대한 전문가 파견을 확대할 것.

(5) 국립기상연구소의 비정규직 인력 축소 필요

- ▷ 국립기상연구소의 연구인프라를 보면 비정규직 인력이 정규직에 비해 110명으로 두배 많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건수가 없는 데 이는 타 부처에 비하여도 많은 편으로 연구인력의 전문성과 고용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6) 기상콜센터 상담사의 처우 개선

- ▷ 기상콜센터는 업무강도가 심한데 전문성에 비하여 보수가 낮은 편으로 업무에 비하여 처우가 열악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예산에 반영할 것.

(7) 인력 적재적소배치 필요

- ▷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를 통하여 기상업무의 효율성 제고할 것.
- ▷ 공항라이다의 경우에도 부적격 처리가 됐었어야 하는데도 이를 걸러내지 못하여 결국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바, 이러한 것도 인사문제와 연계된다고 생각되므로, 전문성있는 인재가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할 것.
- ▷ 기상청 내 학벌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조직 운영에 있어 엄격한 기강을 수립하고, 원칙을 세워 집행할 것.
- ▷ 직장협의회를 통하여 하위직급으로부터의 의견을 청취할 것.

(8) 해양기상청 신설 재검토 필요

- ▷ 기상청은 해양기상청을 신설하여 정책·관리·운영 업무 체계를 일월화하고자 할 계획이나, 항공기상청이나 국립기상연구소 등 소속기관의 문제가 많고, 타 기관과 중복되므로, 기존 지방청이나 해양관련 실국에 업무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기상 행정 및 감시/감독 관련 사항】

(1) 기상청 내부 감사 기능 강화

- ▷ 기상청의 장비 비리 등과 관련하여 기상청 내부의 감사기능을 강화할 것.

- ▷ 감사원 감사 결과 해임 징계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문경고에 그쳐 계속 근무하는 사례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실시할 것.

(2) 인사 공백으로 인한 문제 해결 필요

- ▷ 기상산업진흥원장의 공석이 계속되고 있고, 경영지원실이나 인증평가실, 연구개발실, 기상지원본부의 공석도 나타나고 있는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
- ▷ 인사공백과 장비 입찰 비리와 직접적으로 연계되고, 기상행정의 역량이 부족하여 업계에 휘둘리는 경향도 있다고 보이는바,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고 보강하는 인적 쇄신을 실시할 것.

(3) 기상청 직원의 공직기강 강화 필요

- ▷ 기상청 직원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이는 온정주의 등으로 인하여 징계 수준이 낮기 때문인바, 공직기강을 엄격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 기상청의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비리와 투서 문제가 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 기상청의 고위간부의 성의식 및 기강해이가 매우 심각하다고 보이고, 기상장비 구매 관련 간부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바, 이는 상대적인 폐쇄성이 근거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이므로, 공직기강 확립과 의식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기상정보 접근성 및 예/특보 관련 사항】

(1) 해양기상정보 서비스 확대 필요

- ▷ 신속한 해양기상정보 서비스는 전국민이 필요하고 국민생활 특히, 농수산 분야에서 더욱 필요로 하고 있으므로,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2) 기상기후산업 특화기술 민간이전의 적절 방안 마련

- ▷ 기상기후산업 특화기술의 민간이전실적 및 효과가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특화기술을 민간으로 적절하게 이전하여 기상기후산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3) 가뭄전망 등 공공기상서비스 강화

- ▷ 가뭄예측을 통하여 국민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기상청에서 가뭄전망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4) 안개특보 및 산지특보를 포함한 기상예보에 대한 정확도 확보 방안 마련

- ▷ 최근의 호우, 대설, 태풍 피해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데도, 관련 특보의 오보율은 2011년에 비해 늘어나고 있

으므로, 오보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 2009년 안개특보를 시범운영하면서 연구용역 등에 30억원이 소요되었는데, 현재까지 시범운영만 실시하고 있고, 정확도는 계속 낮아지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 4년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지특보의 정확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오보율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도 산지특보 개선방안을 위한 대책이 미흡한바, 이에 대하여 조치할 것.

【기타 사항】

(1) 기상방송 및 슈퍼컴퓨터의 자활방안 마련 필요

- ▷ 기상방송의 주파수를 확보하여 시험방송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제대로 기상방송을 하기 위해 법령 개정이나 예산, 조직 등을 확보하여 자활할 수 있도록 하고, 슈퍼컴퓨터 같은 것도 기상청이 자활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할 것.

(2)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기상청의 적극적 역할 필요

- ▷ 인접국가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누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기상 상황을 감시하고 방사성 물질의 한반도 유입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을 실시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체결한 MOU 내용을 이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원자력 안전과 관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의존하지 말고 기상청이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이를 추진할 것.

(3) 평창 동계올림픽 기상조절 기술 관련

- ▶ 평창 동계올림픽의 기상조절기술 개발을 위하여 노력해왔으나 성공률이 높지 않은데, 이는 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보이는데, 동계올림픽이 기상측정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 등의 노력을 경주할 것.

(4) 소방방재청 등 지진 관련 기관과의 협조 방안 마련

- ▶ 2012년에 제작된 소방방재청의 지진위험지도도 기상청에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관련 기관과 자료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등 협의하는 구조를 마련할 것.

(5) 지진 관련 적절한 기준 마련 필요

- ▶ 우리 나라의 경우 지진 위험지대가 아니라는 답변을 계속해왔는데, 지진 위험도가 낮지 않은 상황으로 향후 우리나라가 지진 위험지대가 아니라는 답변은 하지 말 것.
- ▶ 우리나라 기상청의 지진규모식이 과소평가되고 있는데, 이는 내진 설계나 대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하므로 이를 수정하고, 지진규모식을 새롭게 산정하기 위한 연구용역 및 규모식 활용방안 등을 제시할 것.
- ▶ 지진이 발생하는 지역인 단층에서 댐과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되고 있는데, 내진설계 등을 통한 안전망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 단층대와 해양지진계 등에 측정망이 부족하고 특히 해저지진계의

경우 1개에 불과한바, 단층대에 대한 지진계 설치계획 및 해저지진계 확충방안을 제출하고, 관련 예산규모를 정확히 제시할 것.

- ▷ 1년에 2회 개최하는 지진·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기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6) 지진 관련 예산 및 인력 확보 필요

- ▷ 서해에서 급증하는 지진은 대지진의 전조로 보이는데도 지진관측 장비의 절반 정도가 노후장비이고, 인력도 부족한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7)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지원 확대 필요

- ▷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가 신속하게 확대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세부적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

(8) 기상 R&D 사업의 철저한 사전 검토 및 사후 평가 필요

- ▷ 기상청이 R&D관련 사업을 점검한 결과 특허 등록 1건당 64억원이 투입되어 비용에 비해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고, 기술료 수입은 1건, 기술이전 등 사업화로 이어진 경우는 6건에 불과한바, 연구개발 예산에 대한 꼼꼼한 사전 검토와 함께 사후 평가를 실시할 것.
- ▷ 연구개발사업의 대부분이 출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용화 및

기술료 징수실적 등이 매우 저조한데도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바, 사업 전반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기상기술개발원의 출범으로 R&D 총괄이 가능할지 의문이 있고 출범으로 인하여 산업계에 대한 지원이 축소될 우려도 있는바,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할 것.

(9) 자동기상관측장비 운영개선 대책 필요

- ▷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기상관측장비가 도시화의 영향으로 관측환경이 열악해질 수 있으므로, 적합한 장소에 이전 설치하고, 운영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10)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기상장비 설치 관련 감사원감사

적절한 대응 필요

- ▷ 평창동계올림픽 기상관측장비 설치 시 장비는 지상에 설치해야 하고, 장애물이 있는 숲에는 설치하지 못도록 되어 있는 등 기상관측표준화법 조건에 따라 장비를 설치하면 경기진행 자체가 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국제경기대회와 같은 특수한 환경여건 및 목적에서는 기상관측장비 설치 시 적용대상에서 예외로 할 수 있는 법률 개정 등을 통해 평창올림픽 준비를 위해 고생했던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

(11) 국립기상연구소 제주혁신도시 이전 신속 추진

- ▷ 국립기상연구소의 제주혁신도시 이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세심

한 준비가 부족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업무 개시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12) 기상기후아카데미에 대한 사업 과다 수주

- ▷ 기상청은 「(재)한국기상기후아카데미」를 통하여 기상기후교육의 일부를 위탁 수행케 하고 있고 대부분의 강사가 기상청 공무원인데, 업무 위탁 및 내부 강사 편중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13) 음파관측소 관리 부실로 인한 인공지진 대응 부진

- ▷ 음파관측소의 유지보수계약 만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질자원연구원의 음파관측소를 기상청으로 이관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동 연구원과 정보공유도 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

(14) 도시농림사업 프로젝트의 책임있는 추진 필요

- ▷ 차세대도시농림융합기상 사업단을 1년 반 동안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였고 사업의 계획 대비 예산확보 및 추진실적이 저조한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5) 기상정보를 활용한 골프지수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부실

- ▷ 연구보고서의 양이 적고 내용이 부실하여 동 사업에 대하여 국비를 지원한 것은 부적절하고 이런 서비스는 민간이 직접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국비가 지원되는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16) 기상관측표준화 사업의 운영 강화 필요

- ▷ 기상관측 표준화 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자료 공유나 수집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고, 자료값의 미활용이나 계산 오류 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는데도 법적인 근거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기상청이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한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